

최종보고서

용역계약 종합심사제 도입방안 연구

2016. 11.

제 출 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실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종합심사제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2016년 11월

한국조달연구원장 이태원

책임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 훈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오 세 옥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이 정 환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 주 원

- 목 차 -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2. 용역의 재분류	5
2.1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5
2.2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을 위한 서비스 재분류	6
3. 용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심사 평가체계	36
3.1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형 평가체계 개요	36
3.2 계약대상으로서의 용역 특성과 평가모듈의 연관성	37
3.3 3대 용역유형별 모듈 평가체계(안)	41
4. 용역 유형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기준 마련	47
4.1 3대 서비스 유형별 계약현황 및 적용 적합성 평가 결과	47
4.2 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엔지니어링 용역)	51
4.3 준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MICE 용역)	55
4.4 비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청소 용역)	63
4.5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한 3대 서비스 유형별 종합심사 평가기준	68
5. 용역 종합심사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95
5.1 청소용역 개선 개요	95
5.2 청소용역 산업구조적 특징	98
5.3 기존 청소용역 국가계약/입·낙찰제도 운영현황	105
5.4 청소용역 국가계약/입·낙찰제도 개선방향성	111
5.5 청소용역 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20
5.7 이행력 제고방안	125
6. 결 론	129
별첨 1. 최근 3년간 3대 서비스 재분류를 통한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134
별첨 2.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개요	146
별첨 3. 인력투입 중심(청소)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안)	149

- 그림 목차 -

[그림 1] 데이터 수집	5
[그림 2] 분석 절차	6
[그림 3]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형 평가체계 도입개요	36
[그림 4] 종합심사제 구성요소	39
[그림 5] 용역 종합심사제의 구성요소	40
[그림 6]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ICE 분류체계 및 개념정리	57
[그림 7] 시범사업 입·낙찰 절차(안)	68
[그림 8] 청소/경비용역 업체 종사 근로자 기준 기업 규모(2013년 말 기준) ...	99
[그림 9] 청소/경비용역 관련 직종의 근로자 연봉표(2013년말 기준)	99
[그림 10]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2013년말 기준)	102
[그림 11] 단순노무직종의 직업별 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103
[그림 12] 청소/경비용역의 성별/경력별 임금수준(2012년말 기준)	104
[그림 13]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사업예산(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산출내역 사례..	109

- 표 목차 -

[표1] 3대 용역 유형별 용역 재분류 결과(대표 서비스 기준).....	7
[표2] 공공조달 일반용역 서비스 재분류.....	10
[표3] 공공조달 ICT용역 서비스 재분류.....	14
[표4] 공공조달 기술용역 서비스 재분류.....	15
[표5] 3대 용역 유형별 재분류 평가체계.....	16
[표6]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	18
[표7] 서비스 재분류 판단기준.....	19
[표8] 서비스 재분류 결과.....	20
[표9]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기준.....	22
[표10]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판단기준.....	23
[표11] 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24
[표12] 준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29
[표13] 비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32
[표14] 용역 고유의 특성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	38
[표15]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자 선정방법.....	41
[표16] 평가모듈 - 평가요소 저장소(Repository) 활용.....	44
[표17] 3대 용역유형별 모듈 평가 체계.....	45
[표18]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낙찰방법.....	47
[표19]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추정금액.....	48
[표20]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49
[표21] 연도별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50
[표22]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51
[표23]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추정금액.....	52
[표24]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53
[표25]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54
[표26]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59
[표27]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추정금액.....	60
[표28]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61
[표29]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62
[표30]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64
[표31]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추정금액.....	65

[표32]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66
[표33]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67
[표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0조, 73조	72
[표3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1조, 89조	73
[표3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3
[표37]	계약 예규	73
[표38]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78
[표39]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79
[표40]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입찰등급 3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80
[표41]	청소용역 이행능력(수행실적 심사)	81
[표42]	청소용역 이행능력(관리인력 보유정도)	82
[표43]	청소용역 이행능력(참여 근로자의 전문성)	83
[표44]	청소용역 이행능력(근로자 임금보장도)	85
[표45]	청소용역 이행능력(용역결과 평가)	86
[표46]	청소용역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86
[표47]	청소용역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88
[표48]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90
[표49]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91
[표50]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91
[표51]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92
[표52]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93
[표53]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94
[표54]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94
[표55]	용역의 분류	95
[표56]	경비원과 청소관련직의 고용보험 상실사유(2013년말 기준)	100
[표57]	청소용역 근로자 주당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수준	103
[표58]	정부 및 지자체별 청소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운영 현황	106
[표59]	청소용역 계약단계별 대가보장 수준 적정성 검토 결과	110
[표60]	용역의 속성 재분류	113
[표61]	용역 유형 분류별 최고가치 낙찰관점 적용 분류	115
[표62]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평가방법 사례	117
[표63]	국가계약 단계별 청소용역 종합적 개선 방향성	119
[표64]	청소용역 낙찰자 선정 개선대안	122

[표65] 청소용역 이행능력 평가기준(종합적격심사).....	124
[표66] 이행력 제고방안.....	128

요 약 문

1. 서론

■ 연구의 배경

- 2015년 국가계약 대상 중 물품 및 용역계약 분야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된 주요한 사실 중 하나가 국제적인 용역계약 추세가 최고가치 낙찰(Best value) 관점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임.
- 용역분야에서 최고가치 낙찰 개념 적용의 핵심은 용역의 핵심 제공가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이행능력, 즉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평가와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임.
- 기존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능력과 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점수 충족 시 낙찰자로 선정하여 외견상 최고가치 낙찰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가격 중심의 평가방법임.
- 용역분야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은 주요 용역분야가 공공조달 시장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용역대가, 입낙

참기준, 사후관리 관련 정책과 제도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수요와 지속가능성 향상에 결정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서비스산업(17대 성장동력산업 중 MICE 등 서비스 분야 5개 산업 포함)으로 이동하는 상황과 궤를 같이하여 공공부문 역시 용역의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조달청은 2014년 12.15%인 용역(서비스) 비중을 2017년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ICT/SW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게 평가방법과 계약조건 등을 정비할 계획임.

-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2013년 기준)은 약 59.1%(5년단위 산업연관표와 차이 존재)로 선진국 대비 낮으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됨.(고용비중 대비 매출비중 확대필요).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을 100으로 할 경우 2001년 78.1%, 2005년 60.9%, 2010년 46.2%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적정 생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이를 공공부문에 대입할 경우 용역분야의 입낙찰시에도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차원의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처럼 국가의 경제성장 정책측면에서 용역산업 비중 확대 필요성, 국가계약 중점 대상 분야 변화 및 가치적 차원에서 용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분류에 기반한 계약제도 및 운영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에서는 정보기술(IT)용역, 건설기술용역, 문화재 관련 용역과 같은 고도의 지식 및 전문성, 특수성 반영 필요 용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교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계약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2014~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300억 원 시설공사에서 도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2016년 본격 시행되고 있는 종합심사제를 용역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물품 및 용역 분야, 특히 용역분야에 최고가치 평가 개념을 채택하여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의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용역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TF가 구성되었고 기술 용역, MICE용역, 청소용역 등 3대 용역 유형별 대표 용역분야의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 민간 전문가, 유관 협회 및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간 협업적 움직임이 활발함.

-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의 용역계약 대상 기술 및 일반용역에 대한 재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 종합심사대상 1.용역의 재분류, 2.용역 유형별(컨설팅, 준컨설팅, 비컨설팅) 특성을 반영한 종합심사 평가체계, 3.용역 유형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기준 마련, 4.용역 종합심사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소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의 목적

- 용역의 제공품질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 생태계 축진을 위하여 용역제공자의 종합적인 제고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체계 마련.
-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의 품질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종합적인 유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주도의 선도적 견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
- 국가계약 용역 계약체계의 전면적 개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용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실행 및 지원 기반 확보.
- 공공부문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입·낙찰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발전 및 기업의 유효경쟁력 향상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적절한 공급자를 선정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함으로써 공공 부문에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의 안전과 품질 등의 본질적 조달 가치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최근 시설공사 중심의 국가계약체계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했던 물품 및 용역분야 계약 체계의 강건성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특히,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물품 구매와 같은 유형 조달대상물자와 차별성이 큰 용역 부문의 입·낙찰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용역의 재분류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된 일반 및 기술용역 계약 현황자료를 추출함.
- 다음 단계로 계약실적에 대한 연도별, 품명분류번호별, 용역명칭별로 재분류함. 그 후, 품명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재분류 및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판단을 위해 원시 평가자료를 작성함.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를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환산한 값을 입력한 의사결정 근거자료를 확보함.
-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1차적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물품목록분류번호 및 서비스 기준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에 따

른 점수를 부여함.

-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과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를 통해 서비스를 분류하는데, 먼저 정량평가를 통해 정성적 서비스 분류결과를 조정 후 3대 분야별 서비스를 확정한다. 그 다음, 확정된 3대 분야 개별 서비스의 입·낙찰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 종합심사 적용 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3대 용역 재분류

- 3년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된 일반 및 기술용역 계약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용역(A) 153개, ICT용역(B) 16개, 기술용역(C) 23개의 유효한 총 192개의 등록 건을 확보함.
- 용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입·낙찰 방법 적용을 위하여 현재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용역을 “핵심제공가치의 기술지식 집약도” 등 6개 평가차원에 따라 평가함.

■ 서비스 재분류 평가

- 현행 192개 서비스를 3대 유형으로 1차 분류(정성) 후 상기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2차 재분류(정량)함.
- “기술지식집약도“는 수행 인력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 보유 및 활용 수준에 따라 10점 만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특유성, 전문성, 복합성 수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함.

- 용역 결과물 유영화 수준 차원에서는 용역의 핵심 결과물 또는 평가자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5점 만점, 유형화된 용역결과물 작성의 난이도, 복잡성 및 고유한 지식 포함 수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함.
 - 과업량 기준 상세 대가 산정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의 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고유한 대가산정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3점 만점, 대가산정 체계의 복잡성 상세화 수준에 따라 2점 만점으로 배점함.
 - 전문자격 요구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자격 요구 여부에 따라 3점 만점, 해당 자격 획득의 난이도에 따라 2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부가가치 창출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이 속한 산업의 부가가치율 여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함.
 - 마지막으로 성과물의 타 분야 활용을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타 용역, 공사의 선행 결과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6점 만점으로 배점함.
- 평가 결과 82개의 컨설팅 용역, 44개의 준컨설팅 용역, 66개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함.
- 분류기준 점수가 45점 이상, 분류 기술점수(기술지식 집약도)가 13점 이상, 분류 기준점수(타 분야 활용도)가 7점 이상인 경우 기술 및 지식 중심의 컨설팅용역으로 분류함.
 - 종합적인 분류기준 점수가 35점 이상, 분류 기술점수(기술지식 집약도)가 10점 이상, 분류 기준점수(타 분야 활용도)가 5점 이상인 경우 기술 및 지식, 인력 중심의 준컨설팅용역으로 분류함.

-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분류 기준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 인력 투입 중심의 비컨설팅용역으로 분류함.

■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

- 용역 종합심사제를 적용한 적합도 평가기준에는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과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과 “입찰참가 경쟁도”가 있고, 평가 방법은 각 항목 당 10점 만점으로 배점함.
- 각 항목 당 배점된 점수를 합산한 결과, 35점 이상이면 “매우 적합”, 30점 이상이면 “적합“, 25점 이상이면 ”보통“, 20점 이상이면 ”부적합“, 그리고 20점 미만인 경우 ”매우 부적합“으로 판단함.
- 82개의 컨설팅 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4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78개의 서비스를 분석함.
-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등 2개에서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등 23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35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등 12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등 6개에서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됨.
- 44개의 준컨설팅 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2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42개의 서비스를 분석함.

-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음원제작서비스는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실내및기타오염 사측정서비스 등 15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전시장치설치서비스 등 19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기타물품설치서비스 등 7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 된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됨.

□ 66개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15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51개의 서비스를 분석함.

-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는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등 20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어업서비스 등 19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농업서비스 등 7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고객센터운영서비스는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됨.

3. 용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심사 평가체계

■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형 평가체계 개요

- 평가모듈은 용역이 분류 기준별로 필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다양한 평가요인을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그룹화한 것을 말함.
- 평가모듈은 용역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필수 평가모듈과 선택평가모듈로 구분되고, 각각의 평가모듈을 대표하는 평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

하여 평가체계 구성이 가능함.

- 용역부문 종합심사제 평가체계는 용역 분류 기준인 기술/지식, 기술/지식 및 인력 결합, 인력투입 중심별 특수성 및 범용성 고려가 필요하지만, 특수성과 범용성은 상반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용역의 특성에 따른 평가모듈 구성이 필요함.
- 따라서 평가모듈의 개념 도입은 192개의 다양한 개별 용역의 종합심사 마련 시 평가체계로서의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계약대상으로서의 용역 특성과 평가모듈의 연관성

- 용역은 공공조달 및 계약 대상어로서 물품 대비 품질, 성능과 관련하여 고유한 특성을 보유함.
- 이로 인해 적격한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설계가 필요함.
- 용역 고유의 특성은 대표적으로 무형성, 불가분성(변동성), 이질성(동시성), 소멸성으로 4가지로 분류됨.
- 용역부문 종합심사제는 계약이행 5단계(입찰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별 사전자격심사, 사업예산 산출 내역 공개, 심사기준 기술능력평가, 산정기준 입찰가격평가, 종합점수산정,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상세화, 용역결과의 정성/정량적 평가 등 7개 구성요소를 포함함.

-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될 종합심사제는 “입·낙찰 단계(평가)”와 “낙찰자결정 단계”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종합점수 산정을 통한 낙찰자 결정 방법 구성요소 마련에 초점을 맞춤.
- 기술능력평가는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 평가체계”의 각 단계별 평가모듈의 평가요소를 조합·구성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시설공사 종합심사제”의 균형가격 방식“을 채택하며, 낙찰자선정은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자 선정“ 방법 중 가중치 방식을 적용함.

■ 3대 용역유형별 모듈 평가체계(안)

- 용역 종합심사제 도입의 기본가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 관점의 구현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3대 용역 유형에 일대일 대응성이 높은 상기의 3개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우선 적용한.
- 현행 시설공사 종합심사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으로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시설공사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가중치 방식(Weighted Criteria)”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채택한다.
- “가중치 방식”은 수행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에 각각의 배점 비중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비중을 곱하여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가격평가는 개찰 이후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투찰한 가격을 활용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우월한 것으로 결정한다.

□ 3대 용역 유형별 종합심사 세부기준 마련 시 평가모듈별 추가적인 평가요소(항목)가 필요할 경우, 현행 평가모듈 및 평가요소와 유사성을 보유한 신규 평가요소의 도입 검토가 가능함.

○ 3대 용역 유형별 평가모듈 채택기준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의 세부평가 항목은 아래의 기술용역, 일반용역, 시설공사 등 현행 적격심사 체계 하에서 평가모듈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요소(항목)를 분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함.

○ 따라서 용역유형별·계약 및 이행 단계별 적합 평가모듈 선정 후 평가모듈별 평가요소를 “평가요소 저장소”에서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하여 평가기준을 마련이 가능함.

□ 종합심사제 평가기준 마련 시 필수 평가모듈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모듈별 평가항목을 30% 이상을 적용할 경우, 3개 이상의 평가요소 선택(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2개로 조정 가능), 20% 이상을 적용할 경우 2개 이상의 평가요소 채택(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개로 조정 가능), 20% 미만을 적용할 경우 1개의 평가요소를 선택함.

○ 평가모듈별 평가요소 도입 시,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최대 배점 비중은 기본 평가점수의 합계의 만점 대비 2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 평가 기준은 추정금액 규모, 서비스 난이도, 기술적 전문성 등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의 세부 적용구간을 설정하여 평가기준 마련이 가능함.

4. 용역 유형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 기준 마련

■ 3대 서비스 유형별 계약현황 및 적용 적합성 평가 결과

- 상대적 낙찰방법 적용 차이를 살펴보면 최저가 낙찰방법을 준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32.89개, 2015년 34.25개로 적용하고 있으며, 적격심사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28.5개, 2015년 33.67개를 적용하였고 협상계약의 경우 준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89.83개, 2015년 90.11개를 적용하고 있음.
- 추정금액별 용역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준컨설팅용역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간에서 발주 규모의 순위가 준컨설팅용역, 비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순으로 나타남.
- 참가업체 수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2014년 82.6개, 2015년 94.94개로 타 용역에 비해 참가업체 수가 많음.
- 낙찰율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약 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용역의 경우 약 93%인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금액은 추정금액과 연동되어 준컨설팅용역이 2014년 약 687억, 2015년 약 558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적용법령은 3대 용역유형 모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도별 3대 용역유형에 용역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5점에서 30점 사이로, 보통 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비

컨설팅용역에 대한 적용 적합도가 타 용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한 3대 서비스 유형별 종합심사 평가기준

(1)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기술영역(설계, 감리)

□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법·제도 적용 전략의 경우,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훈령) 및 협상방식(국가계약법 [기재부 예약 예규] 및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특례 운용기준을 제정함.
- 용역비 산정방식은 추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일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 입·낙찰 절차는 「EOI 제출-롱리스트-쇼트리스트 작성 단계」의 개념을 「입찰자 선정평가」에 적용하여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 탈락 방식으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함.
- 평가방식으로는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PQ 개념으로 한정하되 기존의 Pass/Fail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항목(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기술제안서 평가에 반영함.
- 기술자 평가방식은 기존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를 C.V.(이력서) 방식으로 전면 대체함.
- 과업지시서의 해외 사례의 경우, 기술부분과 함께 전문가가 중

심으로 이루어져 과업지시서-기술제안-가격제안이 모두 맞물려 있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이와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따름.

☐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안) 개요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목적은 공공발주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국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대한 특례로서 제정하기 위함임.
- 제정하는 이유는 건설기술용역 등 용역분야의 입·낙찰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추진할 경우 필요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2)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MICE 용역

☐ 공공조달 MICE 용역 관련 대가 보장 적정성 현안

- 일반적으로 대규모 MICE 용역의 경우 별도의 사후정산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MICE 용역을 이행한 업체의 정산내역서를 검증하여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사후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용역 이행과정 및 최종 결과가 바로 확인되는 MICE용역의 특성상 발주처 입장에서 대가에 합당한 서비스 품질 보장 요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져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계약에서 사후정산 쟁점

- MICE 용역과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총액확정 계약 사후정산요청에 대한 적절성 판단에 대한 요구와 질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 정부, 공공기관과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금액을 받는 절차에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총액확정계약시에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다수의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통해 용역대가를 감액함으로써 수익감소 등 경영안정성이 저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함.
- 발주기관이 용역특수조건에 정산조건을 정한 경우 그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

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MICE 용역의 사후정산 관련 문제점

① 형식적 측면의 문제점

- 현재 MICE용역의 계약방법은 입찰시점에서 당해 용역의 대가와 지급방법이 확정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사후정산 항목 이외에 원칙적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선금지급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증빙포함)와 용역완료 후 정산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원가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감액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없음.
- 확정계약 및 총액계약 방식의 채택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정확히 산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책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수주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용역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용역이 이행되었다면 비용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발주자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임.

②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 실제 대규모 용역 또는 이해과정의 복잡성이 높은 용역에서 발주자가 수주자의 용역 이행을 위한 비용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된 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해 적정히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원가검토를 통해 감액하는 형태로, 대개의 경우 증액되는 경우는 없으며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주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

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적정 지급 수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이 문제점임 .

- 따라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사후정산을 통해 대가에 합당한 용역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 부계약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총액계약방식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함.

(3)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청소용역 종합심사 평가기준(평가기준은 본문 내용 참조)

-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낙찰율이 88% 내외 수준으로 재분류된 3대 용역 유형 중 “인력투입 중심 용역” 중 대가 상향 필요성이 가장 높고, 입찰규모 분석결과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 용역은 전체 입찰건의 20% 내외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기준으로 종합심사제 적용 기준 추정가격 규모를 판단해 보면 5억 원 이상 입찰 건이 전체 입찰건수의 약 30% 내외, 10억 원 이상 입찰 건이 15% 내외로 10억 원 이상 구간에 적용하는 것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됨.
- 평가 시 타 용역과 달리 현행 공공부문 청소용역은 실제 용역을 이행하는 핵심인력인 청소근로자가 입찰참가업체 소속이 아닌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 승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였음.

- 따라서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을 보유한 입찰 건에서 청소용역 업체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식별하여 적용하였음.
- 추정가격 기준 10억 원 이상의 경우도 30억 원 이상(1등급), 20억 원 이상(2등급), 10억 원 이상(3등급)의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인 평가 시행함.

(가) 청소용역 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① 수행실적 심사

- 수행 업체의 실적에서는 최근 5년간 업체의 청소 용역 수행실적을 심사하고, 용역수행실적 규모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한 업체(법인)의 전문성 평가함. 1등급일 경우 100%이상일 때 20점, 60%미만일 때 18.5점을 부여하고, 3등급일 경우 60%이상일 때 10점, 60%미만일 때 9.5점을 부여함.

② 수행실적 심사

- 현행 공공부문 청소용역 입찰에서 절대다수인 청소근로자는 입찰참가/수행업체 소속이 아닌 선행 용역을 통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이므로 입찰참가업체의 청소용역 업체는 고용승계 인력이 아닌 입찰참가업체 상시고용인력 평가가 필요함.

③ 참여 근로자의 전문성

- 입찰참가업체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 인력의 용역현장 및 고용승계 인력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정도를 평가함. 참여 근로자의 전문성평가에는 최근 5년 간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으로 용역에서 현장관리 인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 경험

을 심사함.

④ 용역 근로자 임금보장도

-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실질적 처우 보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업체의 임금보장도를 반영하였고, 발주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차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청소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수준 유도 및 향상을 위해 입찰참가 업체가 이전 수행한 용역에서 고용 승계한 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을 평가함.
- 발주자 산출 기준 금액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인건비 기준이며, 발주자 산출금액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인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 평가함.
- 또, 종합심사제 대상 용역 건수 및 평균 입찰 참가업체 수를 고려하여 실적증명 발주기관에서 “업체의 임금보장도”와 관련한 증빙항목을 실적증명서에 추가 기재하여 발급 방안을 검토함.

⑤ 청소용역 결과 평가

- 용역결과 평가에서는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의 용역에서 수육관이 평가한 용역결과 보고서의 종합 평점을 심사함. 청소용역 발주기관의 정량 및 정성 평가는 50점, 외부 고객의 정량 및 정성평가는 50점으로 함.

(나)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 경영상태 평가에서는 신용등급평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고, 필요 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등으로 보완적 평가를 검토함.

(다)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 입찰참가 업체의 투찰가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경우, 획득한 평점에 보정계수 1.0을 곱하고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인건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 획득한 평점에 보정계수 0.8을 곱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의 산정근거인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인건비는 용역완료 시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임금대장 상 지급된 인건비 단가를 계약연도의 시중노임단가로 나누어 그 수준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 시 차등 평점함.

(라) 신인도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가점 항목은 10억 원 이상 대규모 청소용역 입찰에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 용역에서의 수행경험 평가를 반영하였고, 청소용역 산업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함.

① 수행전문성

- 신인도 세부심사에서 수행 전문성 평가는 당해 용역 제공 대상 건물에서 이전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용역평과 결과가 90점 이상, 당시 현장 관리 인력으로 참여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점을 배점함하고, 당해 용역의 용역 대상 건물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1점을 배점함.
- 용역 제공 장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고용 승계 인력 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기 수행 업체의 전문성을 인정함.

②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률

-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 중 수행전문성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률을 심사함. 청소용역 산업 특성 및 종사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70% 이상,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 고용비율이 50%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각각 1점씩 배점함.

③ 공동 수급체 구성

- 신인도 평가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에서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 용역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2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용역에서 1개 이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공동수급체 구성업체가 1개 이상인 경우 1점을 배점함.
- 이로 인해 대규모 청소용역 입찰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용역수행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④ 노동 관계법 위반 처분

- 신인도 세부평가의 노동관계법 위반 처분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평가기준의 노동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평가함.
- 신인도 항목 중 감점 항목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파견법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항목으로 최대 12점의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정적 근로조건 확보 노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함.

- 평가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제 115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각각 최대 3건까지 1건당 1점을 배점함.

⑤ 노사문화우수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분야에서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기업 선정 여부를 평가함. 여기서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을 부여함.

(마)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① 이행위험

- 안정적으로 정상적 용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사전 식별할 수 있도록 재무적 측면에서 계약이행 불확실성과 용역근로자 보호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낙찰자 선정 가능성 차단함.

② 용역근로자 보호 위험

-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근로조건 보장 가능성이 낮아 발생 가능한 피해 및 손실 예방하기 위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유무를 확인함. 만약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

5. 용역 종합심사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청소용역의 종합적 특성

- 청소용역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약 60%), 근로자의 성별(여성 근로자가 약 72%), 근로자의 나이(종사 근로자 평균연령 약 60세), 근속연수(평균 약 2.9년) 등 전반적으로 영세한 사업규모 및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대가 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당 업무시간 기준 가장 많은 근로를 하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수준에서 대가가 결정되는 한계로 평균 임금은 약 86.9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고 경력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거의 없으며, 특히 다수 종사자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가 연차별 임금상승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과급력이 큰 고용 부문으로 볼 수 있는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고용의 지속성과 대가보장의 적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청소용역 국가계약/입·낙찰제도 운영현황

- ☐ 현재 청소용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계약 일반용역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 청소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주로 채택하고 있는 평가항목은 주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전체 청소용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원 이하 입찰에서는 가격 배점이 최소 70 점, 2억 원 미만 용역에서는 가격 배점이 90점으로 사실상 가격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실상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근 3~5년간 용역실적으로 평가되고,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고용안정성과 및 대가보장성 측면)을 고려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자체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거나 신인도 가점을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나 일부 기관에 한정되고 있으며 적격심사 하에서 신인도 가점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적격심사의 특성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실제 최대 투찰 가능 수준으로 설정되어 사실상 평균 87.745% 전후로 낙찰율이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낙찰율과 관련하여 청소용역 입찰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대가 보장 문제점을 살펴보면,

- 발주자는 상기 가격조사금액에 대해 계약상대방인 용역업체에게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이 아닌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며 동시에 상기 단가의 과다 및 과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등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음.
- 발주자의 이러한 단서 조항은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원가

계산기준에서는 최대 계상치 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해당 비목별 최대 계상치를 반영한 조사금액보다 감액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함.

- 그러나 상기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이 작성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낙찰가격, 즉 계약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가 보장 측면에서 근본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 청소용역 국가계약/입·낙찰제도 개선방향성

(가) 산업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고연령, 장시간 근로, 저임금, 여성중심,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같이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정책지원 대상으로 속성을 지니고 있음.
- 사회적책임공공조달(SRPP) 관점의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은 장애인, 사회적 취약 계층(빈곤층, 노숙자 등)이며 EU 공공조달지침(EU Procurement Directive 2004)에서는 유보된 계약(Reserved contract)을 통해 해당 지원 대상들이 공급 가능한 모든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청소용역의 산업적 특성은 EU의 SRPP 관점에서 유보된 계약 및 낙찰방법으로서 MEAT 적용을 통한 종합적인 수행능력과 가격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방안의 마련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음.
- 사회적책임공공조달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적격성을 확보한 낙찰자 선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용

역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항목은 기본적인 용역실적, 참여근로자의 청소용역 전문성(경험) 등과 함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 사회적 취약계층 취업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낙찰방법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저임금 산업인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및 업체의 최소이윤 보장 관점에서 “가격고정형 수행능력(기술/품질)경쟁”형 최고낙찰방법 적용이 필요함.
- 또한 청소용역과 같은 지역기반형 용역의 경우 실질적 예산증액의 정당성을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신인도 가점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용역계약 기간 종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3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추진은 일반적인 계약방식이 아닌 성과기반용역계약제도(PBSC) 도입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함.

(나) 계약실태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 용역의 속성에 따른 대가 산정 특성을 살펴보면 인력투입 기반 용역은 사실상 “인력=제공가치(노동력)=획일적 최소 대가보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입찰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인원수와 비례하는 제공가치 노동력에 대한 한계 수익 수준으로 형성된 대가를 단순히 입찰 기술적 요인에 의해 감액한다면, 용역 제공 근로자에게 최소 생활 영위가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 경비 용역과 같은 인력투입기반 용역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이 기초금액(사업예산) 기준 중기중앙회 시중노임단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

사원 수준의 인건비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용역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함.

- 동시에 해당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소용역업체에도 최소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반용역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반영률의 50%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다) 최고가치 낙찰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식/기술기반 용역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요소가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Ⅱ을 적용하고 인력투입기반의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적격심사와 같이 양적인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Ⅰ을 운영함.

□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종합적인 발주 및 계약여건을 고려하여 최고낙찰제 관점의 가격평가방법 7개 정도를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7가지 유형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용역의 성격, 경쟁방법, 해당 용역산업의 특성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제시함.

- 어떤 가격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낙찰자의 선정은 “현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에 따른 최저가 입찰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형

태가 아닌 최고 종합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낙찰자 선정 기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여 청소용역에 대해서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가능토록 추가 검토.

□ 현재 시설공사 시범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부문은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 사회공헌관점(CSR)에서 역할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공사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재무적 여력이 있는 대형 시설공사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용역과 같이 인력투입 중심적 용역에서는 단순히 현재 시설공사의 종합심사제와 유사한 형태의 최고가치 낙찰방법의 도입은 청소용역에 적합한 대가산정 및 낙찰방법의 개선 기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음.

□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최고가치 관점의 낙찰방법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기술, 품질 등 비가격 요소에 우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적격심사 방식을 기준으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적용은 기술 및 가격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최고점자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달목적, 입찰 대상물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해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용역의 경우

- 입찰측면에서 최고가치 낙찰관점인 PQ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춘 본 입찰 업체 선정에 위한 PQ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낙찰측면에서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수준, 종사자의 고령화, 숙련도에 따른 임금상승을 정체, 제공시간, 장소, 인력의 삼중적 결합으로 타 업무 종사 등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한계 등의 대가제공 환경의 열악함이 매우 높은 분야임.
- 특수빌딩 분야 등에서 대해서는 수행능력평가를 강화하고 일반 빌딩 분야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큰 업체의 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생활임금 수준에서 책정된 대가산정 기준이 적용이 필요함.
- 상기방안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업체의 독과점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함.

■ 청소용역 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안)

- 청소용역 적격업체에게 적정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특성과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개선 대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안은 기존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청소용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기존과 같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임.

- 제2안은 가칭 종합적격심사로 최고가치 낙찰평가 방법 중 가중치 평가방식(weighted criteria)을 채택하여 용역수행능력과 가격평가 점수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한 후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임.
- 제3안은 전체적으로 제2안과 동일하나 가격 평점방법을 보완하여 용역이행능력의 변별력이 과도해질 경우 입찰이전에 평가기준에 따라 서열화 된 입찰참가업체 중 소수의 상위 수행능력보유 업체에게 낙찰기회가 독과점화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 검토한 대안 중 기존 적격심사의 개선방안은 청소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도가 낮으므로 종합적격심사(제2안)를 중심으로 용역이행능력과 가격평가 변별력의 상충관계(trade-off)를 조정하여 선도/후발 업체 간 적정 입찰참가 기회 보장이 가능토록 세부기준을 수립함.

6.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계약 분야 중 용역계약의 새로운 낙찰방법으로서 검토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대상 용역의 재분류, 재분류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역량 평가가 가능한 모듈형 종합심사 평가체계를 개발함.
- 개발된 모듈형 종합심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컨설팅, 준컨설팅, 비컨설팅 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적합도가 높은 기술용역, MICE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을 위한 세

부기준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단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역의 분류를 각각의 용역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인 지식, 기술, 경험,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용역에서 요구하는 핵심가치와 이를 구현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을 차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역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음.
- 2016년 5월 현재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및 일반용역 192개에 대하여 각각의 용역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계량적 평가를 시행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3대 유형으로 분류된 용역의 분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통해 기본적으로 각각의 용역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식 및 인력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형 종합평가체계를 도출함.
- 용역 종합평가를 위한 모듈은 총 7개로 이중 5개 모듈은 용역의 유형 구분 없이 용역계약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2개 평가모듈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실적으로 용역계약 체계 이외에도 물품 및 시설공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종합평가 요소를 공공조달 및 계약 절차 5단계별로 총 7개를 제시함.

- 한편 모듈형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재분류 된 3대 용역 유형 중 실제 심사기준은 개념적, 실무적 측면에서 즉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청소용역에 대해서만 도출하였음.
- 도출된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은 용역이행능력 등 5개 평가분야와 분야별 14개 평가항목을 채택하였음.
- 마지막으로 상기 재분류된 3대 용역유형, 용역유형별 차등화 된 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한 모듈형 종합평가체계 및 이를 활용한 용역분야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평가 심사세부기준의 적용 실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방안을 제시함.
- 첫째, 3대 용역유형 분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청소용역을 중심으로 용역계약에 종합평가 방식의 낙찰방법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이 요구됨.
- 셋째, 3대 유형으로 분류된 다양한 용역별 적합한 입·낙찰방법과 계약관련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용역별 입찰권 유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외에도 공공조달 및 계약 단계별로 요구되는 종합평가 구현을 위한 7개 항목에 대한 유기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2015년 국가계약 대상 중 물품 및 용역계약 분야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된 주요한 사실 중 하나는 국제적인 용역계약 추세가 최고가치 낙찰(Best Value)관점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분야에서 최고가치 낙찰 개념을 적용한 핵심은 용역의 핵심 제공가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이행능력, 즉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평가와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기존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능력과 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의 점수 충족 시 낙찰자로 선정하여 외견상 최고가치 낙찰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가격 중심의 평가방법이다.

용역분야의 최고가치 낙찰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용역대가, 입·낙찰기준,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수요와 지속가능성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역분야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서비스산업(17대 성장동력산업 중 MICE 등 서비스 분야 5대 산업 포함)으로 이동하는 상황과 궤를 같이하여, 공공부문 역시 용역의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예로, 조달청은 2014년 12.15%인 용역(서비스) 비중을 2017년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ICT/SW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게 평가방법과 계약조건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2013년 기준)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약 59.1%(5년 단위 산업연관표와의 차이 존재)로 선진국 대비 다소 낮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기준을 100으로 할 경우, 2001년 78.1%, 2005년 60.9%, 2010년 46.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적정 생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를 공공부문에 대입할 경우, 용역분야의 입·낙찰 시에도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차원의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의 경제성장 중 정책측면에서 용역산업 비중의 확대와 국가계약 중점 대상 분야의 변화 및 가치적 차원에서 용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분류에 기반한 계약제도 및 운영기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보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문화재 관련 용역과 같은 고도의 지식 및 전문성, 특수성이 필요한 용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용역에 대한 정교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계약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물품 및 용역 분야,

특히 용역분야에 최고가치 평가 개념을 채택하여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의 용역계약 대상 기술 및 일반용역에 대한 재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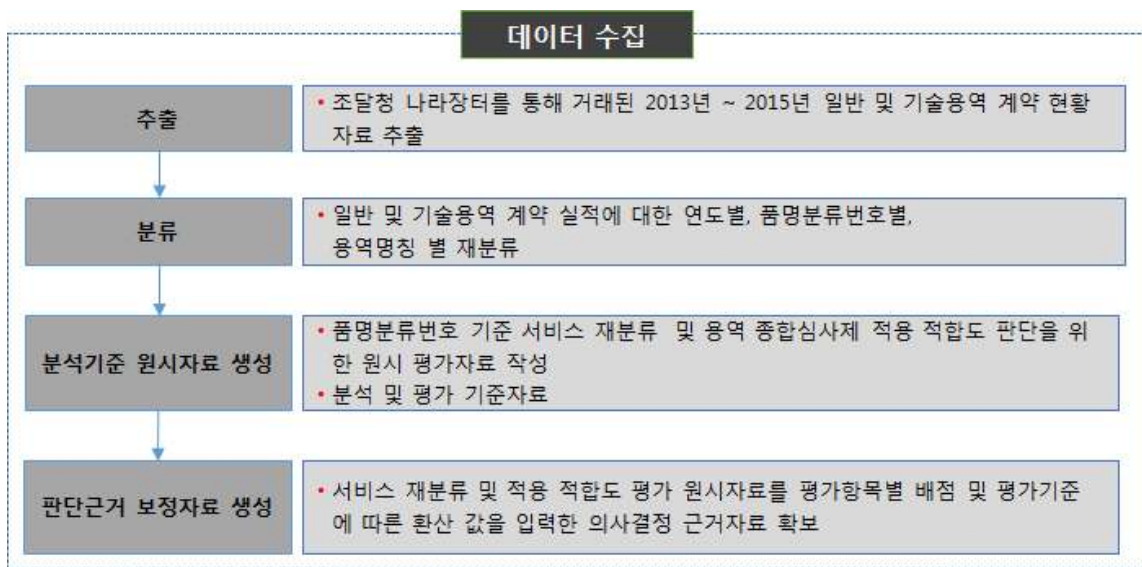
용역의 제공품질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생태계 축진을 위해 용역제공자의 종합적인 제고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의 품질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종합적인 유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주도의 선도적 견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용역계약체계의 전면적 개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용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입·낙찰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발전 및 기업의 유효경쟁력 향상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최근 시설공사 중심의 국가계약체계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했던 물품 및 용역분야 계약 체계의 강건성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물품 구매와 같은 유형 조달대상물

자와 차별성이 큰 용역부문의 입·낙찰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용역의 재분류

2.1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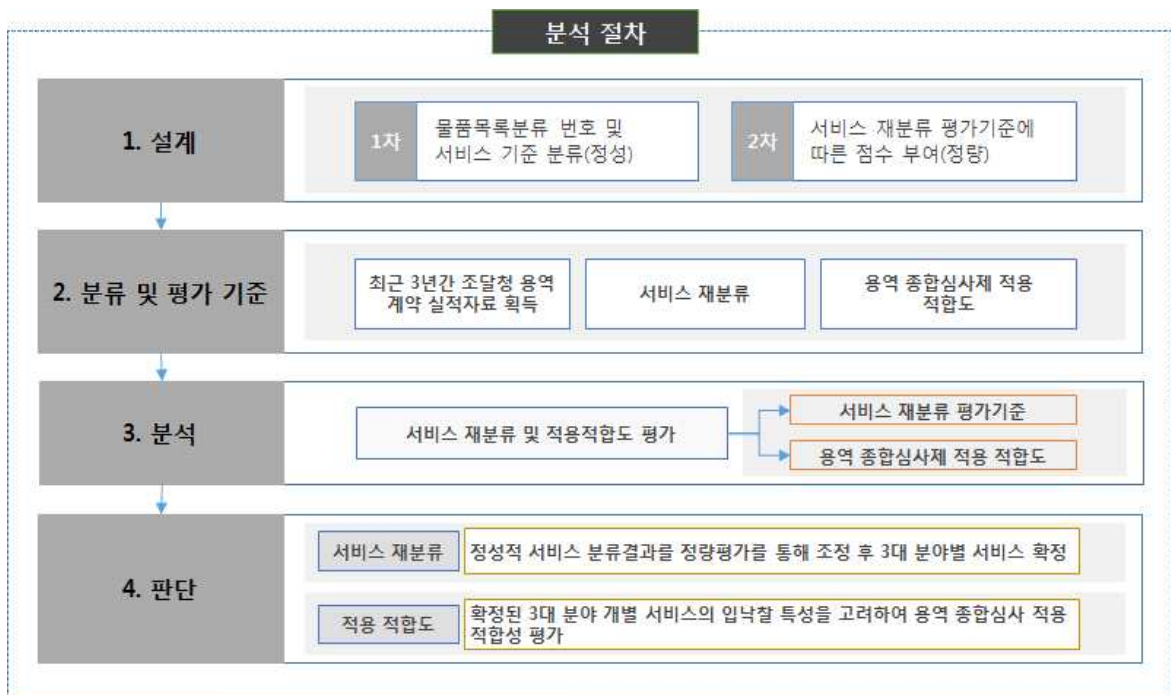
연구에 앞서 데이터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된 일반용역, 일반용역 계약 현황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계약실적에 대한 연도별, 품명분류번호별, 용역명칭별로 재분류한다. 그 후, 품명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재분류 및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판단을 위해 원시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환산 값을 입력한 의사결정 근거자료를 확보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데이터 수집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1차적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물품목록분류번호 및 서비스 기준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과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를 통해 서비스를 분류하는데, 먼저 정량평가를 통해 정성적 서비스 분류결과를 조정 후 3대 분야별 서비스를 확정한다. 그 다음, 확정된 3대 분야 개별 서비스의 입·낙찰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 종합심사 적용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분석 절차

2.2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을 위한 서비스 재분류

공공계약 대상으로서 용역의 고유한 특성과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평가요인은 개별 용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통 또는 유

사 속성을 보유한 용역을 그룹화하여 평가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계약 대상인 용역을 핵심제공가치,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 역량 등을 중심으로 3대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3대 용역 유형으로는 기술/지식중심(컨설팅), 기술/지식 및 인력결합(준컨설팅), 인력투입 중심 용역(비컨설팅)이 있다. 먼저 일반용역은 (1)연구조사 서비스(36개 품명) (2)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9개 품명) (3)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6개 품명) (4)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16개 품명) (5)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 서비스(27개 품명) (6)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8개 품명) (7)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31개 품명) (8)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20개 품명)로 분류했고, ICT용역은 16개, 기술용역은 23개로 분류했다. ([표1] 참조)

[표1] 3대 용역 유형별 용역 재분류 결과(대표 서비스 기준)

기술 및 지식 중심용역 (컨설팅 용역)	기술/지식 및 인력 결합용역 (준컨설팅 용역)	인력투입 중심용역 (비컨설팅용역)	비고
학술연구서비스(A1)	시장 및 여론조사(A1)	폐기물처리(A2)	
보험서비스(A5)	매체제작(A6)	폐기물재활용(A2)	
교육서비스(A7)	디자인(A6)	청소서비스(A3)	
법무서비스(A7)	홍보 및 마케팅(A6)	임대(A4)	
회계서비스(A7)	번역/통역서비스(A7)	수리(A4)	
보건서비스(A7)	문화재조사발굴 및 수리 (A7)	사업장 위탁(A4)	
ICT사업 컨설팅(B)	환경관리 서비스(A7)	여행서비스(A5)	
설계(C)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A7)	숙박서비스(A5)	
감리(C)	행사기획 및 대행(A8)	음식서비스(A5)	
CM(C)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A8)	운송서비스(A5)	
측량(C)	SW 및 시스템 개발(B)	농림어업서비스(A8)	

선박(C)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B)	기타(A8)	* 기타(8): 고객센터운영, 세탁, 구매대행, 장례 및 묘지, 사무지원, 경호, 인력공급, 기타사업지원서비스
기타(C)	운영 및 유지관리(B)		* 기타(C) : 설계, 감리, 측량, CM, 선박 이외 모든 기술용역
	DB구축 및 자료입력(B)		
	디지털콘텐츠 개발(B)		
* 일반용역(A) : (1)연구조사 서비스(36개 품명) (2)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9개 품명) (3)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6개 품명) (4)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16개 품명) (5)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 서비스(27개 품명) (6)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8개 품명) (7)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31개 품명) (8)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20개 품명) * ICT용역(B) : 16개 품명 * 기술용역(C) : 23개 품명			

일반용역의 연구조사 서비스는 “학술 연구 서비스”와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로 이루어져있다. “학술 연구 서비스”는 ‘경제 산업 연구조사 서비스’, ‘조달연구 조사 서비스’ 등 35개로 컨설팅 용역에 재분류 되었다.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는 1개로 준컨설팅 용역에 재분류 되었으며, 세부 품명 수는 3개가 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는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재활용”으로 각각 8개, 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비컨설팅 용역에 재분류 되었다.

시설물 관리 및 청소서비스는 6개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됐으며, ‘조경관리서비스’의 경우 세부 품목 수가 2개이다. 임대·위

탁 및 수리 서비스는 “임대서비스”, “수리서비스”, “사업장 위탁서비스”로 각각 8개, 7개, 1개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되었다. “임대서비스”의 ‘체력단련장비임대서비스’와 같은 경우, 23개의 세부 품목 수가 존재한다.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는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음식서비스”, “운송서비스”, “보험서비스”로 각각 1개, 1개, 3개, 17개, 4개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됐다. “운송서비스” 중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서비스’는 각각 4개의 세부 품목을 가진다. 또 “보험서비스” 중 ‘단체보험’의 경우 24개의 세부 품목을 가진다.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서비스는 “매체제작서비스”, “디자인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서비스”로 각각 6개, 1개, 1개의 준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된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는 총 8개로 분류되며, “교육서비스”, “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보건서비스”는 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되며, “번역 및 통역서비스”,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환경관리 서비스”,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은 준컨설팅 용역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는 총 4개로 분류된다.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사관 및 홍보관 설치서비스”는 준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되며, “농·림·어업 서비스”와 “기타서비스”는 비컨설팅용역으로 분류된다.([표2] 참조)

[표2] 공공조달 일반용역 서비스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	UNSPSC(품명)	품명번호	세부 품명수
연구조사 서비스 (36개)	(1) 학술연구서비스 * 35개 품명 컨설팅 용역(A1)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80909001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2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80909003	
		조달연구조사서비스	80909004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통계연구조사서비스	80909006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식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9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2	
		기상연구조사서비스	80909013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80909014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80909015	
		무역및국제통상연구조사서비스	80909016	
		통일대북연구조사서비스	80909017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정치선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9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0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2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80909023	
		소방방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4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25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80909026	
		방송언론연구조사서비스	80909027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28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80909029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70171599	2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	
		지구물리연구조사서비스	81151999	
	(2) 시장 및 여론 조사 컨설팅 용역 (A6)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80171501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 (9개)	(1) 폐기물 처리 * 8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2)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방사능폐기물처리서비스	76131501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분뇨처리서비스	76121797	
	(2) 폐기물 재활용 非컨설팅 용역 (A2)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시설물 관리 및 청소서비스 (6개)	시설물관리, 청소 등 * 6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3)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조경관리서비스	72102906	2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	
		소독서비스	76101590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16개)	(1) 임대 * 8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4)	자동차 임대서비스	78111808	
		운송장비임대서비스	73169001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73169002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체력단련장비임대서비스	73169004	23
		부동산임대서비스	80131598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73169005	
		기타물품임대서비스	73169006	
	(2) 수리 * 7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4)	운송장비수리서비스	73152177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73152178	
		컴퓨터및사무용기기수리서비스	73152179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72151296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72154010	
		기타수리서비스	73152180	
		차량도장서비스	78180299	
	(3) 사업장 위탁 非컨설팅 용역 (A4)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 서비스 (27개)	(1) 여행서비스 非컨설팅 용역 (A5)	여행서비스	90121599	
	(2) 숙박서비스 非컨설팅 용역 (A5)	숙박서비스	90111599	4
	(3) 음식서비스 * 3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음식점서비스	90101501	
		출장음식서비스	90101603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A5)			
	(4) 운송서비스 * 17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5)	항공화물운송서비스	78101599	
		철도화물운송서비스	78101604	
		수상화물운송서비스	78101799	
		복합화물운송서비스	78101999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	78102199	
		우편발송서비스	80141622	
		헬기수송서비스	78111501	
		항공여객운송서비스	78111502	
		수상여객운송서비스	781117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4
		도로화물운송서비스	78101808	4
		철도여객운송서비스	78111604	
		포장서비스	78121599	
		창고서비스	78131699	
		화물조사서비스	78141602	
		터미널서비스	78141899	
		주차장서비스	78181703	
	(5) 보험서비스 * 5개 품명 컨설팅 용역(A5)	자동차보험	84131503	
		생명보험	84131601	
		손해보험	84121598	
		제3보험	84131698	
		단체보험	84131699	24
매 체 제 작, 디 자 인, 홍 보·마케팅 서비스 (8개)	(1) 매체제작 * 6개 품명 準컨설팅 용역 (A6)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82121599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82121503	
		문서작성서비스	82111899	
		사진촬영처리서비스	82131699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음원제작서비스	82101698	
	(2) 디자인 準컨설팅 용역 (A6)	디자인서비스	82141502	
	(3) 홍보 및 마케팅 準컨설팅 용역 (A6)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교육 및 전문 직종·기술 서비스 (31개)	(1) 교육서비스 * 11개 품명 컨설팅 용역(A7)	수학여행서비스	86141797	3
		원거리교육서비스	86111599	2
		어학교육서비스	86111799	
		체험활동서비스	86141796	
		수련활동서비스	86141798	3
		취업지원교육서비스	86101899	
		정보화교육서비스	86101698	
		과학교육서비스	86101697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교육지원서비스	86141599	
		교양교육서비스	86101695	
	(2) 법무서비스 컨설팅 용역(A7)	법무서비스	80121699	
	(3) 회계서비스 컨설팅 용역(A7)	회계서비스	84111599	
	(4)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2개 품명 준컨설팅 용역 (A7)	번역서비스	82111804	
		통역서비스	82112090	
	(5) 문화재 조사· 발굴 및 수리 * 3개 품명 준컨설팅 용역 (A7)	문화재지표조사서비스	93141790	
		문화재수리보존서비스	93141797	
		문화재발굴조사서비스	93141789	
	(6) 보건서비스 * 3개 품명 컨설팅 용역(A7)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방역서비스	85119090	
		응급이송서비스	92101902	
	(7) 환경관리 서비 스 * 9개 품명 준컨설팅 용역 (A7)	대기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504	
		수질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707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606	
		소음조사측정서비스	77131603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01990	
		대기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590	
		수질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790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690	
		실내및기타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11690	
	(8) 기술 시험, 검 사 및 분석 준컨설팅 용역 (A7)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행 사 관 리 및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 (20개)	(1) 행사 기획 및 대행 * 5개 품명 준컨설팅 용역 (A8)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02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02	
		공연기획및대행서비스	90131590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2) 전시관 및 홍 보관 설치 * 2개 품명 준컨설팅 용역 (A8)	전시장치설치서비스	72154099	2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	
	(3) 농·림·어업 서비스 * 5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농업서비스	70149001	
		축산업서비스	70129001	
		임업서비스	70159001	

	(A8)	어업서비스	70109001	
		포획및방생서비스	70161502	
	(4) 기 타 * 8개 품명 非컨설팅 용역 (A8)	고객센터운영서비스	80141619	
		세탁서비스	91111502	
		구매대행서비스	80101706	
		장례및묘지서비스	85171599	
		사무지원서비스	80161599	
		경호서비스	92121590	
		인력공급서비스	80111699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합계	152개 품명		216

ICT용역의 경우 대부분 준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 되었다. 다만 ‘정보화 전략 계획 서비스’나 ‘정보 시스템 감리 서비스’와 같은 “ICT 컨설팅서비스”는 컨설팅 서비스로 재분류됐다.([표3] 참조)

[표3] 공공조달 ICT용역 서비스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	UNSPSC(품명)	품명번호	세부 품명수
ICT 서비스 (16개)	ICT사업 컨설팅 컨설팅 용역(B)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SW 및 시스템 개발 준컨설팅 용역(B)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준컨설팅 용역(B)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운영 및 유지관리 준컨설팅 용역(B)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전산장비유지보수서비스	811123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	
	DB구축 및 자료입력 준컨설팅 용역(B)	데이터서비스	81112002	2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디지털콘텐츠 개발 준컨설팅 용역(B)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80171602	
합계		16개 품명		17

기술용역의 경우 설계, 감리, CM, 측량, 선박과 기타서비스 23개로 분류되었으며, 모두 컨설팅 용역으로 재분류됐다. ([표4] 참조)

[표4] 공공조달 기술용역 서비스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	UNSPSC(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수
기술 용역 (23개)	설계 컨설팅 용역(C)	건축설계용역	81101508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조경설계용역	81101597	
		문화재설계용역	81109090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전기설계용역	81101701	
		정보통신설계용역	81111708	
		소방설계용역	81102701	
		교통설계용역	81102201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안전진단용역	81141801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81141805	
	감리 컨설팅 용역(C)	건축감리용역	81101590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소방감리용역	81101594	
	CM 컨설팅 용역(C)	건축CM용역	81101513	
		토목CM용역	81101570	
	측량 컨설팅 용역(C)	측량용역	81151604	
	선박 컨설팅 용역(C)	선박설계·감리용역	81101506	
	기타 컨설팅 용역(C)	기타기술용역	81108989	
	합계	23개 품명		23

용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입·낙찰 방법 적용을 위하여 현재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용역을 “핵심제공가치의 기술지식 집약도” 등 6개 평가차원에 따라 평가하여 “기술 및 지식 중심 용역(컨설팅)” 기술·지식/인력 결합 용역(準컨설팅) 용역, 인력투입 중심 용역(非컨설팅)의 3개 분야로 재분류한다. ([표5] 참조)

용역의 핵심제공 가치가 기술 및 지식기반으로 산출되는 정도 차원에서는 지식, 기술, 특허 등 지적 자산화가 가능한 무형자산 산출 또는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노동력 제공에 따라 용역이 결정되는 정도를 말한다. 핵심결과물의 유형화 가능 수준 차원에서는 용역을 제공한 결과물의 유형화된 자료와 결과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대가산정 체계의 상세화 수준 차원에서는 세부과업 내용과 연계된 상세화 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말한다. 공급자격 확보의 난이도 차원은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자 등록요건이 아닌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별도의 자격, 지식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하며,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창출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이 속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결과물의 파급력 차원에서는 용역 결과물이 해당 용역에 한정된 최종결과물인지, 다른 용역,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등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표5] 3대 용역 유형별 재분류 평가체계

평가차원	내용	평가척도(변수)	측정방법
용역의 핵심제공 가치가 기술 및 지식 기반으로 산출	지식, 기술, 특허 등 지적 자산화가 가능한 무형자산 산출 또는 인력 투입을 통한 직접적 노동력 제공	용역 및 결과물의 기술 및 지식집약도	리커트 척도 (스케일)

정도	에 따라 용역이 결정되는 정도		
핵심결과물의 유형화 가능 수준	용역 제공 결과물의 유형화된 자료와 결과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	용역결과물의 유형화 가능 수준	
대가산정 체계의 상세화 수준	세부과업 내용과 연계된 상세화된 대가기준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용역	과업량 기준의 상세한 대가산정 가능 수준	
공급자격 확보의 난이도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자 등록요건이 아닌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별도의 자격, 지식,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정도	용역제공을 위한 전문자격 (인증, 경력 등) 요구 수준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창출 수준	해당 용역이 속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용역 업종별 부가가치 창출 수준(비율)	
서비스 결과물의 파급력	용역 결과물이 당해 용역에 한정된 최종결과물인지 또는 다른 용역,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등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물인지 여부	용역 결과물의 타분야의 투입물로 활용되는 정도	

2.2.1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

(1)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과 판단기준

현행 192개 서비스를 3대 유형으로 1차 분류(정성) 후 상기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2차 재분류(정량)를 한다. 기술지식 집약도 차원에서는 수행 인력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 보유 및 활용 수준에 따라 10점 만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특유성, 전문성, 복합성 수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용역 결과물 유형화 수준 차원에서는 용역의 핵심 결과물 또는 평가자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5점 만점, 유형화된 용역결과물 작성의 난이도, 복잡성 및 고유한 지식 포함 수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과업량 기준 상세 대가 산정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의 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고유한 대가산정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3점 만점, 대가산정 체계의 복잡성 상세화 수준에 따라 2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전문자격 요구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자격 요구 여부에 따라 3점 만점, 해당 자격 획득의 난이도에 따라 2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부가가치 창출 수준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이 속한 산업의 부가가치율 여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마지막으로 성과물의 타 분야 활용을 차원에서는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타 용역, 공사의 선행 결과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6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그 다음 2차 분류 후, 관련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검증을 통해 3차 분류 시행 후 확정한다. ([표6] 참조)

[표6] 서비스 재분류 평가기준

변수명	정의	판단기준	배점
기술지식 집약도	지식, 기술, 특허 등 지적 자산화 가능한 무형자산 산출 또는 인력 투입을 통한 직접적 노동력 제공에 따라 용역이 결정되는 정도	- 핵심결과물 산출이 단순 인력 투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행 인력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보유 및 활용 수준에 따라 결정 여부 : 10점 -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특유성, 전문성, 복잡성 수준 : 5점	15점
용역결과물 유형화 수준	용역 제공 결과물의 유형화된 자료와 결과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	- 용역결과물이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문서가 용역의 핵심결과물 또는 평가자료 활용 가능 여부 : 5점 - 유형화된 용역결과물 작성의 난이도, 복잡성 및 고유한 지식 포함 수준 : 5점	10점
과업량 기준 상세 대가산정	세부과업 내용과 연계된 상세화된 대가기준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고유한 대가산정 체계(품셈, 대가기준 등) 존재 여부 : 3점	5점

수준		- 대가산정 체계의 복잡성, 상세화 수준 : 2점	
전문자격 요구 수준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자 등록 요건이 아닌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별도의 자격, 지식,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정도	-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자격 (면허, 인증, 자격) 요구 여부 : 3점 - 해당 자격 획득의 난이도 : 2점	5점
부가가치 창출 수준	해당 용역이 속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 해당 용역이 속한 산업의 부가가치율	5점
성과물의 타 분야 활용율	용역 결과물이 당해 용역에 한정된 최종결과물인지 또는 다른 용역,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등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물인지 여부	-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타 용역, 공사의 선행 결과물로 활용되는지 여부: 6점 - 타 분야 용역, 공사 수행 시 필수 결과물 활용 여부: 4점	10점

[표6]을 통해 얻은 점수를 근거로, 종합적인 분류기준 점수가 45점 이상, 분류 기술점수(기술지식 집약도)가 13점 이상, 분류 기준 점수(타 분야 활용도)가 7점 이상인 경우 기술 및 지식 중심의 컨설팅용역으로 분류한다. 종합적인 분류기준 점수가 35점 이상, 분류 기술점수(기술지식 집약도)가 10점 이상, 분류 기준 점수(타 분야 활용도)가 5점 이상인 경우 기술 및 지식, 인력 중심의 준컨설팅 용역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분류 기준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 인력투입 중심의 비컨설팅 용역으로 분류한다. ([표7] 참조)

[표7] 서비스 재분류 판단기준

서비스 분류	분류 기준점수 (종합)	분류 기준점수 (기술지식 집약도)	분류 기준점수 (타분야 활용도)
컨설팅	45점 이상	13점 이상	7점 이상
준컨설팅	35점 이상	10점 이상	5점 이상
비컨설팅	35점 미만	-	-

(2) 서비스 재분류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유효하게 등록된 192개의 서비스를 정성분석을 통해 컨설팅, 준컨설팅, 비컨설팅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8] 참조)

[표8] 서비스 재분류 결과

신규용역	서비스 재분류	UNSPSC(품명)	합계
컨설팅 용역	A1 (35개)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조달연구조사서비스,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통계연구조사서비스,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식품연구조사서비스,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기상연구조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무역및국제통상연구조사서비스, 통일대북연구조사서비스,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정치선거연구조사서비스,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소방방재연구조사서비스,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방송언론연구조사서비스,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교통연구조사서비스,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지구물리연구조사서비스,	82개
	A5 (5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단체보험	
	A7 (16개)	수학여행서비스, 원거리교육서비스, 어학교육서비스, 체험활동서비스, 수련활동서비스, 취업지원교육서비스, 정보화교육서비스, 과학교육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교양교육서비스, 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의료검진서비스, 방역서비스, 응급이송서비스	
	B (3개)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C (23개)	건축설계용역, 토목설계용역, 조경설계용역, 문화재설계용역, 상하수도설계용역, 전기설계용역, 정보통신설계용역, 소방설계용역, 교통설계용역, 도시계획용역, 안전진단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건축감리용역, 토목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 정보통신감리용역, 소방감리용역, 건축CM용역, 토목CM용역, 측량용역, 선박설계·감리용역, 기타기술용역	

준컨설팅 용역	A1 (1개)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44개
	A6 (8개)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문서작성서비스, 사진촬영처리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음원제작서비스, 디자인서비스, 홍보및마케팅서비스	
	A7 (15개)	번역서비스, 통역서비스, 문화재지표조사서비스, 문화재수리보존서비스, 문화발굴조사서비스, 대기오염조사측정서비스, 수질오염조사측정서비스,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소음조사측정서비스,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대기오염방지복원서비스, 수질오염방지복원서비스,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실내및기타오염방지복원서비스, 기술검사분석서비스	
	A8 (7개)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공연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장치설치서비스, 기타물품설치서비스	
	C (13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전산장비유지보수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데이터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비컨설팅 용역	A2 (9개)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방사능폐기물처리서비스,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분뇨처리서비스, 폐기물재활용서비스	66개
	A3 (6개)	건물청소서비스, 기타청소서비스, 조경관리서비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소독서비스	
	A4 (16개)	자동차 임대서비스, 운송장비임대서비스,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체력단련장비임대서비스, 부동산임대서비스,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기타물품임대서비스, 운송장비수리서비스,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컴퓨터및사무용기기수리서비스,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기타수리서비스, 차량도장서비스,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A5 (22개)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음식점서비스, 출장음식서비스, 구내식당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철도화물운송서비스, 수상화물운송서비스, 복합화물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 우편발송서비스, 헬기수송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수상여객운송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서비스, 철도여객운송서비스, 포장서비스, 창고서비스, 화물조사서비스, 터미널서비스, 주차장서비스	
	A8 (13개)	농업서비스, 축산업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스, 포획및방생서비스, 고객센터운영서비스, 세탁서비스, 구매대행서비스, 장례및묘지서비스, 사무지원서비스, 경호서비스, 인력공급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합계			192개

2.2.2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기준

(1)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기준과 판단기준

용역 종합심사제를 적용한 적합도 평가기준에는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과 “입찰참가 경쟁도”가 있다.([표9] 참조). 평가 방법은 각 항목 당 10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각각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평가한 후, 상위 10%에는 10점, 하위 100%에는 1점을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에서는 현행 용역 계약방법 중 적격심사 비중이 클수록 높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공공조달 파급력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계약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대가보장 수준 상향의 필요성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평균낙찰율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고, 용역발주 규모의 적합성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고시금액이 2.1억 원 미만인 입찰공고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입찰참가 경쟁도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평균 입찰참가 업체 수가 적을수록 낮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표9]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기준

변수명	정의	판단기준	배점
현행 계약방법의	현행 국내 종합심사제의 특성상 적격심사제도의 개선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현행 용역 계약방법 중 적격심사 비중이 클수록 고평가 *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10점

적합성	적용 비중의 높은 용역이 적용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평가 후 상위10% 10점 ~ 하위100% 1점 환산 값	
공공조달 파급력	종합심사제 적용을 통하여 낙찰율 상승 등이 이루어지고 그 수혜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급규모(계약금액)가 클수록 파급력이 커서 적용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계약금액 규모가 클수록 고평가 *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평가 후 상위10% 10점 ~ 하위100% 1점 환산 값	10점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대가 보장수준의 적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용역 종합심사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므로 기존 적격심사 하에서 낙찰율이 낮은 용역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평균 낙찰율이 낮을수록 고평가 *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평가 후 상위10% 10점 ~ 하위100% 1점 환산 값	10점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기술평가변별력이 크면서 최고점수 획득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종합심사제의 특성상 절대 다수의 일반 업체들의 입·낙찰기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시 금액을 기준이하의 입찰 비중이 높은 용역에 대해서는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고시 금액(2.1억 원) 미만 입찰공고 비율이 높을수록 고평가 *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평가 후 상위10% 10점 ~ 하위100% 1점 환산 값	10점
입찰참가 경쟁도	용역 종합심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이 검증된 상대적 소수 업체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적격심사와 달리 입찰참가자 모두를 평가해야 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 입찰참가 업체수가 작아 경쟁도가 낮을 경우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의 평균 입찰참가 업체수가 적을수록 고평가 * 원시 평가결과를 10분위로 평가 후 상위10% 10점 ~ 하위100% 1점 환산 값	10점

[표9]에서 각 항목 당 배점된 점수를 합산한 결과, 35점 이상이면 “매우 적합”, 30점 이상이면 “적합“, 25점 이상이면 ”보통“, 20점 이상이면 ”부적합“, 그리고 20점 미만인 경우 ”매우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표10] 참조)

[표10]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수준	판단 기준 점수	적합수준	판단 기준 점수
매우 적합	35점 이상	부적합	20점 이상
적합	30점 이상	매우 부적합	20점 미만
보통	25점 이상		

(2)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결과

① 컨설팅용역

82개의 컨설팅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4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78개의 서비스를 분석했다.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등 2개에서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등 23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35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등 12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등 6개에서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되었다.([표11] 참조)

[표11] 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코드	품명분류 번호	품명	계약방법 의 적절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평가 결과
B	80101699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4.3	8.7	10.0	7.7	4.3	35.0	매우적합
C	81141805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10.0	2.0	7.0	10.0	8.0	37.0	매우적합
A1	80909011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5.0	6.7	3.3	6.3	9.0	30.3	적합
A1	80909013	기상연구조사서비스	5.0	8.5	2.5	6.5	10.0	32.5	적합

A1	80909018	국방연구조사서비스	4.5	7.0	3.5	6.0	9.5	30.5	적합
A1	80909031	교통연구조사서비스	6.7	3.3	6.0	8.7	8.7	33.3	적합
A1	80909032	기타연구조사서비스	5.7	8.7	3.0	7.7	5.7	30.7	적합
C	81101506	선박설계·감리용역	9.5	7.5	8.5	3.0	4.0	32.5	적합
C	81101508	건축설계용역	8.5	10.0	8.0	3.0	1.5	31.0	적합
C	81101510	토목설계용역	9.5	8.5	9.5	1.5	2.0	31.0	적합
C	81101513	건축CM용역	9.5	9.5	10.0	2.0	2.0	33.0	적합
C	81101527	상하수도설계용역	9.7	6.3	9.0	4.3	3.0	32.3	적합
C	81101570	토목CM용역	10.0	9.0	10.0	1.5	3.0	33.5	적합
C	81101590	건축감리용역	9.0	9.5	9.0	2.5	1.0	31.0	적합
C	81101591	토목감리용역	10.0	8.0	10.0	2.0	3.0	33.0	적합
C	81101592	전기감리용역	8.0	4.0	8.5	8.0	1.5	30.0	적합
C	81101597	조경설계용역	10.0	6.5	9.0	2.5	2.5	30.5	적합
C	81101701	전기설계용역	8.0	3.0	7.0	10.0	2.0	30.0	적합
C	81102701	소방설계용역	10.0	5.0	9.0	1.0	5.0	30.0	적합
C	81108989	기타기술용역	6.5	7.3	6.8	5.8	4.0	30.3	적합
C	81141801	안전진단용역	6.6	4.6	8.2	7.4	5.2	32.0	적합
A7	84111599	회계서비스	6.3	7.0	8.3	5.3	4.7	31.7	적합

A5	84121598	손해보험	2	7	10	7.3	5.7	32	적합
A5	84131503	자동차보험	4	6.5	8	7	9	34.5	적합
A7	85101599	의료검진서비스	6.7	6.0	3.7	6.3	8.0	30.7	적합
C	77101504	환경영향평가용역	9.0	5.0	9.5	3.5	2.3	29.3	보통
B	80101507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3.0	7.3	4.0	5.7	7.3	27.3	보통
A1	80909001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3.0	6.0	2.7	6.0	8.0	25.7	보통
A1	80909002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4.7	3.0	1.3	8.0	9.7	26.7	보통
A1	80909003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5.0	1.7	1.3	8.7	10.0	26.7	보통
A1	80909004	조달연구조사서비스	2.5	4.0	4.0	8.5	7.0	26.0	보통
A1	80909005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4.5	4.5	3.0	7.5	5.5	25.0	보통
A1	80909006	통계연구조사서비스	4.3	6.3	3.0	7.0	7.3	28.0	보통
A1	80909007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4.5	5.5	1.5	7.0	9.5	28.0	보통
A1	80909008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4.7	7.0	1.7	6.3	9.3	29.0	보통
A1	80909010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3.3	7.3	1.7	5.3	8.0	25.7	보통
A1	80909014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3.0	6.7	2.3	7.7	8.0	27.7	보통
A1	80909015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3.7	4.3	3.3	6.3	8.7	26.3	보통
A1	80909016	무역및국제통상연구조사서비스	4.0	2.7	1.3	9.0	8.7	25.7	보통
A1	80909021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5.7	5.3	4.0	6.3	6.7	28.0	보통

A1	80909022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4.0	4.3	3.3	8.7	9.0	29.3	보통
A1	80909023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4.0	1.7	4.0	9.0	8.3	27.0	보통
A1	80909024	소방방재연구조사서비스	4.7	3.3	3.0	8.7	8.3	28.0	보통
A1	80909025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5.0	7.0	4.0	5.3	8.3	29.7	보통
A1	80909026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3.5	6.0	3.5	5.5	8.5	27.0	보통
A1	80909028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6.7	7.3	4.3	4.0	6.7	29.0	보통
A1	80909030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3.5	2.5	5.0	6.0	8.0	25.0	보통
C	81101524	도시계획용역	6.8	6.5	8.3	2.3	5.0	28.8	보통
C	81101593	정보통신감리용역	5.5	5.5	9.3	4.0	4.0	28.3	보통
C	81101594	소방감리용역	4.0	2.5	8.0	8.5	2.0	25.0	보통
C	81102201	교통설계용역	7.7	4.7	7.7	5.0	4.7	29.7	보통
C	81109090	문화재설계용역	9.5	5.5	9.0	4.0	1.5	29.5	보통
C	81111708	정보통신설계용역	6.6	5.0	6.8	3.4	5.2	27.0	보통
C	81151604	측량용역	7.6	3.2	6.8	5.4	5.4	28.4	보통
A5	84131601	생명보험	4.3	9	4.7	1.7	9.3	29	보통
A5	84131699	단체보험	4.5	3.0	5.5	2.5	9.5	25.0	보통
A7	86101696	기타교육서비스	3.3	7.7	3.0	6.0	5.3	25.3	보통
A7	86111599	원거리교육서비스	3.7	5.3	5.7	6.3	6.0	27.0	보통

A7	86111799	어학교육서비스	3.7	5.0	4.7	8.3	6.3	28.0	보통
A7	86141599	교육지원서비스	4.7	6.0	4.3	5.3	7.7	28.0	보통
B	80101698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2.0	7.5	5.0	3.5	6.0	24.0	부적합
A1	80909009	식품연구조사서비스	3.3	4.7	1.0	7.3	8.0	24.3	부적합
A1	80909012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2.3	5.3	2.3	6.7	7.0	23.7	부적합
A1	80909017	통일대북연구조사서비스	3.0	5.0	2.0	7.0	7.5	24.5	부적합
A1	80909019	정치선거연구조사서비스	2.0	2.0	3.0	9.0	6.0	22.0	부적합
A1	80909020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2.7	2.7	2.7	8.3	7.0	23.3	부적합
A1	80909027	방송언론연구조사서비스	3.7	2.0	3.0	6.3	8.3	23.3	부적합
A1	80909029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3.5	6.0	2.0	4.0	8.5	24.0	부적합
A5	84131698	제3보험	2.5	3	8	1.5	7.5	22.5	부적합
A7	86101695	교양교육서비스	3.0	4.3	4.0	6.0	7.3	24.7	부적합
A7	86101698	정보화교육서비스	2.7	5.3	2.3	5.7	7.7	23.7	부적합
A7	86101899	취업지원교육서비스	1.7	7.0	3.7	6.3	5.3	24.0	부적합
A1	70171599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5.0	3.0	1.0	1.0	10.0	20.0	매우부적합
A7	80121699	법무서비스	2.0	2.0	1.0	8.0	6.0	19.0	매우부적합
A1	81151799	지질연구조사서비스	2.0	4.0	2.0	3.0	6.0	17.0	매우부적합
A7	86101697	과학교육서비스	2.7	3.3	2.7	3.3	7.0	19.0	매우부적합

A7	86141796	체험활동서비스	27	4.0	3.0	1.7	6.0	17.3	매우부적합
A7	86141797	수학여행서비스	1.0	2.3	6.3	5.0	3.3	18.0	매우부적합

② 준컨설팅용역

44개의 준컨설팅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2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42개의 서비스를 분석했다.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음원제작서비스는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실내맞기타오염 사측정서비스 등 15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전시장치설치서비스 등 19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기타물품설치서비스 등 7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된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표12] 참조)

[표12] 준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코드	품명분류 번호	품명	계약방법 의 적절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평가 결과
A6	82101698	음원제작서비스	10	1	10	10	4	35	매우적합
A7	77101990	실내맞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10	1	8	10	5	34	적합
A7	77111690	실내맞기타오염방지복원서비스	4	1	7	10	8	30	적합

A7	77121504	대기오염조사측정서비스	8.5	4.5	8	10	3	34	적합
A7	77121707	수질오염조사측정서비스	9	2	10	10	3	34	적합
B	81111599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6	10	4.3	3	7	30.3	적합
B	81111801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6	9.7	3.7	2.7	9	31	적합
B	811118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6	10	4	3	7	30	적합
B	81112002	데이터서비스	5.7	9.7	5.3	4	6.7	31.3	적합
B	81112199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6	8	5	6	6	31	적합
B	81112299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6	9.3	4.3	5	7.3	32	적합
B	81112399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6.7	9.3	6	5	4.3	31.3	적합
B	81151699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6	9.7	7.3	2	5.7	30.7	적합
A6	82121599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6	9	4.7	6.7	3.7	30	적합
A7	93141789	문화재발굴조사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적합
A7	93141790	문화재지표조사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적합
A8	72154099	전시장치설치서비스	3	7	5	6.3	5.7	27	보통
A7	77121606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8	4	8	3.5	3	26.5	보통
A7	77121690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10	2	10	1	3	26	보통
A7	77121790	수질오염방지복원서비스	9	1.5	7.5	7.5	2	27.5	보통
A8	80141990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4.7	9.3	3.3	5.7	5.3	28.3	보통

A6	80171501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2.5	1	7.5	9.5	6	26.5	보통
B	80171602	온라인홍보및방송콘텐츠서비스	1.7	6.7	4.7	7	5.7	25.7	보통
A6	80171699	홍보및마케팅서비스	3	9	5	4	4.7	25.7	보통
B	81111598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3.3	8.3	5.7	3.7	6	27	보통
B	81111799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4.3	10	4.7	2	6	27	보통
A7	81141599	기술검사분석서비스	4.7	4.3	4.7	7.3	7.7	28.7	보통
A7	82111804	번역서비스	3	5	4.7	7.7	4.7	25	보통
A6	82111899	문서작성서비스	2.7	7.7	2.3	7	7	26.7	보통
A6	82131603	동영상제작서비스	4.3	8.7	6	6.7	3.7	29.3	보통
A6	82131699	사진촬영처리서비스	2	3.3	6.3	7.3	6	25	보통
A6	82141502	디자인서비스	3	5.3	6.7	7.7	5	27.7	보통
B	8611159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	8.3	3	6.3	6	25.7	보통
A8	90151802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3	7.3	4.7	5.3	7.3	27.7	보통
A7	93141797	문화재수리보존서비스	5.5	3	3.5	6	7.5	25.5	보통
A8	72154090	기타물품설치서비스	1.5	3	7.5	5	5.5	22.5	부적합
A8	80141902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1.7	6.7	3.7	4.3	6	22.3	부적합
B	81111811	운영위탁서비스	6.3	9.3	3.3	2.3	3.3	24.7	부적합
A7	82112090	통역서비스	4	1	1	8	8	22	부적합

A6	82121503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1	5	3	8	4	21	부적합
A8	90131590	공연기획및대행서비스	2	4	3.7	5.7	6	21.3	부적합
A8	90151890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4	6.3	5.3	4.7	4.3	24.7	부적합

③ 비컨설팅용역

66개의 비컨설팅용역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유효하지 않은 15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51개의 서비스를 분석했다. 용역 종합심사제 결과,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는 “매우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등 20개에서는 ”적합“으로 평가되었고, 어업서비스 등 19개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농업서비스 등 7개에서는 ”부적합“으로 평가되었고, 고객센터운영서비스는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됐다.([표 13] 참조)

[표13] 비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평가 결과

코드	품명분류 번호	품명	계약방법 의 적절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평가 결과
A2	76121699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8.3	7.7	8.7	6.3	4.3	35.3	매우적합
A3	72101597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9	10	8	2	1	30	적합

A4	73152177	운송장비수리서비스	7.3	7.7	5	5	7.3	32.3	적합
A4	73152178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5	5.3	2	8	10	30.3	적합
A4	73152180	기타수리서비스	7	9	5.3	4.7	4.3	30.3	적합
A4	73169001	운송장비임대서비스	6.7	3.3	5.7	6.7	8.7	31	적합
A4	73169005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6	5	6.7	6.7	6.3	30.7	적합
A3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	10	8	3	1	31	적합
A2	76121598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9	10	9	3.3	1	32.3	적합
A2	76121798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6.3	4	8	7.3	5.3	31	적합
A2	76121901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8.7	3	9.7	8.3	4.3	34	적합
A2	76121999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8	5	9.3	7.7	3.7	33.7	적합
A2	76122399	폐기물재활용서비스	8.7	7.3	9.3	4.7	3.7	33.7	적합
A5	78101808	도로화물운송서비스	8	8.7	10	4.7	2.3	33.7	적합
A5	78101999	복합화물운송서비스	8.3	4.3	9.7	5	5	32.3	적합
A4	78111808	자동차임대서비스	8.3	6.3	6.3	4.7	4.7	30.3	적합
A5	781118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8.3	9.3	7	5	3.3	33	적합
A5	80141622	우편발송서비스	9.3	3.3	8.3	9	4.3	34.3	적합
A5	90121599	여행서비스	7	9	5	6.7	2.7	30.3	적합
A8	91111502	세탁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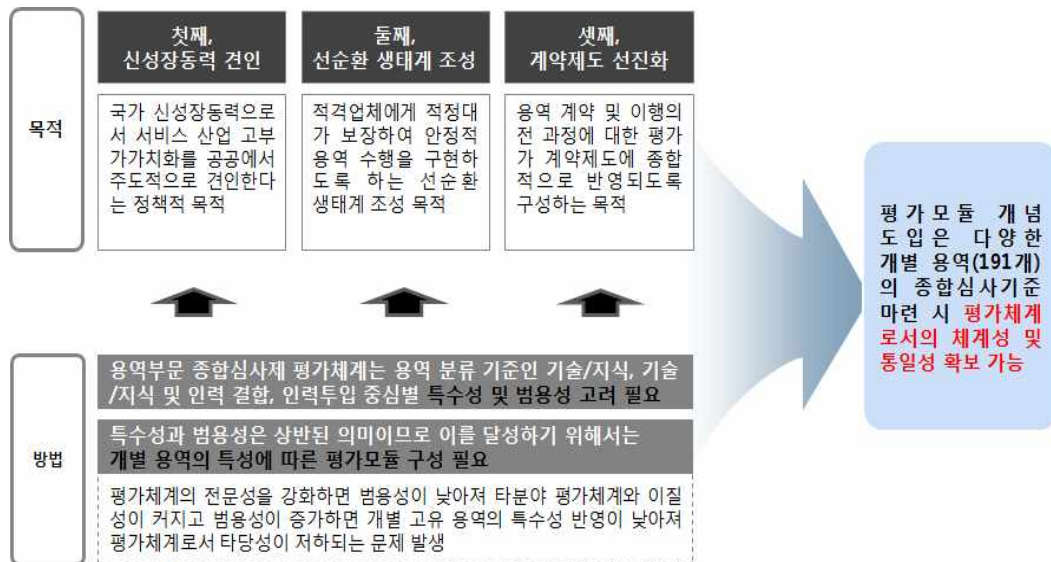
A3	92121599	시설물경비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적합
A8	70109001	어업서비스	4.5	2.5	1.5	8.5	9.5	26.5	보통
A3	72102906	조경관리서비스	9.3	6.3	8	4.3	1	29	보통
A4	72151296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5.7	1.3	5.7	9.3	6	28	보통
A4	72154010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8.7	6.7	7	3.3	2.3	28	보통
A4	73152179	컴퓨터및사무용기기수리서비스	4.7	2	2.7	7.3	9.7	26.3	보통
A4	73169002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7.7	7	5.7	5	3.7	29	보통
A4	73169003	건설장비임대서비스	10	3	10	3	3	29	보통
A4	73169006	기타물품임대서비스	5.3	2.3	6	6.3	8.7	28.7	보통
A3	76101590	소독서비스	9.7	3	8	6.7	1	28.3	보통
A3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9.3	3.7	7.7	4.7	1	26.3	보통
A2	76121599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8	8.7	8	2.3	2	29	보통
A2	76121797	분뇨처리서비스	2.3	1.3	5.3	9.7	6.3	25	보통
A5	78101599	항공화물운송서비스	5	4	6.3	6.3	6.3	28	보통
A5	78111501	헬기서비스	6.5	5.5	2.5	1	9.5	25	보통
A5	78111502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5	4	8.5	4.5	2	27.5	보통
A5	78131699	창고서비스	7	5	3	4	8	27	보통
A8	80111699	인력공급서비스	8.3	7.7	7	5	1	29	보통

A8	80161590	기타사업지원서비스	7.3	7.7	5.3	4	1.3	25.7	보통
A5	90101799	구내식당서비스	9	6	7	1.3	2.3	25.7	보통
A8	70149001	농업서비스	1	1	8	10	3	23	부적합
A8	70159001	임업서비스	5	1	1	4.5	10	21.5	부적합
A5	78121599	포장서비스	1	1	8	10	2	22	부적합
A5	78141602	화물조사서비스	1	1	7	10	3	22	부적합
A5	78181703	주차장서비스	9.7	4	8	2	1	24.7	부적합
A4	80161598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7	7.5	4.5	2	3.5	24.5	부적합
A8	80161599	사무지원서비스	6.3	6	3.7	4	4	24	부적합
A8	85171599	장례및묘지서비스	8.3	4	7.3	3.7	1.3	24.7	부적합
A5	90101603	출장음식서비스	10	4	8	1	1	24	부적합
A5	90111599	숙박서비스	4	5	1	3	9	22	부적합
A8	80141619	고객센터운영서비스	3	7.3	2	1.7	4.3	18.3	매우부적합

3. 용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심사 평가체계

3.1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형 평가체계 개요

평가모듈의 정의는 용역이 분류 기준별로 필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다양한 평가요인을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그룹화한 것을 말한다. 평가모듈은 용역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필수 평가모듈과 선택평가모듈로 구분된다. 각각의 평가모듈을 대표하는 평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평가체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3]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형 평가체계 도입개요

용역부문 종합심사제 평가체계는 용역 분류 기준인 기술/지식, 기술/지식 및 인력 결합, 인력투입 중심별 특수성 및 범용성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특수성과 범용성은 상반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용역의 특성에 따른 평가모듈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모듈의 개념 도입은 192개의 다양한 개별 용역의 종합심사 마련 시 평가체계로서의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3] 참조)

3.2 계약대상으로서의 용역 특성과 평가모듈의 연관성

용역은 공공조달 및 계약 대상어로서 물품 대비 품질, 성능과 관련하여 고유한 특성을 보유한다. 이로 인해 적절한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용역 고유의 특성은 대표적으로 무형성, 불가분성(변동성), 이질성(동시성), 소멸성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무형성은 모든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불가분성(변동성)은 고객과 공급자가 직접 접촉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서비스 공급자의 만족과 수요자의 만족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질성(동시성)은 서비스의 표준화와 성과 표준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소멸성은 재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대부분이 생산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되며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평

가요인으로는 동등 또는 유사한 수행경험 확보 필요성,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이행 안정성 보장, 용역 수행과 관련한 선행경험 및 수행 인력의 역량과 수행완료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의 체계적 관리가 있다. ([표14] 참조)

[표14] 용역 고유의 특성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

특 성	의 미	용역계약 시사점	주요 평가요인
무형성	- 모든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	- 계약시점에서 대상물이 확정 되지 않음	- 동등 또는 유사 수행경험 확보 필요 - 계약 이전 단계에서 용역계약 대상 정의 명확화
불가분성 (변동성)	- 고객과 공급자가 직접 접촉함으로써 제공 - 무형성으로 인해 공급자 외 외적요소(종합적 제공 환경 등)와 상호작용으로 수요자의 서비스 품질 판단이 영향을 받음 * 공급자 및 고객 상황에 따라 동일 서비스가 서로 다른 결과 제공 - 고객과 관련된 일대일 작용은 고객 만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서비스 공급자의 만족과 수요자의 만족이 직접적인 상관관계 형성 * 동일 서비스라도 고객 성격·취향·기분 등에 의해 다르게 인지하는 경우	- 대상물과 대상물의 성과에 대한 표준화 한계 - 대상물 품질, 이행 여부, 만족에 공급자가 이외 수요자를 포함한 환경적 상호 작용 복잡성 - 수요자 용역품질 결정 영향력 ↑	-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이행 안정성 보장 - 용역이행 단계에서 용역 수행을 위한 투입자원(인력, 자재 등)의 변동성 최소화
이질성 (동시성)	- 사전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 보장 여부 - 서비스의 표준화와 성과 표준의 개발이 어려움 - 대부분 사람이 제공하므로 매번 동일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 한계	- 수요자(발주자)가 대상물의 품질을 결정을 위한 정보와 기회 확보 한계 - 공급자의 인적 다양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변동성	- 용역수행 관련 선행경험 및 수행 인력의 역량 - 수행완료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소멸성	- 재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 - 서비스 대부분이 생산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되며 소멸된다는 의미	- 객관적인 비교, 평가 및 지속적 관리의 한계 - 외형적 제공결과를 산출한 인적, 환	- 수행완료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 용역계약 완료 이후 유무형의용역결과물에 대한 체계적

	- 재고가 없어 서비스 제공시점에 공급자의 제공역량 편차가 크게 발생	경 요소의 비항상성	관리
--	--	------------	----

용역부문 종합심사제는 계약이행 5단계(입찰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별 사전자격심사, 사업예산 산출 내역 공개, 심사기준 기술능력 평가, 산정기준 입찰가격평가, 종합점수산정,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상세화, 용역결과의 정성/정량적 평가 등 7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될 종합심사제는 “입·낙찰 단계(평가)”와 “낙찰자결정 단계”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종합점수산정을 통한 낙찰자 결정 방법 구성요소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능력평가는 “용역 종합심사제 모듈 평가체계”의 각 단계별 평가 모듈의 평가요소를 조합·구성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시설공사 종합심사제”의 균형가격 방식“을 채택하며, 낙찰자선정은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자 선정“ 방법 중 가중치 방식을 적용한다. ([그림 4] 참조)

단계	구성요소	필수여부	비고
입찰이전	1.사전자격심사(PQ)	입찰환경에 따라 선택적적용	과도한 역량편차 통제 및 과당경쟁 예방
	2.사업예산 산출내역 공개	원칙적으로 종합심사제 적용대상 용역 입찰시 공개 의무화 (현 시점에서 선택 적용)	적정대가의 보장 및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전 공식화된 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공개
입/낙찰단계 (평가)	3.기술능력평가(심사기준)	용역종합심사제 필수적용 요소	모듈화 된 평가체계 활용하여 용역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
	4.입찰가격평가(산정기준)	용역종합심사제 필수적용 요소	시설공사 종합심사제 “균형가격”에 의한 가격 평가기준 적용
낙찰자결정	5.종합점수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최고점자	용역종합심사제 필수적용 요소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에 각각의 가중치 사전 부여 후 획득점수 합산 최고점자를 낙찰자 선정
	6.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상세화	원칙적으로 종합심사제 적용대상 용역 계약 시 적용 의무화 (현 시점에서 선택 적용)	최초 계약금액과 과업내용 이외 추가되는 과업내용과 조정대가를 상세화하여 계약시 반영
사후관리	7. 용역결과의 정성/정량적 평가	원칙적으로 종합심사제 적용대상 용역 계약 완료시 평가 의무화 (현 시점에서 선택적용)	기술능력평가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법적 안정성과 객관적 신뢰성 확보된 평가체계 마련하여 용역결과 의무적으로 관리

[그림 4] 종합심사제 구성요소

용역부문 종합심사제 평가체계의 평가차원 및 평가요소(항목) 설계를 위해서는 용역 특성(무형성, 불가분성, 이질성, 소멸성) 및 용역 수행 단계(투입→이행→결과)별 특성을 반영한 필수 평가속성 식별이 필요하다. 단, 다양한 용역부문 종합심사제에 평가차원 및 평가요소가 적용되더라도 범용성, 통일성, 체계성 확보를 위해 모듈화 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상기 평가체계는 종합심사제 대상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모듈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용역 유형별 특성과 용역수행 단계별로 주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내용을 모듈화하고 모듈별 다양한 세부 평가요소를 지정한다. ([그림 5] 참조)

수행 단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약/ 투입이전		계약/ 용역투입		용역 이행			용역 결과	
	(선택적)		(필수적)		(필수적)			(필수적)	
단계 별 복수 평가모듈 적용 가능	↑		↑		↑		↑		
평가모듈	사전자격 확보역량	➡	핵심가치 제공역량	➡	안정적 수행역량	➡	품질/성과 산출역량	➡	정성평가
평가모듈별 복수 세부 평가요소 활용 가능	↑		↑		↑		↑		
평가요소 (항목)	수행실적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개발		경력/역량
	기술인력		기술인력		신용도		활용실적		수행계획

[그림 5] 용역 종합심사제의 구성요소

3.3 3대 용역유형별 모듈 평가체계(안)

3대 용역 유형별 평가모듈로 용역 종합심사제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경우, 가장 핵심 사안은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용역 종합심사제 도입의 기본가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 관점의 구현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3대 용역 유형에 일대일 대응성이 높은 상기의 3개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시설공사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가중치 방식(Weighted Criteria)”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채택한다.

현행 시설공사 종합심사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으로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가중치 방식”은 수행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에 각각의 배점 비중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비중을 곱하여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평가는 개찰 이후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투찰한 가격을 활용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우월한 것으로 결정한다. ([표15] 참조)

[표15]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내용	비고	용역유형
기준적합최저가 (Low bid-fully qualified)	- 일정 수행역량 이상 보유 업체 식별 후 기술, 품질 등에 대해 상향평준화 된 수준 보장 시 가장 낮은 가격 제시 업체 선정 - 적격심사와 같이 일정 점수	- 낙찰하한율 미적용 - 가격평가 산식을 활용하여 기준적합 충족점수를 높게 설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이 낮을	- 기술/지식중심 용역(컨설팅) 유형 적합

	이상을 획득한 업체 중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매우 높아야 하며 현행 적격심사와 같이 사실상 기술평가 변별력이 없는 경우 “기준적합”이 무의미한 상황에서는 적용 불가	수록 가격점수 감점 폭을 확대하여 최저가 경쟁 가능성 차단 - 사전자격심사(PQ) 등을 통해 본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수를 최소화 필요	
가중치 방식 (Weighted criteria)	- 수행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에 각각의 배점 비중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비중을 곱하여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 - 현행 시설공사 종합심사제 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점수+가격점수의 합산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개찰 이후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투찰한 가격을 활용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격 우월성 결정	- 낙찰하한율 미적용 - 균형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개별 용역 입찰환경을 분석하여 “균형가격” 산정방식 신뢰성 제고 필요 - 기준적합 최저가 또는 확정가격 최고 제안방식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용역 종합심사제의 가격평가 방식으로 활용 필요	- 기술/지식 및 인력결합 용역(준컨설팅) 유형 적합 * 금번 시범사업은 시설공사 종합심사제 및 균형가격 기반 평가를 적용한 “가중치 방식” 활용
확정금액-최고제안 방식 (Fixed price-best proposal)	-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중 가격을 사전 결정한 후 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를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식별하여 낙찰자로 선정 - 본질적으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복잡성 요구하는 분야에 적합하나 국내의 경우 사실상 가격 경쟁방식이 부적절한 청소, 경비 등의 인력투입중심 용역 평가방식에 전향적 검토 필요	- 낙찰하한율 미적용 - 기존 입찰과정의 복수예비가격을 활용한 개찰 후 예정가격 산정 및 “균형가격” 평가 방식의 활용을 하되 최종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은 최초 사업예산으로 체결	- 기술/지식중심 용역 (컨설팅) 유형 적합 * 이론적으로 컨설팅 유형 적용이 합리적임 - 인력투입중심 용역(비컨설팅) 유형 적합 * 국내의 산업적 특수성 반영

3대 용역 유형별 종합심사 세부기준 마련 시 평가모듈별 추가적인 평가요소(항목)가 필요할 경우, 현행 평가모듈 및 평가요소와 유사성을 보유한 신규 평가요소의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 3대 용역 유형별 평가모듈 채택기준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의 세부평가 항목은 아래의 기술용역, 일반용역, 시설공사 등 현행 적격심사 체계 하에서 평가모듈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요소(항목)를 분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따라서 용역유형별·계약 및 이행 단계별 적합 평가모듈 선정 후 평가모듈별 평가요소를 “평가요소 저장소”에서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하여 평가기준을 마련이 가능하다. 또, 192개 용역 종류별 종합심사제 세부평가기준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평가모듈별 평가요소의 채택 필요성 또는 신규 평가모듈 및 평가요소 도입이 필요할 경우 “평가모듈-평가 요소 저장소” 구성 체계에 맞추어 추가할 수 있다. ([표16] 참조)

[표16] 평가모듈 - 평가요소 저장소(Repository) 활용

평가모듈	사전자격 확보역량	핵심가치 제공역량	안정적 수행역량	경제적 공급역량	품질/성과 산출역량	부가가치 제공역량	정성적 역량검증
평가요소	수행실적 (절대평가)	수행실적 (상대평가)	경영상태	입찰가격가격의 상대 적 우월성 (가중치방 식/ 균형가격) * 금번 "용역 종합심사 제" 기본 적용	신기술, 특허, 실용 신안 등 지적재산권 보유 수준(건수)	하도급계획적정 성	용역팀의 경력 및 역량의 우월성
	기술역량 (절대평가)	기술역량 (상대평가)	신용도	입찰가격의 절대적 우월성 (기준적합최저 가격)	신기술, 특허, 실용 신안 등 지적재산권 개발(R&D) 투자실적	지역 업체 참여도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용역성과향상기여 참여기술자 (용역비 절감, 전국, 국제단위 유관 수상자)	업무 중첩도	입찰가격의 고정형 (확정가격-최고기술제 안)	신기술, 특허, 실용 신안 등 지적재산권 활용실적 (기술료 수입 등)	근로조건 적정성 (근로기준/최저 임금 준수 등)	-
	-	-	투입 기술인력 교체 빈도	-	용역공급자원(인력/ 자재 등)조달의 적정 성	사회경제적 약자 참여도	-
	-	-	-	-	-	청년기술인력참 여도	-
	-	-	-	-	-	공동수급체구성 (사회경제적 약자/ 창업초기 기업 등)	-

일반용역 153개, 기술용역 23개, ICT용역 16개 등 총 192개에 대해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듈의 구분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7] 참조)

종합심사제 평가기준 마련 시 필수 평가모듈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모듈별 평가항목을 30% 이상을 적용할 경우, 3개 이상의 평가요소 선택(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2개로 조정 가능), 20% 이상을 적용할 경우 2개 이상의 평가요소 채택(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개로 조정 가능), 20% 미만을 적용할 경우 1개의 평가요소를 선택한다. 평가모듈별 평가요소 도입 시,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최대 배점 비중은 기본 평가점수의 합계의 만점 대비 2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 평가 기준은 추정금액 규모, 서비스 난이도, 기술적 전문성 등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의 세부 적용구간을 설정하여 평가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표17] 3대 용역유형별 모듈 평가 체계

평가모듈		기술/지식중심 용역 (컨설팅)	기술/지식 및 인력결합 용역 (준컨설팅)	인력투입중심 용역 (비컨설팅)
		엔지니어링 용역 등	MICE 용역 (PCO 중심) 등	청소 용역 등
선택	사전자격 확보역량	평균 20개 이상 업체 입찰참가 환경 시 적용	평균 30개 이상 업체 입찰참가 환경 시 적용	평균 40개 이상 업체 입찰참가 환경 시 적용
		* 용역분야별 기본평가기준에 도입 후 해당 입찰참가 환경 시 선택적 적용		
필수	핵심가치 제공역량 (양적/질적)	모든 평가구간 최소 30% 이상	모든 평가구간 최소 20% 이상	모든 평가구간 최소 15% 이상
	안정적 수행역량	모든 평가구간	모든 평가구간	모든 평가구간

	(경영상태/외형적 신뢰도)	최소 10% 이상	최소 15% 이상	최소 20% 이상
	경제적 공급역량 (가격)	최고구간 30% 이하 ~ 최저구간 50% 이하		
		* 추정가격 또는 기타 세부심사 기준 분류에 따라 평가배점 비중 차등 적용 * 가중치 평가(weighted criteria) 방식의 종합평가 체계하에서 "균형가격"에 의한 가격평가		
	품질/성과 산출역량 (양적/질적)	모든 평가구간 최소 30% 이상	모든 평가구간 최소 25% 이상	모든 평가구간 최소 20% 이상
		* 법적 공신력과 평가 객관성이 검증된 양적 용역사후 평가관리 체계 보유 시 최대 50% 이하 반영 가능		
	부가가치 제공역량 (신인도)	모든 평가구간 최대 5% 이하	모든 평가구간 최대 7% 이하	모든 평가구간 최대 10% 이하
선택	정성적 역량검증	최고 평가구간에서 "필수" 평가항목 배점대비 최대 50% 이내에서 평가결과 반영	최고 평가구간에서 "필수" 평가항목 배점대비 최대 40% 이내에서 평가결과 반영	최고 평가구간에서 "필수" 평가항목 배점대비 최대 30% 이내에서 평가결과 반영

4. 용역 유형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기준 마련

4.1 3대 서비스 유형별 계약현황 및 적용 적합성 평가 결과

상대적 낙찰방법 적용 차이를 살펴보면 최저가 낙찰방법을 준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32.89개, 2015년 34.25개로 적용하고 있으며, 적격심사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28.5개, 2015년 33.67개를 적용하였고 협상계약의 경우 준컨설팅용역이 평균 2014년 89.83개, 2015년 90.11개를 적용하고 있다. ([표18] 참조)

[표18]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낙찰방법

연도	신규용역구분	낙찰방법(개수/평균)								
		수의(견적제출)	2단계 경쟁	계약이행 능력심사	최저가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	협상계약	적격심사 비율	합계
2014	컨설팅용역	5.75	1.13		10.43	2.00	7.44	15.16	29%	41.90
	준컨설팅용역		2.78	1.00	32.89	4.58	3.63	89.83	13%	134.71
	비컨설팅용역		1.33		4.90	7.46	28.50	9.06	50%	51.26
2015	컨설팅용역	6.90	2.33		19.26	3.00	9.05	23.92	25%	64.46

	준컨설팅용역		3.10		34.25	3.75	3.85	90.11	15%	135.06
	비컨설팅용역		2.80		9.67	7.07	33.67	19.60	47%	72.80

[표19]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추정금액

연도	신규용역구분	추정금액(개수/평균)						
		1억 미만	1억 이상 ~ 2.1억 미만	2.1 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2.1억 미만 비율	총합
2014	컨설팅용역	12.56	7.46	5.49	6.76	5.36	64%	37.63
	준컨설팅용역	33.00	26.94	36.67	20.45	35.94	69%	153.00
	비컨설팅용역	15.68	10.24	13.44	9.64	15.25	64%	64.25
2015	컨설팅용역	21.92	10.02	7.05	6.87	7.09	64%	52.94
	준컨설팅용역	31.61	33.94	31.34	23.00	27.15	71%	147.04
	비컨설팅용역	18.05	14.60	15.76	12.00	16.92	60%	77.33

추정금액별 용역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준컨설팅용역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간에서 발주 규모의 순위가 준컨설팅용역, 비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참조)

참가업체 수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2014년 82.6개, 2015년 94.94개로 타 용역에 비해 참가업체 수가 많다. 낙찰율의 경우, 비컨설팅용역이 약 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용역의 경우 약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추정금액과 연동되어 준컨설팅용역이 2014년 약 687억, 2015년 약 558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용법령은 3대 용역유형 모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이주를 이루고 있다.([표20] 참조)

[표20] 연도별 일반/기술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연도	신규용역구분	참가업체 수(평균)	낙찰율(평균)	계약금액(합계)	적용법령(개수/평균)	
					국가	지방
2014	컨설팅용역	8.10	93.04	₩ 5,580,434,291	20.86	7.53
	준컨설팅용역	6.73	93.36	₩ 68,757,572,744	84.09	33.24
	비컨설팅용역	82.60	90.44	₩ 15,263,890,108	35.71	10.54
2015	컨설팅용역	7.03	93.41	₩ 9,600,536,915	33.81	8.89
	준컨설팅용역	6.10	92.99	₩ 55,886,587,055	81.25	43.19
	비컨설팅용역	94.94	90.61	₩ 28,759,458,570	47.40	11.00

전반적으로 연도별 3대 용역유형에 용역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5점에서 30점 사이로, 보통 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비컨설팅용역에 대한 적용 적합도가 타 용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용역 종합심사제의 계약체계 특성상 현행 적격심사 적용비율이 높고 낙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가보장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용역에 우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비컨설팅용역 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 검토하고자 한다.([표21] 참조)

[표21] 연도별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연도	신규용역구분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2014	컨설팅용역	5.61	5.35	5.45	5.50	5.90	27.81
	준컨설팅용역	4.71	6.77	5.54	5.66	5.17	27.86
	비컨설팅용역	7.32	5.75	6.79	5.57	3.91	29.34
2015	컨설팅용역	5.41	6.39	5.29	5.41	6.07	28.57
	준컨설팅용역	5.35	6.65	5.50	5.85	5.45	28.80
	비컨설팅용역	7.29	6.27	6.60	4.80	3.91	28.87

4.2 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엔지니어링 용역)

[표22]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낙찰방법(개수/평균)								
				수의 (견적제출)	2단계 경쟁	계약이행 능력심사	최저가	제한적최저가	적격 심사	협상계약	적격심사 비율	합계
2014	컨설팅 용역	81101508	건축설계용역	25			17	1	219		83%	262
		81101513	건축CM용역						58		100%	58
		81101590	건축감리용역	10					97		91%	107
81101508		건축설계용역	31			60	4	163		63%	258	
81101513		건축CM용역				1		148		99%	149	
81101590		건축감리용역	14				1	52		77%	67	
평균				20.00			26.00	2.00	122.83		0.86	150.17

엔지니어링 용역은 연도와 관련 없이 적격심사 적용비율이 약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연도별/품명별 낙찰방법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나, 2015년 건축CM용역의 경우 60건의 최저가 낙찰방법을 적용했다. 낙찰방법은 적격심사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로 수의계약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22] 참조)

[표23]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추정금액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추정금액(개수/평균)						
				1억 미만	1억 이상 ~ 2.1억 미만	2.1 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2.1억 미만 비율	총합
2014	컨설팅 용역	81101508	건축설계용역	51	49	54	91	17	38%	262
		81101513	건축CM용역	1	1	4	19	33	3%	58
		81101590	건축감리용역	13	5	18	37	34	17%	107
2015		81101508	건축설계용역	55	88	42	56	17	55%	258
		81101513	건축CM용역	1		9	49	90	1%	149
		81101590	건축감리용역	24	7	4	16	16	46%	67
평균				24.17	30.00	21.83	44.67	34.50	0.27	150

엔지니어링 용역의 추정금액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 사이에 268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이 207개, 1억 원 이상~2.1억 원 미만이 150개, 1억 원 미만 이 145개, 2.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131개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다.([표23] 참조). 고시금액 기준 입찰 건의 비중이 30% 미만 수준으로 종합심사제 적용에 따른 상위 업체의 수주독과점 현상 등을 고려하면, 적용구간을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24]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참가업체 수 (평균)	낙찰율 (평균)	계약금액(합계)	적용법령(개수/평균)	
							국가	지방
2014	컨설팅 용역	81101508	건축설계용역	53.85	87.71	₩ 110,120,948,875	164	98
		81101513	건축CM용역	29.30	81.50	₩ 29,648,852,620	38	20
		81101590	건축감리용역	40.02	83.25	₩ 54,604,981,011	61	46
2015		81101508	건축설계용역	32.79	90.80	₩ 83,328,926,772	176	82
		81101513	건축CM용역	23.46	81.27	₩ 110,161,305,568	99	50
		81101590	건축감리용역	60.00	87.87	₩ 18,068,898,542	54	13
평균				39.90	85.40	₩ 67,655,652,231	98.67	51.50

엔지니어링 용역 참가업체 수의 평균은 2014년에 약 41개, 2015년에 약 29개로 분석됐다. 낙찰율의 경우 2014년 약 85%, 2015년 약 86%로 나타났고, 계약금액은 2014년 약 647억 원, 2015년 약 705억 원으로 분석됐다. 적용법령의 경우 연도에 관련 없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이 평균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4] 참조)

[표25] 연도별 기술(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2014	컨설팅 용역	81101508	건축설계용역	9	10	9	2	1	31
		81101513	건축CM용역	10	9	10	2	2	33
		81101590	건축감리용역	9	10	10	2	1	32
2015		81101508	건축설계용역	8	10	7	4	2	31
		81101513	건축CM용역	9	10	10	2	2	33
		81101590	건축감리용역	9	9	8	3	1	30
평균				9.00	9.67	9.00	2.50	1.50	31.67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의 전반적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30점에서 35점 사이로,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 수준(30점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컨설팅 용역의 대표 적용 사례로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용역종합심사제 적용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25] 참조)

4.3 준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MICE 용역)

4.3.1 국내 MICE 산업개요

MICE¹⁾ 산업이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보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 유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용을 얻는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컨벤션사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MICE 산업은 지난 10년 간 양적성장을 거듭하며,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국내 컨벤션센터, 국제회

1) 일반적으로 MICE로 통칭하지만, 호주는 Business Event, 캐나다는 MC&IT(Meeting, Convention and Incentive Travel)로 부른다.

의 기업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으로써 MICE 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지식창출 등 활용가치를 인지하고, 2009년 MICE산업을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산업’²⁾으로 선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MICE산업은 2배 이상 성장하면서, MICE 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고용창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MICE업계의 니즈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미비,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의 부족 등으로 MICE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적 지식산업인 MICE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MICE산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세부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의 특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로 업계에 전문경영 운영전략이 미숙하고,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전의 한계를 보여왔다. 특정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양질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양성 인력을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 정부는 2009년 1월, 녹색기술산업분야, 첨단융합산업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 등 3대 분야의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했으며, MICE 관광분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5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업계의 인력현황 및 고용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투입과 낮은 이직률을 통한 전문노하우의 축적이 서비스 산업 성공의 중요한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역량 대비 근무환경 및 대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전문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어 이직률이 높아져 역량이 제약되고 있다.

국제회의는 전체 참가자 중 외국인 참가자가 20%이상인 행사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그림 6] 참조)

회의	미팅 (Meetings)	· 미팅이란, 영리기관인 기업이 주최하는 기업회의를 의미하며, 임직원, 사업파트너, 고객, 주주 등이 주로 참석함. 예) 존슨앤존슨메디칼 아태지역 컨퍼런스
	인센티브 (Incentives)	· 인센티브란, 기업이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하는 여행으로, 보상 관광이나 행사(보상 행사 및 회의)를 의미함. 예) 중국 맥도날드 점장 인센티브 회의
	컨벤션 외 (Conventions, Conference, Congress)	· 컨벤션이란, 비영리기관인 정부와 협회가 주최하는 정부회의 및 협회회의를 의미하며, 참가자들 간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함. · 콩그레스(congress), 컨퍼런스(conference)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예) 정부회의: APEC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예) 협회회의: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 세계한상대회
전시회	전시회 (Exhibitions)	· 전시회란, 크게 무역전시회(Trade show)와 대중전시회(Public show)로 구분되며,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자(바이어)에게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상거래를 촉진하는 행사를 의미함. 예) 서울국제공작기계전시회,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그림 6]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ICE 분류체계 및 개념정리

3) 출처 : UNWTO(2008), 'Global Meetings initiative/Volume1', Eurostar(2000), 'Methodological manual for statistics on congresses and conferences' 외

4.3.2 공공조달 MICE 용역 현황

MICE 용역은 연도와 관련 없이 협상계약 적용비율이 전체 중, 약 82%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낙찰방법 합계는 2013년 185개, 2014년 227개, 2015년 292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MICE 용역 입찰 건은 총 704건이며, 이 중 약 83.10%에 해당하는 585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또, 일정한 낙찰하한율을 설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 704건 중, 91건으로 전체의 약 12.93%로 나타났다.

회의 및 전시의 기획 및 운영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차질 없이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용역의 품질이 결정되므로, 계획과 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내용의 종합적 우수성을 평가하여 최적합한 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된 계약방법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26] 참조).

[표26]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낙찰방법(개수/평균)								
				수의 (견적제출)	2단계 경쟁	계약이행 능력심사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적격 심사	협상계약	적격심사 비율	합계
2013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1	-	0	2	0%	3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5	1	0	26	0%	32
	-	80141607	행사관리용역	-	1	-	20	3	2	117	1%	143
		90111699	국제회의관련용역	-	-	-	-	-	0	7	0%	7
2014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2	1	0	19	0%	22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2	-	24	6	7	166	3%	205
2015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7	-	0	25	0%	32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32	3	2	223	1%	260
평균				-	1.50	-	13.00	2.80	1.38	73.13	0.01	88.00

MICE 용역의 추정금액은 평균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3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 구간에서 약 25개,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 약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입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약 60% 이상의 용역이 2.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이며, 10억 원 이상 입찰 건은 전체의 약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매력도가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표27] 참조)

[표27]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추정금액

연도	신규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추정금액(개수/평균)						
				1억 미만	1억 이상 ~ 2.1억 미만	2.1 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2.1억 미만 비율	총합
2013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	2	-	-	1	66.67%	3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16	10	4	1	1	81.25%	32
	-	80141607	행사관리용역	43	42	39	13	6	59.44%	143
		90111699	국제회의관련용역	1	2	1	3	-	42.86%	7
2014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8	3	4	2	5	50.00%	22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77	62	44	14	8	67.80%	205
2015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14	8	6	2	2	68.75%	32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1	76	65	25	13	60.38%	260
평균				34.29	25.63	23.29	8.57	5.14	0.62	88.00

[표28]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참가업체 수 (평균)	낙찰율 (평균)	계약금액(합계)	적용법령(개수/평균)	
							국가	지방
2013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3.00	94.38	₩ 474,764,000	3	-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3.53	98.39	₩ 5,174,368,310	24	8
	-	80141607	행사관리용역	3.79	98.51	₩ 47,830,836,640	107	36
		90111699	국제회의관련용역	3.86	101.64	₩ 2,534,505,890	6	1
2014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3.91	96.99	₩ 23,194,427,500	19	3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3.98	97.09	₩ 59,983,563,430	162	43	
2015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2.66	99.31	₩ 11,273,885,260	32	-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3.18	97.81	₩ 81,518,053,820	223	37
평균				3.49	98.02	₩ 28,998,050,606	72.00	21.33

MICE 용역 참가업체 수의 평균은 2013년 약 3개, 2014년 약 4개, 2015년 약 3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입찰 건에서 평균 입찰참가업체수가 약 3.5개 업체로, 이는 4개 미만으로 실제 경쟁 가능한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경쟁을 하면서 기술평가 중심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낙찰율의 경우 2013년 약 98%, 2014년 약 97%, 2015년 약 98%로 분석됐다.

MICE의 용역 규모는 2013년 이후 최근 3년 간 약 2,320억 원 규모로 2015년 기준 928억 원 수준이다. 또, 평균계약금액은 2013년 약 140억 원, 2014년 약 416억 원, 2015년 약 46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용법령의 경우는 연도에 관련 없이 국가계약법을 주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8] 참조)

[표29] 연도별 일반(준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연도	신규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2013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2	3	5	5	6	21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2	8	3	7	5	25
	-	80141607	행사관리용역	6	10	3	4	5	28
		90111699	국제회의관련용역	2	7	1	3	5	18
2014	준컨설팅 용역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1	9	4	3	5	22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6	10	4	5	5	30	
2015		80141902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2	8	2	5	7	24
		80141990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6	10	3	5	6	30
평균				3.38	8.13	3.13	4.63	5.50	24.75

MICE용역의 경우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경우 보통(25점 이상) 이상의 적용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경우 부적합한(20점 이상)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협상계약이 주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현행 대가보장 수준이 높은 결과에 기인하였다.([표29] 참조)

4.4 비컨설팅용역 시범대상 사업 특성(청소 용역)

4.4.1 공공조달 청소 용역 현황

청소 용역은 연도와 관련 없이, 적격심사 적용비율이 약 93%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의 낙찰방법도 매년 일정하게 계약에 사용되고 있다. 낙찰방법은 적격심사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 제한적 최저가, 최저가 순으로 일정하게 낙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된 낙찰방법으로서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용역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계 측면에서 용역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30] 참조)

[표30]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낙찰방법(개수/평균)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낙찰방법(개수/평균)								
				수의 (견적제출)	2단계 경쟁	계약이행능 력심사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적격 심사	협상계 약	적격심사 비율	합계
2013	비컨설팅 용역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	-	-	13	21	316	-	90%	350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	-	-	-	-	1	-	100%	1
2014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	-	-	10	22	297	-	90%	329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	-	-	-		1	-	100%	1
2015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	-	-	9	25	358	-	91%	392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	-	-	-	1	6	-	86%	7
평균				-	-	-	10.67	17.25	163.17	-	0.93	180

청소 용역의 추정금액은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평균 약 7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평균 약 48개, 10억 원 이상 평균 약 47개,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 평균 약 43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평균 약 39개 순으로 빈도가 나타난다.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에 따른 상위 업체 수주독과점 현상을 고려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은 추정가격 기준

10억 원 이상(전체 입찰건의 20% 내외)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표31] 참조)

[표31]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추정금액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추정금액(개수/평균)						
				1억 미만	1억 이상 ~ 2.1억 미만	2.1 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2.1억 미만 비율	총합
2013	비컨설팅 용역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102	71	65	53	59	49.43%	350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	-	1	-	-	0.00%	1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88	66	80	41	54	46.81%	329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	1	-	-	-	100.00%	1	
2015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88	78	90	63	73	42.35%	392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2	1	2	1	1	42.86%	7
평균				70.00	43.40	47.60	39.50	46.75	0.47	180

청소용역 참가업체 수의 평균은 2013년 약 1178개, 2014년 약 443개, 2015년 약 855개로 나타났다. 낙찰율의 경우 연도와 관련 없이 평균 약 88%로 분석됐고, 계약금액의 연도별 평균은 2013년 약 870억, 2014년 약 820억 원, 2015년 약 1,07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적용법령의 경우, 타 용역과 마찬가지로 연도에

관련 없이 국가계약법을 주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2] 참조)

[표32]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참가업체 수, 낙찰율, 계약금액과 적용법령개수

연도	신규 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참가업체 수 (평균)	낙찰율 (평균)	계약금액(합계)	적용법령(개수/평균)	
							국가	지방
2013	비컨설팅 용역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573.19	88.29	₩ 173,679,184,220	286	64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1783.00	87.75	₩ 394,298,000	1	-
2014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729.16	88.22	₩ 163,971,514,740	275	54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157.00	87.81	₩ 161,241,000	-	1
2015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24.91	88.31	₩ 212,183,911,460	330	62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785.14	89.11	₩ 2,234,442,200	4	3
평균				825.40	88.25	₩ 92,104,098,603	179.20	36.80

청소용역 중 건물청소서비스의 경우, 연도별 실적과 상관없이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관점에서 적합으로 평가되며, 기타청소서비스를 모두 고려할 경우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용역계약방법의 적정성가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등은 높으나, 입찰참가 경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용역 종합심사제의 입찰참가자 전수평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적절한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33]

참조)

[표33] 연도별 일반(비컨설팅)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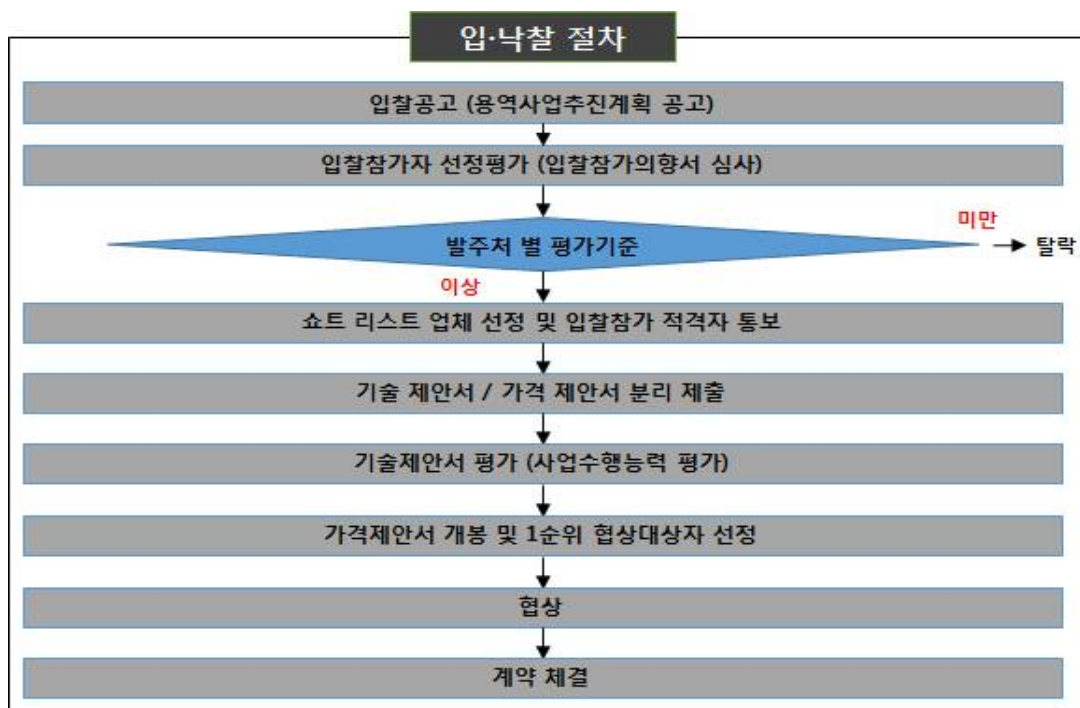
연도	신규용역 구분	품명 분류번호	품명	현행 계약방법의 적합성	공공조달 파급력	대가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참가 경쟁도	합계
2013	비컨설팅 용역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	10	8	3	1	31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9	3	8	1	1	22
2014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	10	8	3	1	31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10	2	8	10	1	31	
2015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	10	8	3	1	31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9	6	7	3	1	26
평균				9.17	6.83	7.83	3.83	1.00	28.67

4.5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한 3대 서비스 유형별 종합 심사 평가기준

4.5.1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기술영역(설계, 감리)

(1)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법·제도 적용 전략의 경우,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훈령) 및 협상방식(국가계약법[기재부 계약 예규] 및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특례 운용기준을 제정한다. 용역비 산정방식은 추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일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그림 7] 시범사업 입·낙찰 절차(안)

입·낙찰 절차에서는 「EOI 제출-롱리스트-쇼트리스트 작성 단계」의 개념을 「입찰자 선정평가」에 적용하여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 탈락 방식으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한다. 쇼트리스트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기술제안 평가 완료 후 가격 제안을 개봉해 최종 1순위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후, 협상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7] 참조)

입찰참가자의 선정평가는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PQ 개념으로 한정하되 기존의 Pass/Fail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항목(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기술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기술제안평가는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외에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론·방법론’, ‘전문가 평가’로 크게 구분하여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그 중, ‘전문가 평가’에 가장 큰 비중을 부여한다. 입찰가격 평가의 경우, 저가 입찰에 의해 기술력 평가결과가 역전되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기술자 평가 방식은 기존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를 이력서 방식으로 전면 대체한다.

과업지시서의 해외 사례의 경우, 기술부분과 함께 전문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업지시서-기술제안-가격제안이 모두 맞물려 있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이와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따른다. 기존의 국내 과업지시서에서 성과품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과감히 혁신하도록 한다.

(2)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개요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의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의향서를 받아 심사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목적은 공공발주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국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대한 특례로서 제정하기 위함이다. 제정하는 이유는 건설기술용역 등 용역분야의 입·낙찰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추진할 경우 필요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2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MICE 용역

(1) 공공조달 MICE 용역 관련 대가 보장 적정성 현안

대부분의 회의 및 행사기획 및 운영 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 후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시점에서 낙찰율이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MICE 용역의 경우, 별도의 사후정산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MICE 용역을 이행한 업체의 정산내역서를 검증하여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후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용역 이행과정 및 최종 결과가 바로 확인되는 MICE용역의 특성상 발주처 입장에서 대가에 합당한 서비스 품질 보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져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라 하더라도 현행 MICE용역의 입찰 및 낙찰방식의 특성상 현행과 같은 사후정산을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부기하여 용역 수행업체에게 정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발주자의 계약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공조달 및 계약에서 사후정산 쟁점

MICE 용역과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총액확정계약 사후정산요청에 대한 적절성 판단에 대한 요구와 질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 공공기관과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금액을 받는 절차에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총액확정계약 시에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의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통해 용역대가를 감액

함으로써 수익감소 등 경영안정성이 저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또, 발주기관이 용역특수조건에 정산조건을 정한 경우 그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표34]~[표37] 참조)

[표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0조, 73조

제70조(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표3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1조, 89조

제81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표3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표37] 계약 예규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3) 현행 MICE 용역의 사후정산 관련 문제점

① 형식적 측면의 문제점

현재 MICE용역의 계약방법은

1. 대가의 결정방법 : 확정계약
2. 대가의 지급방법 : 총액계약
3. 낙찰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서 입찰시점에서 당해용역의 대가와 지급방법이 확정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사후정산 항목 이외에 원칙적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선금지급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증빙포함)와 용역완료 후 정산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원가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감액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없다. 그러나 현행 MICE용역은 입찰 및 계약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사전 발주자에 의해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한 사업을 원가검토를 통해 사후에 정산하여 금액을 가감하겠다는 목적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는 대가산정, 지급방법 등에 있어 잘못된 계약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발주가 상세한 원가산정기준(계약예규상의 일반기준이 아님)을 제시하여 수주자가 당해 용역 이행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비 정산 되는 비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들은 이러한 수준에서 상세 예산 편성 지침 등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사실상 사후원

가검토조건부 계약과 동일한 사후정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확정계약 및 총액계약 방식의 채택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정확히 산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책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수주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용역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용역이 이행되었다면, 비용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발주자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다. 확정계약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후원가검토를 한다는 것은 발주자 스스로 당해 용역에 책정된 원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용역 이행 이후 대가의 확정을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 및 대가에 합당한 용역결과 판단을 희망한다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의 방법으로(관련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②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MICE용역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대규모 용역 또는 이해과정의 복잡성이 높은 용역에서 발주자가 수주자의 용역 이행을 위한 비용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된 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해 적정히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원가검토를 통해 감액하는 형태로 대개의 경우 증액되는 경우는 없으며,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서, 수주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적정 지급 수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사후정산을 통해 대가에 합당한 용역이행 여

부를 판단하겠다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총액계약방식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원가검토가 적절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MICE용역의 비용지출 구조와 특성에 맞는 상세한 예산편성지침과 정신기준 등이 사전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가검토(계산)기관 및 제3자 검증(회계사 등)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용역별, 지역별, 검토주체별로 동일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산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용역대가 산정의 신뢰성 저하와 용역 수주자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비목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 역시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지시서/제약요청서 상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는 곤란하다. 계약의 안정성 관점에서 사후정산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일반 또는 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5.3 모듈형 평가체계 적용 : 청소용역 종합심사 평가기준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낙찰율이 88% 내외 수준으로 재분류된 3대 용역 유형 중 “인력투입 중심 용역” 중, 대

가 상향 필요성이 가장 높고, 입찰규모 분석결과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 용역은 전체 입찰 건의 20% 내외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준으로 종합심사제 적용 기준 추정가격 규모를 판단해보면 5억 원 이상 입찰 건이 전체 입찰건수의 약 30% 내외, 10억 원 이상 입찰 건이 15% 내외로 10억 원 이상 구간에 적용하는 것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된다. 종합평가 시 타 용역과 달리 현행 공공부문 청소용역은 실제 용역을 이행하는 핵심인력인 청소근로자가 입찰참가업체 소속이 아닌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 승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였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을 보유한 입찰 건에서 청소용역 업체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식별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가격 기준 10억 원 이상의 경우도 30억 원 이상(1등급), 20억 원 이상(2등급), 10억 원 이상(3등급)의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인 평가 시행한다.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항목으로 수행업체의 전문성, 전문 관리 인력의 보유 정도, 당해용역 참여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다. 평가 항목에 따라 최근 5년 간 당해 용역과 동등한 용역 이상의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용 인력,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등한 용역 이상에서 현장관리 인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투입인원 수 및 평균 근무연수의 내용을 평가한다. ([표38]~[표40] 참조)

[표38]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I. 용역이행 능력 (60점)	1.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	20
	2. 관리인력의 보유 정도	입찰참가업체 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 유하고 있는 관리인력 수	5
	3. 참여 관리인력의 전문성근로자의 전 문성	입찰참가업체의 당해 용역 청소용역근 로자에 대한 관리인력 투입인원 수 및 평균 근무연수	15
	4. 임금보장도	당해 용역 규모 이상의 이전 용역에서 고용승계한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임 금보장도청소용역업자 경력평가	10
	5. 용역결과 평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등한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	10
II. 경영상태 (10점)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수준	10
III. 경제성 (30점)	1. 당해청소 입찰가 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30
계			100
IV. 신인도	1. 신인도	가. 수행 전문성	+2.0
		나.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	+3.0
		다. 공동수급체 구성	+2.0
		라. 노동관계법 위반	△12 ~ △4
		마. 노사문화 우수기업	+1.0
V. 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나. 용역근로자 보호 위험	△20

[표39]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I. 용역이행 능력 (60점)	1.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	15
	2. 관리인력의 보유 정도	입찰참가업체 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 유하고 있는 관리인력 수	5
	3. 참여 관리인력의 전문성근로자의 전 문성	입찰참가업체의 당해 용역 청소용역근 로자에 대한 관리인력 투입인원 수 및 평균 근무연수	10
	4. 임금보장도	당해 용역 규모 이상의 이전 용역에서 고용승계한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임 금보장도청소용역업자 경력평가	10
	5. 용역결과 평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등한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	10
II. 경영상태 (10점)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수준	10
III. 경제성 (30점)	1. 당해청소 입찰가 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40
계			100
IV. 신인도	1. 신인도	가. 수행 전문성	+2.0
		나.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	+3.0
		다. 공동수급체 구성	+2.0
		라. 노동관계법 위반	△12 ~ △4
		마. 노사문화 우수기업	+1.0
V. 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나. 용역근로자 보호 위험	△20

[표40]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입찰등급 3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I. 용역이행 능력 (60점)	1.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	10
	2. 관리인력의 보유 정도	입찰참가업체 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 유하고 있는 관리인력 수	5
	3. 참여 관리인력의 전문성근로자의 전 문성	입찰참가업체의 당해 용역 청소용역근 로자에 대한 관리인력 투입인원 수 및 평균 근무연수	10
	4. 임금보장도	당해 용역 규모 이상의 이전 용역에서 고용승계한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임 금보장도청소용역업자 경력평가	10
	5. 용역결과 평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등한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	5
II. 경영상태 (10점)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수준	10
III. 경제성 (30점)	1. 당해청소 입찰가 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40
계			100
IV. 신인도	1. 신인도	가. 수행 전문성	+2.0
		나.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	+3.0
		다. 공동수급체 구성	+2.0
		라. 노동관계법 위반	△12 ~ △4
		마. 노사문화 우수기업	+1.0
V. 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나. 용역근로자 보호 위험	△20

(1) 청소용역 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① 수행실적 심사

수행 업체의 실적에서는 최근 5년간 업체의 청소 용역 수행실적을 심사한다. 또, 용역수행실적 규모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한 업체(법인)의 전문성 평가한다. 1등급일 경우 100%이상일 때 20점, 60%미만일 때 18.5점을 부여하고, 3등급일 경우 60%이상일 때 10점, 60%미만일 때 9.5점을 부여한다. ([표41] 참조)

[표41] 청소용역 이행능력(수행실적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업 체의 청소용역 수행실적	20 (15) (10)	100% 이상	20.0	15.0	10.0
			80% 이상	19.5	14.5	
			60% 이상	19.0	14.0	
			60% 미만	18.5	13.5	9.5
1. 청소용역 실적은 공공 및 민간의 청소용역(건물청소용역) 실적 모두를 포함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이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청소용역 실적 합산금액 / 당해 청소용역 추정가격)×100						
3. 평가기준의 규모, 금액 등 용역 실적 인정기준을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수행실적에 수행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6. 실적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완료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② 관리인력 보유 정도

현행 공공부문 청소용역 입찰에서 절대다수인 청소근로자는 입찰 참가/수행업체 소속이 아닌 선행 용역을 통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이므로 입찰참가업체의 청소용역 업체는 고용승계 인력이 아닌 입찰참가업체 상시고용인력 평가가 필요하다. 관리인력 보유 정도를 심사하는 요소는 입찰참가 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역 현장 관리 인력 수가 있다. 5년 이상, 3명 이상, 1등급인 경우, 5점 만점에 3점을 배점하고 2명 미만인 경우, 5점 만점에 2.4점을 배점한다. 5년 미만, 3명 이상, 1등급인 경우, 5점 만점에 2점을 배점하고 2명 미만인 경우, 5점 만점에 1.4점을 배점한다. ([표42] 참조)

[표42] 청소용역 이행능력(관리인력 보유정도)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관 리 인 력 보 유 정 도	입찰참가 업체가 상근인력 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 용역 현장 관리인력 수	5	5년 이상	3명 이상	3.0	3.0	3.0
				2명 이상	2.7	2.7	
				2명 미만	2.4	2.4	2.7
			5년 미만	3명 이상	2.0	2.0	2.0
				2명 이상	1.7	1.7	
				2명 미만	1.4	1.4	1.7

1. 입찰참가 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역 현장 관리인은 5년 이상과 5년 미만 경력 보유 인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다.

2. 상근인력의 조건은 입찰공고일 전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입찰참가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 보험 가입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가능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청소용역 현장관리인력의 판단 여부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발행한 문서상 명시된 현장관리인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4. 현장관리 인력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관리인으로서 참여한 용역 실적은 현재 소속된 입찰참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5. 경력 연수에 따른 차등 평가 시 5년 이상의 인력으로만 구성된 경우 5년 이상 평가대상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인력으로 간주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입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7. 보유근로자 및 참여근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중 최대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③ 참여 근로자의 전문성

입찰참가업체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 인력의 용역현장 및 고용승계 인력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정도를 평가한다. 참여 근로자의 전문성평가에는 최근 5년 간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으로 용역에서 현장관리 인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 경험을 심사한다. 3명 이상, 평균 7년 이상으로 1등인 경우 15점, 3등급인 경우 10점을 배점한다. 근무자의 근로 년 수에 따라 0.3점, 0.3점, 0.2점의 배점 차이를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2명 미만, 평균 7년 이상, 1등급인 경우 13점, 3등급인 경우 10점을 배점하며, 근로 년 수에 따른 배점 차는 위와 동일하다.([표43] 참조)

[표43] 청소용역 이행능력(참여 근로자의 전문성)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참여 근로자의 전문성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에서 현장관리 인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경험	3명 이상	평균 7년 이상	15.0	10.0	10.0
			평균 5년 이상	14.7	9.7	9.7
			평균 3년 이상	14.3	9.4	9.4
			평균 3년 미만	14.1	9.1	9.1
		2명 이상	평균 7년 이상	14.0	9.0	9.0
			평균 5년 이상	13.7	9.7	9.7
			평균 3년 이상	13.4	9.4	9.4
			평균 3년 미만	13.1	9.1	9.1

		2명 미만	평균 7년 이상	13.0	8.0	8.0
			평균 5년 이상	12.7	8.7	8.7
			평균 3년 이상	12.4	8.4	8.4
			평균 3년 미만	12.1	8.1	8.1

1. 보유근로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는 보유근로자 능력과 보유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보유근로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 평가기준 점수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 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3명 이상 10.0, 2명 이상 8.0, 1명 이상 6.0)
3. 보유근로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를 위해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가. 보유근로자 및 보유기능자 증명(확인)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보유근로자 및 보유기능자 1인당 1부)
4. 해당 자격 취득 년 수 산정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하며 보유근로자 혹은 참여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용역 근로자 임금보장도

한편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실질적 처우 보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업체의 임금보장도를 반영하였고, 발주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차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청소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수준 유도 및 향상을 위해 입찰참가 업체가 이전 수행한 용역에서 고용 승계한 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을 평가한다. 발주자 산출 기준 금액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인건비 기준이며, 발주자 산출금액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인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 평가한다. 또, 종합심

사제 대상 용역 건수 및 평균 입찰 참가업체 수를 고려하여 실적증명 발주기관에서 “업체의 임금보장도”와 관련한 증빙항목을 실적증명서에 추가 기재하여 발급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 승계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수준이 100%, 1등급, 2등급, 3등급 모두 5점을 배점하고, 94% 미만인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4.6점, 3등급인 경우, 4.8점을 배점한다.([표44] 참조)

[표44] 청소용역 이행능력(근로자 임금보장도)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근로자 임금 보장도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에서 고용 승계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수준	10.0	100% 이상	5.0	5.0	5.0
			97% 이상	4.8	4.8	
			94% 이상	4.6	4.6	4.8
			94% 미만	4.4	4.4	
1. 근로자 임금보장도는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에서 고용승계한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급 임금은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함.						
3. 임금지급율 = 동등이상 용역의 청소용역 근로자 1인 평균 임금 지급액 / 동등 이상 용역별 계약연도의 시중노임단가						
- 용역규모에 따른 보정계수 = 동등이상 용역이 2건 이상인 경우 : 1.2 동등 이상 용역이 2건 미만인 경우 : 1.0 동등 미만 용역의 경우 : 0.8						

⑤ 청소용역 결과 평가

용역결과 평가에서는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등 이상의 용역에서 수탁관이 평가한 용역결과 보고서의 종합 평점을 심사한다.

청소용역 발주기관의 정량 및 정성 평가는 50점, 외부 고객의 정량 및 정성평가는 50점으로 한다. 발주기관에서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발급을 의무화 한다. 용역결과 보고서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모두 10점을 배점한다.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 92점 이상은 10점, 92점 미만은 9.7점을 배점한다. ([표 45] 참조)

[표45] 청소용역 이행능력(용역결과 평가)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용역 결과 평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등이 상 용역에서 수요기관이 평가 한 용역결과 보고서의 종합평 점	10.0	95점 이상	10.0	10.0	10.0
			92점 이상	9.7	9.7	
			89점 이상	9.4	9.4	9.7
			89점 미만	9.1	9.1	
1. 청소용역 결과 평가는 최근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수행한 청소용역에 대해 계약완료 시 수요기관 이 통보한 용역결과 보고서의 종합평점에 따라 평가한다. 2. 청소용역결과 보고서의 평점이 없는 경우는 평가기준 "C"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경영상태 평가에서는 신용등급평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고, 필요 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등으로 보완적 평가를 검토한다. 기업신용평가 등급과 입찰등급에 다른 배점은 아래 [표46]를 참조한다.

[표46] 청소용역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	-----------	--------

대한 신용 평가등급	대한 신용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7.0	7.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입찰참가 업체의 투찰가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경우, 획득한 평점에 보정계수 1.0을 곱하고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인건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 획득한 평점에 보정계수 0.8을 곱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의 산정근거인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인건비는 용역완료 시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임금대장 상 지급된 인건비 단가를 계약연도의 시중노임단가로 나누어 그 수준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시 차등 평점한다. ([표47] 참조)

[표47] 청소용역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3% 미만 시)	(50) (40) (3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30.00	4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32.50	42.25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35.00	45.50
			D. 균형가격의 100.5%이상 101.5% 미만	28.25	37.50	47.75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40.00	5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38.00	4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36.00	4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34.00	4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32.00	42.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 격이 예정가격 대비 93% 이상 시)	(50) (40) (3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8.00	3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9.00	3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30.00	4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40.00	5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9.50	39.50
	1)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4) 신인도 세부심사방법

신인도 가점 항목은 10억 원 이상 대규모 청소용역 입찰에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 용역에서의 수행경험 평가를 반영하였고, 청소용역 산업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였다.

① 수행전문성

신인도 세부심사에서 수행 전문성 평가는 당해 용역 제공 대상 건물에서 이전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용역평가 결과가 90점 이상, 당시 현장 관리 인력으로 참여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

점을 배점한다. 당해 용역의 용역 대상 건물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1점을 배점한다. 용역 제공 장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고용 승계 인력 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기 수행 업체의 전문성을 인정한다.([표48] 참조)

[표48]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심사분야	평가기준	점수
수행 전문성	A. 당해 용역 제공 대상 건물에서 이전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용역 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이면서 당시 현장 관리 인력으로 참여한 근로자가 2인 이상 참여한 경우	2
	B. 당해 용역의 용역 대상 면적 이상의 건물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1
1. 수행전문성 평가기준 중 "A"의 경우에는 용역평가 결과가 90점과 현장관리 인력으로 직접 참여한 입찰참가업체의 근로자 2인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이 된다. 2.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관리 참여 인력 2인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이 경우 평점은 1점을 부여한다. 3. 수행 전문성 평가는 평가기준 A, B 중 하나만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4. 당해용역의 용역대상 면적 및 이전 용역수행 실적에서 용역대상면적은 해당 청소용역 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서에 명기된 별도의 대상면적이 있을 경우 해당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청소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②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률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 중 수행전문성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률을 심사한다. 청소용역 산업 특성 및 종사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70% 이상,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 고용비율이 50%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각각 1점씩 배점한다.([표49] 참조)

[표49]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심사분야	평가기준	점수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
1. 여성근로자,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고용비율은 입찰참가업체의 상근관리인력 및 고용승계 인력을 모두 포함한 전체 보유 인력 대비 각각의 평가기준별 대상인력별 보유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여성근로자 및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3.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정보 제공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한하여 정부기관 발급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 여부 및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4.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 시점에서 현재 고용승계 되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여성근로자, 55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자 인원 수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다. 5. 종합심사 시점에 제출한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이 계약이후 변동될 경우에는 동등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시점에서 최종적인 고용율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용역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③ 공동 수급체 구성

신인도 평가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에서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 용역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2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용역에서 1개 이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공동수급체 구성업체가 1개 이상인 경우 1점을 배점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청소용역 입찰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용역수행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표50] 참조)

[표50]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수행전문성)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A.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에서 2개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 3개 이상	2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 2개 이상	
	B.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에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 1개 이상	1

	서 1개 이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 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이 1개 업체인 경우 20% 이상, 2개 이상인 경우 15%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④ 노동 관계법 위반 처분

신인도 세부평가의 노동관계법 위반 처분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평가기준의 노동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평가한다. 신인도 항목 중 감점 항목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파견법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항목으로 최대 12점의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정적 근로조건 확보 노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토록 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제 115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각각 최대 3건까지 1건당 1점을 배점한다.([표51] 참조)

[표51]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최근 3년간 평가기준의 노동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최대 3건까지 1건당 △1점 부여)	△3~ △1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5조에 따라 벌 칙을 받은 경우(최대 3건까지 1건당 △1 점 부여)	△3~ △1
		파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및 사법처리(무허가) 받은 경우(최대 3건까지 1건당 △1점 부여)	△3~ △1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	△3~

		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최대 3건까지 1건당 △1점 부여)	△1
1. 평가기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업체가 대표자 명의의 범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노동관계법 위반처분과 관련한 감점은 각각의 평가기준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이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분야에서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기업 선정 여부를 평가한다. 여기서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을 부여한다. ([표52] 참조)

[표52]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심사분야	심사요소	점수
노사문화 우수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

(5)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① 이행위험

안정적으로 정상적 용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사전 식별할 수 있도록 재무적 측면에서 계약이행 불확실성과 용역근로자 보호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낙찰자 선정 가능성 차단한다.([표53] 참조)

[표53]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청소업자	△20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② 용역근로자 보호 위험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근로조건 보장 가능성이 낮아 발생 가능한 피해 및 손실 예방하기 위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유무를 확인한다. 만약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표54] 참조)

[표54] 청소용역 신인도 세부심사(노동관계법 위반 처분)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위험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별지 3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5. 용역 종합심사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5.1 청소용역 개선 개요

국내에서는 법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조달대상물로서 용역을 업무 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 제 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55] 참조)

[표55] 용역의 분류

구분	종류
일반용역	■ 정보통신관련 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조경관리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업예산 산출 및 원가계산 및 대가보장 측

면에서는 컨설팅용역(지식 및 정보 중심의 무형자산 산출)과 비컨설팅용역(다수 인력 투입 기반 또는 노동집약적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비컨설팅용역은 청소, 경비 용역 등과 같이 용역 제공의 핵심수단과 결과물이 인적자원의 투입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군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공공시장 의존율이 높아 낙찰율 및 안정적 수주기회 확보에 민감하다. 중기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운송 등의 용역 낙찰하한율은 85%에서 88%로 상향되었고, 소액수의계약(전자견적입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90% 수준의 낙찰율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기초금액(사업예산)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단계에서 2~8%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적정대가 대비 실질가격 보장율은 80% 초중반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낙찰방법 및 평가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적정 낙찰율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보체계 개선 역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중요하며 개선방안 마련 시 함께 고려되어 한다.

다만, 낙찰방법 개선 방향이 최고가치 또는 최적가치로서 “Best value” 관점인 경우 단순히 최저가기반의 기존 낙찰제도와 완전히 상이하지 않다는 점과 동시에 최고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낙찰방법 관점에서는 인력투입 중심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적정대가 보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단순히 현재 시

설공사 시범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은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다. 종합평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자간 경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중기업 수준의 청소용역업체들의 수주 독과점화 심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입찰제도적 관점에서 실제 “Best value”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고가치 또는 최적가치로 해석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입찰의 목적에 따른 적합한 낙찰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고가치 낙찰관점에서 언급되는 방법이 7개 이상이며,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최고 품질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예산 절감이 목적인 입찰에서 최고가치는 최저가낙찰방법이며, 기술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입찰에서 최고가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다. 일정자격을 충족함을 전제로 제공 물품과 서비스에 편차가 없을 경우, 가격으로 경쟁토록 하는 입찰에서는 적격심사가 최고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결과에만 천착해서 최저가 방식 또는 최저가 기반의 적격심사 이외의 다른 대안적 평가방식을 총칭한 최고가치 낙찰제 적용은 구체성이 낮으며, 청소용역의 산업특성, 경쟁구도, 핵심성과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선의 핵심은 입찰의 목적을 결정함에 있어, 조달대상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물품과 용

역을 분류하고, 각각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입찰목적(추구 가치)을 매칭하여 적절한 낙찰방법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큰 틀에서 기존의 일반적 낙찰방법을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 단위에서 입찰목적에 맞도록 대안적 낙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청소용역 산업구조적 특징

정부계약에서 협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계약일반으로 정부(수요기관)는 선한 사용자(good employer or model employer)로서 노동 관련 법률을 앞서서 준수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와 임금보장 수준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급자인 조달업체 측면에서 정부계약을 통해 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속성은 공급 목적물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과 계약의 지속가능성이다.

5.2.1 지속가능성 측면(고용 안정성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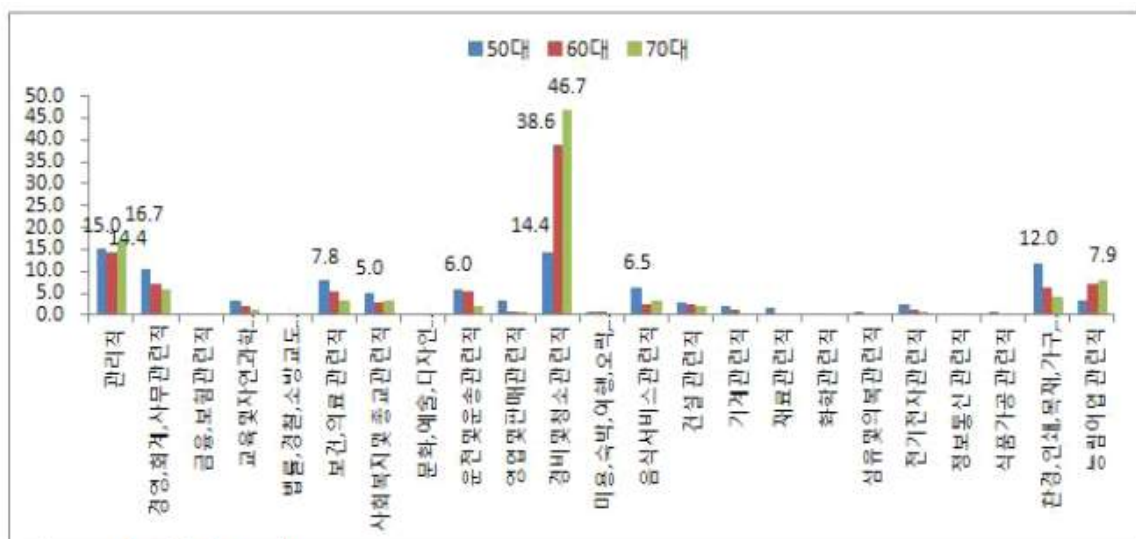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2013년 지역고용조사에서 나타난 청소용역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평균연령 60.3세,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약 69.7%, 평균 근속연수 3.3년,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71.9%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업체별 규모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

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기업의 비율이 약 59.6%, 대기업의 비율이 40.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소기업 소상공인은 약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참조)



자료: 고용보험자료

[그림 8] 청소/경비용역 업체 종사 근로자 기준 기업 규모(2013년 말 기준)



자료: 고용보험 자료, 2013

[그림 9] 청소/경비용역 관련 직종의 근로자 연봉표(2013년말 기준)

또한 청소 및 경비용역 부문은 여타 부문의 직종에 비해 50, 60, 70대의 고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특히 고령층의 근로안정 및 적정 노후 생활 보장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고용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그림 9]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용역의 계약 지속가능성 문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등에 따라 용역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서 근로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약 63.1%) 용역 분야이다. 정부계약 관점에서 유사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비용역 역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48.5%를 차지하는 등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를 포함하여 인력 투입 중심 용역은 용역계약 지속 및 종료 여부가 안정적 근로기회 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표56] 참조)

[표56] 경비원과 청소관련직의 고용보험 상실사유(2013년말 기준)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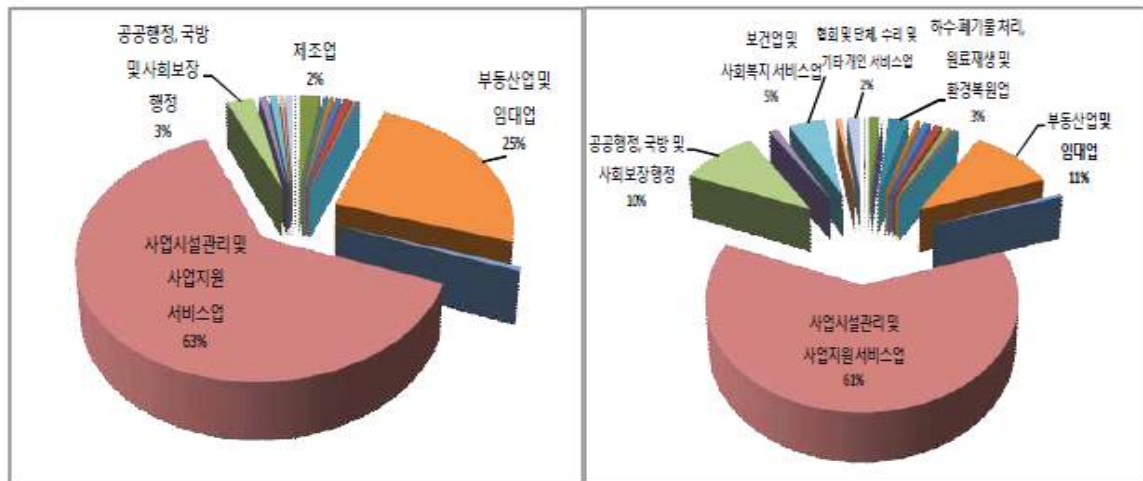
상실사유	경비원	청소원, 가사도우미, 기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35.9	26.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2.1	7.4
계약만료, 공사종료	48.5	63.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0.1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0.9	0.6
정년	1.2	0.9
폐업, 도산	1.3	1.5
기타	0.1	0.2
계	100.0	100.0

* 자료 : 고용보험 자료

청소용역의 경우 인건비 중심의 대가산정을 하고 있으나, 청소대상에 따른 다양한 청소도구, 약제 등이 활용되면서 기술성 및 전문성 역시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청소용역은 동시에 중기간경쟁제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특히 2014년 4월 이후부터는 1억 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공급제도 시행으로 실제 대다수의 공공 청소용역(건물위생관리용역)의 경우 사실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전국 단위의 청소인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페이퍼 및 인력관리 회사 형태로 창업하여 공공입찰 법인으로 활용 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입찰을 통한 계약대가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용역 근로자 직종의 주요 산업별 분포를 보면, 모두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부 근로자 파견 및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에 종사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용역의 직업적 안정성과 임금 등의 처우 보장 수준은 인력공급업과 공공부문의 경영여건 및 처우보장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계약 중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들의 경우는 공공입찰에서 대가보장 수준에 따라 자사의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임금보장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그림 10] 참조)



주: 2%미만 산업 생략
자료: 고용보험자료

[그림 10]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2013년말 기준)

5.2.2 적정 대가 보장 측면(임금보장 측면)

지역고용조사에 의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3개월 간 세전 월평균임금)은 86.9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이를 고용보험 취득자 자료로 살펴보면, 고용보험 취득 당시의 월 평균 보수액은 청소원 관련직 91.6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역고용조사에 의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상용근로자의 임금 126.8만 원 수준에 비교할 때 임시직은 58.9% 수준(주당 근로시간 35.5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근로시간 대비 가사

및 육아도우미,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57] 참조)



자료: 지역고용조사, 2013 상반기

[그림 11] 단순노무직종의 직업별 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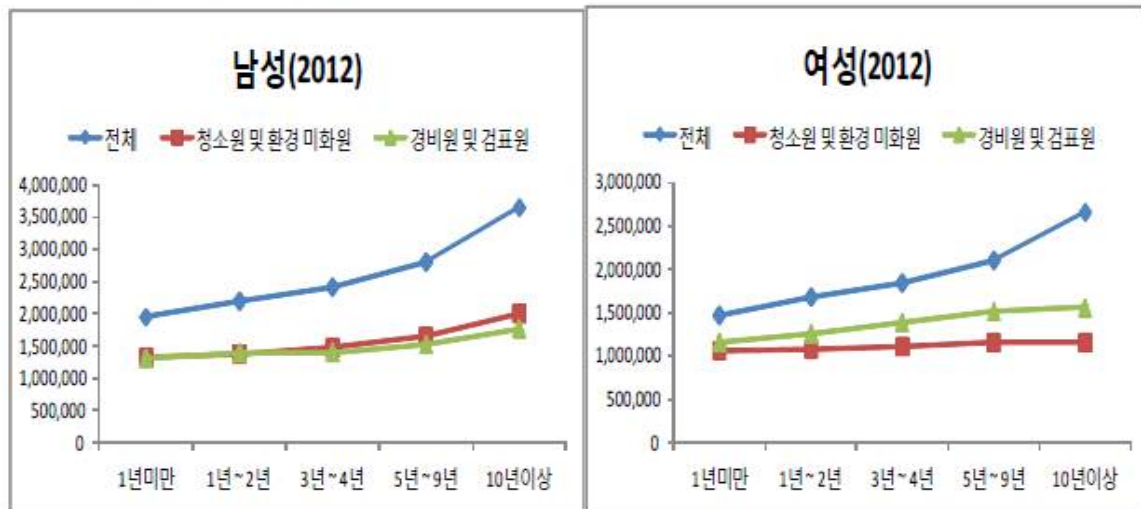
[표57] 청소용역 근로자 주당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수준

(단위: 시간, 만원)

구분	지역고용조사 (2013. 상반기)		고용보험 취득자 (2013년 연평균)
	주당 주업시간	월평균임금	취득당시 평균보수액
직업분류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942)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113)
상용근로자	43.3	126.8	91.6
임시근로자	33.1	74.6	
일용근로자	28.3	49.7	
전체	35.5	86.9	

또한 청소용역 근로자는 경력이나 연령상승에 대한 임금 상승이 미미하며, 남성의 경우 경력의 따라 다소간의 임금 상승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용역 직종의 임금수준이 개인의 인적속성이나 종사상 지위, 산업별

차이, 나아가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그림 12] 참조)



주: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2

[그림 12] 청소/경비용역의 성별/경력별 임금수준(2012년말 기준)

5.2.3 청소용역의 종합적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용역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약 60%), 근로자의 성별(여성 근로자가 약 72%), 근로자의 나이(종사 근로자 평균연령 약 60세), 근속연수(평균 약 2.9년) 등 전반적으로 영세한 사업규모 및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 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당 업무시간 기준 가장 많은 근로를 하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수준에서 대가가 결정되는 한계로 평균 임금은 약 86.9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고 경력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이 거의 없으며, 특히 다수 종사자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가 연차별 임금상승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고용 부문으로 볼 수 있는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고용의 지속성과 대가보장의 적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기존 청소용역 국가계약/입·낙찰제도 운영현황

현재 청소용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계약 일반용역은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주로 채택하고 있는 평가항목은 주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체 청소용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원 이하 입찰에서는 가격 배점이 최소 70점, 2억 원 미만 용역에서는 가격 배점이 90점으로 사실상 가격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근 3~5년간 용역실적으로 평가되고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고용안정성과 및 대가보장성 측면)을 고려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거나 신인도 가점을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한정되고 있으며 적격심사 하에서 신인도 가점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격심사의 특성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실제 최대 투찰 가능 수준으로 설정되어 사실상 평균 87.745% 전후로 낙찰율이 형성되고 있다. ([표58] 참조)

[표58] 정부 및 지자체별 청소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운영 현황

수행능력 심사분야	평가항목	배점											
		강원도(단순노무) (95점)				경기도(단순노무) (95점)				경상남도(단순노무) (90~95점)			
		2	2 - 5	5 - 10	10 - 30	2	2 - 5	5 - 10	10 - 30	2	2 - 5	5 - 10	10 - 30
수행능력	기술분야	0	0	0	0	0	0	0	0	0	0	0	0
	이행실적	0	15	30	40	0	12	27	37	0	12	27	37
	경영상태	10	10	15	25	10	15	20	30	10	15	20	30
	지역업체 참여도	0	5	5	5	0	3	3	0	0	3	3	3
	입찰가격	90	70	50	30	90	70	50	30	90	70	50	30
	공동수급 협정	0	0	0	0	0	0	0	0	0	0	0	0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0	0	0	0	0	0	0	0	0	0	0	0
	신인도	0	0	0	0	(+5.5) ~ (-3.0)				0	0	0	0
	근로기준	0	0	0	0	0	0	0	0	0	0	0	0
	최저임금	0	0	0	0	0	0	0	0	0	0	0	0
	특별신인도	+2	0	0	0	+2	0	0	0	+2	0	0	0
낙찰율		87.745				87.745				87. 745	86. 745	85. 495	77. 995
심사분야	평가항목	배점											
		서울특별시(단순노무) (95점)				전라남도(시설분야) (95점)				전라북도(청소용역) (90~95점)			
		2	2 - 5	5 - 10	10 - 30	2	2 - 5	5 - 10	10 - 30	2	2 - 5	5 - 10	10 - 30

			5	10	30		5	10	30		5	10	30
수행능력	기술분야	0	0	0	0	0	7	10	20	0	0	0	0
	이행실적	0	5	30	40	0	10	16	30	0	7	15	25
	경영상태	10	25	20	30	10	10	20	15	5	15	26	35
	지역업체 참여도	0	0	0	0	0	0	0	0	0	0	0	0
	입찰가격	90	70	50	30	90	70	50	30	90	70	50	30
	공동수급협 정	0	0	0	0	0	3	4	5	0	3	4	5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0	0	0	0	0	-5	-5	-5	0	5	5	5
	신인도	(+9.1) ~ (-5)				+2	0	0	0	0	0	0	0
	근로기준	0	0	0	0	0	0	0	0	0	-2	-2	-2
	최저임금	0	0	0	0	0	0	0	0	0	-3	-3	-3
	특별신인도	0	0	0	0	0	0	0	0	+2	0	0	0
낙찰 하한율		87.745				87.745				87.745			
심사분야	평가항목	배점											
		조달청(시설분야) (95점)				전라남도(시설분야) (95점)				전라북도(청소용역) (90~95점)			
		~ 5		5 ~	2	2 - 5	5 - 10	10 - 30	2	2 - 5	5 - 10	10 - 30	
수행능력	기술분야	0		0	0	7	10	20	0	0	0	0	
	이행실적	0		10	0	10	16	30	0	7	15	25	
	경영상태	25		25	10	10	20	15	5	15	26	35	
	지역업체 참여도	0		0	0	0	0	0	0	0	0	0	
	입찰가격	70		60	90	70	50	30	90	70	50	30	
	공동수급 협정	0		0	0	3	4	5	0	3	4	5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5	5	0	-5	-5	-5	0	5	5	5
	신인도			+2	0	0	0	0	0	0	0
	근로기준	0	0	0	0	0	0	0	-2	-2	-2
	최저임금	0	0	0	0	0	0	0	-3	-3	-3
	특별신인도	0	0	0	0	0	0	+2	0	0	0
낙찰 하한율		87.995		87.745				87.745			

이러한 낙찰율과 관련하여 청소용역 입찰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대가 보장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2014년 기준 청소용역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사례이다. 발주자는 상기 가격조사금액에 대해 계약상대방인 용역업체에게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이 아닌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며 동시에 상기 단가의 과다 및 과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등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발주자의 이러한 단서 조항은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원가 계산 기준에서는 최대 계상치 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해당 비목별 최대 계상치를 반영한 조사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상기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이 작성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낙찰가격, 즉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가 보장 측면에서 근본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참조)

구 분		청소원	비 고		
인 건 비	기본급		1,460,000	26 일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제2부론 시중노임(단순노무종사원)	
	제수당	연차수당	70,000	일급*15일/12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소계	70,000		
	상여금		121,667	기본급의 10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퇴직충당금		137,639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인건비 합계		1,789,306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경 및 연 금 비	보험 및 연금	건강보험료	49,467	수령액× 2.995% 국민건강보험 제62, 65조 시행령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3,240	건강보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연금	74,325	표준보수액× 4.50%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29,730	수령액× 1.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24,775	수령액× 1.50% 고용보험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1,321	수령액× 0.08%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외	114,000	수요기관규격	
		계	114,000		
	소계		296,858	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기타				
	재료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086,164	인건비 합계+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용역 인원		2			
인건비 원가		4,172,327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x용역인원		
순원가		4,172,327	인건비 원가+기타경비+재료비 등		
일반관리비		208,616	순원가×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		
기업이윤		350,475	(원가+일반관리비)× 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총원가		4,731,419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부가가치세		473,142	총원가× 10%		
합계(월간)		5,204,561			
근무월수		12			
총 계		62,454,730	합계(월간)+근무월수 백원미만 절삭(421원)		

[그림 13]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사업예산(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산출내역 사례

[그림 13]을 참조해 청소용역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추정하여 보면, 실제 인건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의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 수준을 지급하기 어려운 낙찰율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조달업체들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단순노무종사원이 아닌 법정최저 임금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차액으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59] 참조)

[표59] 청소용역 계약단계별 대가보장 수준 적정성 검토 결과

단계	금액 (VAT 제외)	비고
기초금액 (사업예산) 산정단계(A)	56,777,027원	- 예정가격작성기준, 원가계산기준 및 비목별 관련 법규에 따른 표준(최대) 계상치 반영하여 설정
예정가격 산정을 기준 금액(B)	55,073,716원	- 기초조사금액에 대해 발주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통상 3% 내외 감액(사정율 적용)
예정가격 확정(C)	54,963,569원	-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을 통한 최종 예정가격 확정 - 국가계약법 기준 $\pm 2\%$ 를 적용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할 경우 최대 -2% 감액 적용 가능 - 지방계약법의 경우 -3%, 공사 및 공단의 경우 최대 -7% 감액 가능
낙찰하한율 적용(D)	48,365,192원	- 일반용역(청소용역)에 통상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87.995%에 따른 낙찰(계약)금액 * 인건비: 50,067,925원
금액편차(A-D)	8,411,835원	- 청소근로자에 대한 인건비(2인기준)를 제외한 용역업체 뒀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산하여 연간 6,709,102원이 소요되나 인건비에서 이미 -1,702,733원 감액되어 실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할 수 없음.
문제점		- 최종 낙찰금액(D)이 청소용역 근로자 뒀인 순원가(인건비) 보다 1,702,733원 적음. - 용역업체(법인) 뒀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금액은 0원 - 이로 인해 용역업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공공부문의 대가산정 및 적격심사 기반의 낙찰방법을 적용할 경우, 외형상 수행능력과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청소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대가산정 측면의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5.4 청소용역 국가계약/입 · 낙찰제도 개선방향성

5.4.1 산업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청소용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고연령, 장시간 근로, 저임금, 여성중심,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같이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정책지원 대상으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EU의 사회적책임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공공조달 지원 대상과 직접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책임공공조달(SRPP) 관점의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은 장애인, 사회적 취약 계층(빈곤층, 노숙자 등)이며, EU 공공조달지침(EU Procurement Directive 2004)에서는 유보된 계약(Reserved contract)을 통해 해당 지원 대상들이 공급 가능한 모든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16년 발효예정인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서는 유보된 계약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유보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lowest

price) 적용을 배제하고 “ 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선정 방식을 낙찰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청소용역의 산업적 특성은 EU의 SRPP관점에서 유보된 계약 및 낙찰방법으로서 MEAT 적용을 통한 종합적인 수행능력과 가격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안의 마련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공공조달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적격성을 확보한 낙찰자 선정이 필요하며, 이는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도입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항목은 기본적인 용역실적, 참여근로자의 청소용역 전문성(경험) 등과 함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 사회적 취약계층 취업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낙찰방법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저임금 산업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및 업체의 최소이윤 보장 관점에서 “가격 고정형 수행능력(기술/품질)경쟁”형 최고낙찰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용역과 같은 지역 기반형 용역의 경우, 실질적 예산증액의 정당성을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신인도 가점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용역계약기간 종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3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추진은 일반적인 계약방식이 아닌 성과기반용역계약제도(PBSC) 도입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5.4.2 계약실패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용역의 속성에 따른 대가 산정 특성을 살펴보면 인력투입 기반 용역은 사실상 “인력=제공가치(노동력)=확일적 최소대가보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60] 참조). 따라서 공공입찰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인원수와 비례하는 제공가치 노동력에 대한 한계 수익 수준으로 형성된 대가를 단순히 입찰 기술적 요인에 의해 감액한다면 용역 제공 근로자에게 최소 생활 영위가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60] 용역의 속성 재분류

용역속성	지식/기술 기반 용역	인력투입 기반 용역	비고
인력투입 형태	중복(복수) 투입	고정(단독) 투입	- 청소, 경비 용역 등은 인력투입 기준에 따라 실제 인력이 100% 참여율로 고정 참여 - 타 용역에 중복 참여 불가능
실질적 대가 산정 대상	지식과 기술	노동력	- 지식/기술기반 용역의 경우 인력등급에 따른 차등적 인건비 산정근거는 차등적 지식 및 기술 산출 능력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것임 - 인력투입기반 용역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력(노무) 제공에 대한 단일 기준 적용
인건비 단가 수준	기술등급/경력 등에 따라 상대적 높음	기술등급/경력 구분 없고 상대적 낮음	-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최소 인건비 책정 - 입찰기술적, 사업운영적 관점에서 행태적 차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안정적 생활영위 한계점의 인건비 수준 후퇴

이러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 경비 용역과 같은 인력투입 기반 용역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이 기초금액(사업예산) 기준 중기

중앙회 시중노임단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수준의 인건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용역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해당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소용역업체에게도 최소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반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반영률의 50%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 용역업체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현장 투입 근로자의 결원 등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및 경영지원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 성격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용역업체를 통한 용역근로자의 교육, 성과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용역품질 부실 등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5.4.3 최고가치 낙찰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향성

기본적으로 최고가치 낙찰방법(Best value)개념의 적용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 용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단일기준(single standard) 적용을 통해 선정된 적격자(qualified bidder)에게 적정수준의 동일대가(same value)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및 타당성 높은 입·낙찰 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est value는 가격에 의존한 최저가 낙찰방식(price based selection)과 협상에 의한 방식(qualification based selection)을 절충한 낙찰방식으로, 가격(input) 대비 품질(output)의 최고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용역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식/기술기반 용역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요소가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Ⅱ(현 협상에 의한 계약과 유사하나 가격평가방법만 다양화)을 적용하고, 인력투입기반의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적격심사와 같이 양적인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Ⅰ(현 적격심사와 유사하나 가격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변경)을 운영한다.([표61] 참조)

[표61] 용역 유형 분류별 최고가치 낙찰관점 적용 분류

용역 유형	계약 방법		가격평가방법 (최고가치낙찰 관점 요소)	적용상황
인력투 입기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Ⅰ	→	정량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	유사 기술역량 갖춘 업체의 가 격 경쟁력 검증 필요한 경우
			협상계약 Ⅰ 유형	
			기준적합 최저가 방식(일정 기술제안점수 이상자 중 최저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공급자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는 용역에 서 법정제비용 이상의 낙찰하 한을 설정하고 최저가 입찰자 선정
			협상계약 Ⅰ 유형	
			가격조정점수 (입찰가격/기술점수=최저점자)	투입되는 기술 및 지식 단위당 단가가 중요한 경우
			협상계약 Ⅰ 유형	
지식/기 술 및 인력 융합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Ⅰ	→	기술조정점수 (기술점수/입찰가격=최고점자)	인력의 현장 직접 투입과 용역 성과가 비례하는 경우
			협상계약 Ⅰ 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Ⅱ		가중치 방식 (기술점수+가격점수=최고점자)	용역의 전체성과가 기획, 디자 인 등 무형가치에 의해 결정되 는 비중이 큰 경우
			협상계약 Ⅰ, Ⅱ유형	
지식/기 술기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Ⅱ	→	정성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	계량화 곤란한 기술 및 지식요 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격 대 비 기술 및 지식수준 평가
			협상계약 Ⅱ유형	
			확정가격-최고제안 방식(입찰가격 고정 후 최고 기술제안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 에서 예정가격을 한도로 최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정 *사실상 기술만 평가
			협상계약 Ⅱ유형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종합적인 발주 및 계약여건을 고려하여 최고낙찰제 관점의 가격평가방법 7개 정도를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7가지 유형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용역의 성격, 경쟁방법, 해당 용역산업의 특성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어떤 가격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낙찰자의 선정은 “현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에 따른 최저가 입찰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형태가 아닌 최고 종합평가자(수행능력+가격을 합산한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낙찰자 선정 기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62] 참조). 따라서 단순히 현재 시설공사의 종합심사제를 원용하여 평가할 경우 실제 영세한 청소용역업체들의 수주기회는 급감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설공사 시범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부문은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 사회공헌관점(CSR)에서 역할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공사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재무적 여력이 있는 대형 시설공사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용역과 같이 인력투입 중심적 용역에서는 단순히 현재 시설공사의 종합심사제와 유사한 형태의 최고가치 낙찰방법의 도입으로 청소용역에 적합한 대가산정 및 낙찰방법의 개선 기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낙찰방법의 관점에서 국내의 경우는 시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모든 용역

의 입찰은 적격심사기반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은 개념적으로는 최소 입찰가격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낙찰을 위한 최대 입찰가격이 됨으로써 제한적인 최저가 경쟁으로 볼 수 있다.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최고가치 관점의 낙찰방법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기술, 품질 등 비가격 요소에 우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술 및 품질 등 비가격 요소가 최소 50% 수준의 가중치로 평가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적격심사 방식을 기준으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적용은 기술 및 가격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최고점자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가중치 방식(weighted criteria)’으로 명명함)하여 조달목적, 입찰 대상물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62]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평가방법 사례

Best Value에 의한 낙찰방식의 유형(DBIA, 2005)	
구분	적용 방식
Low bid-fully qualified (기준적합최저가 방식)	정해진 일정수준의 기술제안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를 선택
Adjusted bid (가격조정입찰 방식)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격)가 가장 낮은 입찰자를 선택
Adjusted score (기술조정점수 방식)	기술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단위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택
Weighted criteria (가중치 방식)	가격점수와 기술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택
Quantitative cost-technical trade-off	가격과 기술점수 증감(+,-)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증가

(정량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	분이 가장 큰 지를 선택
Qualitative cost-technical trade-off (정성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	가격-기술 가치교환 분석에 의해 가격 대비 기술제안이 가장 우수한 자를 선택
Fixed price-best proposal (확정금액-최고제안 방식)	입찰가격을 고정시킨 후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택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용역의 경우, 입찰측면에서 최고가치 낙찰관점인 PQ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므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춘 본 입찰 업체 선정을 위한 PQ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낙찰측면에서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수준, 종사자의 고령화, 숙련도에 따른 임금상승을 정체, 제공시간, 장소, 인력의 삼중적 결합으로, 타 업무 종사 등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한계 등의 대가제공 환경의 열악함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특히 여성이면서 고령자인 근로자의 특성과 1년 단위의 입찰을 통한 고용형태로 직업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용역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건물청소용역업과 같은 특수빌딩 분야 등에서 대해서는 수행능력평가를 강화하고 일반빌딩 분야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큰 업체의 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생활임금 수준에서 책정된 대가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단년도 계약이 아닌 용역이행성과를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제도 등을 통하여 3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방안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업체의 독과점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방안 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표63] 참조)

[표63] 국가계약 단계별 청소용역 종합적 개선 방향성

구분	핵심방안	필요성	비고
대가산정단계	생활임금 또는 중기중앙회 발표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 기준 적용	사실상 최저임금수준의 낙찰율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대가보장의 일차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사업예산) 현실성 개선	- 계약예규 및 행자부 예정가격산정(원가계산) 기준 변경
입찰공고단계	산출내역서 첨부 의무화	- 대가의 적정성 확인 한계 - 예산에 맞춘 산출내역서 작성으로 대가없는 과업요구 문제	-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대가 산정의 적정성 검증)
평가단계	- 청소용역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본평가 항목화	- 가격중심 평가 - 수행능력은 청소용역 수행 관련 직접 역량평가 부재 - 수행실적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 위주의 간접적 수행능력 평가 - 청소용역 산업환경, 이해여건 등을 고려한 적합도 높은 평가항목 부재	-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대가 산정의 적정성 검증)
낙찰자 하한율	-낙찰하한율 적용 배제(1안) -낙찰하한율 상향(2안)	- 현재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 기준을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전체 청소용역입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86% 수준 - 낙찰하한율 87.5~88% 적용 시 사실상 1~2% 내외의 차액만 남아 용역업체 경영지속성 불투명화(실 인건비 지급 수준 저하 요인)	- 인건비가 용역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투입 중심 용역으로서 임금 보장수준을 고려할 경우 가격경쟁을 통한 낙찰은 용역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점 발생 - 미국의 경우 각 주별/시군별로 직업별 최소 임금 수준을 명시하고 모든 공공입찰에서 이를 준수토록 의무화하

		- 또한 예정가격은 평균 3% 내외에서 하향 결정되므로 현재 적격심사 실질 낙찰하한율은 84.5%~85%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고 있음. - 공공입찰용 적용 단가기준을 통합적용 적용 및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미 국 : “WWW.WDOL.GOV”참조)
낙찰자선정	- 가격 고정형의 최고 가치(사회적가치) 제공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 낙찰방법 - 중점 가치 평가항목이 기존 용역업체에게 비본질 또는 불필요한 역량 확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최저가기반의 이단계 평가 방식을 택하는 적격심사로 사실상 변별력 및 타당성 낮은 수행능력평가로 인해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 선정 - 대가보장 수준 저하 - 선정 타당성 저하	- 사실상 가격 경쟁이 비윤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용역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수행기반을 보장하면서 해당 용역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지지(권장)될 수 있는 가치평가 항목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후평가	- 객관적 품질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또는 장기계약 요건 부여 * 최초부터 장기계약 부여는 문제점이 많음 - 성과기반용역계약제도로 전환 검토 필요	- 최저가기반의 이단계 평가 방식을 택하는 적격심사로 사실상 변별력 및 타당성 낮은 수행능력평가로 인해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 선정 - 대가보장 수준 저하 - 선정 타당성 저하	- 용역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역량평가는 이전 용역 수행품질 및 평판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 평가항목으로 채택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5.5 청소용역 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소용역 적격업체에게 적정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특성과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개선대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안은 기존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청소용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기존과 같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적격심사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을 청소용역 특성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용역이행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한계가 상존한다.

제 2안은 가칭 종합적격심사로 최고가치 낙찰평가 방법 중 가중치 평가방식(weighted criteria)을 채택하여 용역수행능력과 가격평가 점수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한 후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종합적격심사에서는 균형가격을 도입할 경우, 실제로 가격평가점수 만점구간 내에 다수 업체가 기술적으로 투찰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가격평가 점수의 변별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평가와 최고가치 낙찰관점 평가방법 도입 취지에는 매우 적합)

제 3안은 전체적으로 제2안과 동일하나 가격 평점방법을 보완하여, 용역이행능력의 변별력이 과도해질 경우 입찰이전에 평가기준에 따라 서열화 된 입찰참가업체 중 소수의 상위 수행능력보유 업체에게 낙찰기회가 독과점화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역이행능력 평가에서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선도업체들이 서열화 되는 상황에서 제2안의 균형가격평가 방식의 낮은 변별력은 후발업체, 신생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평가의 평점급간 조정 또는 최저/최대 투찰율을 설정하여 투찰가격평가 방안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표64] 참조)

[표64] 청소용역 낙찰자 선정 개선대안

구분	제1안 (기존 적격심사 개선)	제2안 (종합적격심사)	제3안 (종합적격심사/가격변별력)
입찰 단계	기존 적격심사 (최소자격 보유자간 최저 가 경쟁)	종합평가방식 (수행능력평가 변별력 강 화)	종합평가방식 (가격평가 변별력 강화)
평가 단계	용역이행능력(사회적가치) 신용평가 가격평가	용역이행능력(사회적가치) 신용평가 가격평가(평점급간 축소)	용역이행능력(사회적가치) 신용평가 가격평가(평점급간 확대)
낙찰 단계	최저가 입찰자 → 최저 자격기준 통과자	이행능력+가격 = 최고점 자를 낙찰자로 선정	이행능력+가격 = 최고점자 를 낙찰자로 선정
사후 관리 단계	평가체계 없음	사후 용역결과에 대한 품 질평가(이력관리) 체계화	사후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이력관리) 체계화
낙찰 하한 율	청소용역 대부분 87.745%	미적용	최저 투찰율 88% 설정 (추정가격별 88%, 89%, 90%의 최저 투찰율 설정)
특징	- 업체 역량과 상관없이 우연적 요인에 의한 낙찰 가능 - 수행능력 평가의 타당 성과 변별력 향상하였으 나 낙찰자는 최저가격으 로 결정되는 문제점 상존	- 수행역량 평가항목 기 준 적격성 높은 상위 역 량 업체가 적정대가 보장 받고 용역수행 가능(도입 취지 극대화) - 용역이행 역량에 따른 서열화(대부분 상위업체 독과점화 예상)	제1, 2안의 문제점 및 장점 을 기술적으로 조정 가능하 나 종합평가 취지 일부 퇴 색
주요 평가 항목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가격평가	- 수행실적 - 사회적가치 구현도 * 임금보장율(제조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 대비) * 사회적 취약계층 당해용 역 참여율 * 당해 용역 제공장소에서 근속연수 - 가격평가(균형가격 ~ - 3%를 만점 구간화) * 수행능력 뛰어난 경우 사실상 가격에 대한 고려	- 수행실적 - 사회적가치 구현도 * 임금보장율(제조업 보통인 부 노임단가 대비) * 사회적 취약계층 당해용역 참여율 * 당해 용역 제공장소에서 근 속연수 - 최대투찰율~최소투찰율 구간 내에서 평점급간 최대 화 * 수행능력 최고점자도 가격

		수준 극히 낮음	투찰 수준에 따라 탈락 가능성 있음.
가격 평가 조정 배경	기존 경쟁구도 유지	최고 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치가 특히 높은) 보유자를 선정함	기본적으로 최고 수행능력을 선정하나 가격적 요소에 의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도 선정 가능
계약 지속 방법	일회성 갱신형	연속적 지속형 * 성과기반용역계약(PBSC) 관점에서 장기계약 추진 *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야임.	연속적 지속형 * 성과기반용역계약(PBSC) 관점에서 장기계약 추진 *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야임.
정책 적 의사 결정 주안 점	-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선정된 업체들에 의한 품질변동폭 매우 큼 - 기존 경쟁구도 및 구조를 유지에 목적(조달업체 반발 최소화)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최고 수행능력 보유 업체에게 안정적 품질 담보(용역계약의 중점이 비용절감에서 적정대가 및 품질로 전환)	제 1, 2안의 절충안

[표64]에서 검토한 대안 중, 기존 적격심사의 개선방안은 청소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도가 낮으므로 종합적격심사(제2안)를 중심으로 용역이행능력과 가격평가 변별력의 상충관계(trade-off)를 조정하여 선도/후발 업체간 적정 입찰참가 기회 보장이 가능토록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청소용역 업체의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금보장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영 및 근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능력 평가항목을 도입하였다. 청소용역은 인력투입기반 중심용역으로서 용역의 핵심적 성과가 제공인력의 근로의욕 및 사기진작 수준에 영향을 직접 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고용안정성과 임금보장 수준을 중점적으

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청소용역 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성 평가를 위해 숙련도 및 전문성을 함께 평가하여, 계약 대상물로서 청소용역의 본질적 수행능력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청소용역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선행요인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아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청소용역 추정가격대별로 3등급화하여 용역이행능력과 가격평가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 검토하도록 한다.([표65] 참조)

[표65] 청소용역 이행능력 평가기준(종합적격심사)

구 분		배점	주요 평점기준
심사 분야	평가항목		
용역 이행 능력	용역실적	10	입찰 대상 용역 1배 이상 만점
	참여 근로자 숙련도	15	입찰 참여 근로자의 당해 용역 규모 이상 청소용역 참여한 기간
	참여 근로자 전문성	10	입찰 대상 장소(건물)에서 청소용역 참여한 기간
	참여 근로자 임금보장도	10	입찰 참여 근로자의 당해연도 중기중앙회 발표 단순노무제조원 노임단가 대비 충족율
	보유 근로자 임금보장도	5	입찰 참가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당해연도중기중앙회 발표 단순노무제조원 노임단가 대비 충족율
	보유 근로자 고용안정성	5	입찰 참가업체의 전체 보유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10	-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소규모 및 신생업체를 고려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동일 산업분야 대비 수준 평가)를 동시 적용
경제성	입찰가격	30	- 균형가격 : 가격입찰자의 상하위 극단값 제거 후 산술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낙찰하한율 없음) * 균형가격에서 97%까지는 만점, 균형가격 이상, 97% 미만에 대해서는 가격만점의 80%만 인정 (수행능력 평가 변별력 강화) * 균형가격 기준 만점구간을 세밀하게(1%까지 만점 등) 조정하거나 균형가격을 만점으로 이하 투찰비율의 차등 감점 급간을 확대하여 가격 평가 변별력 확대 가능(종합평가방식 도입 취지 일부 퇴색되나 현실적으로 선도/신생업체간 입찰참가기회 보장 관점에서 고려 필요)

			- 투찰가격 : 가격 입찰자들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전 설정된 최저 투찰율과 최대 투찰율 사이에서 입찰가격을 평가 * 최저~최대 투찰 구간 내에서 최저 투찰율을 만점, 최대 투찰율을 가격만점의 80% 수준으로 평가(가격 평가 변별력 강화) * 기존 청소용역 추정가격대별 낙찰하한율을 소폭상회하는 최저 투찰율을 설정하고 급격한 낙찰율 향상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대 투찰율을 동시에 설정
신인도	공동수급체	2	- 공동수급체 구성(업체수 따라 차등 배점)
	사회적 취약 계층 고용율	3	-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용율(입찰참여 업체를 평가하여 상위 1,2,3 순위에 따라 차등평점)
	부당 노동행위 행정처분	-5	- 부당노동행위로 각 지방 노동청에서 행정처분 이상 받은 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

인력투입 중심(청소)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안)은 별첨3 참조.

5.7 이행력 제고방안

상기 제시된 물품 및 용역 계약제도 중 특히 용역을 중심으로 한 계약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개선방안별 법제도적 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주요 개선방안은 용역의 재분류, 대가산정, 평가방법, 사후평가, 공통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구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사항 및 법제도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66] 참조).

① 용역의 재분류

현재 용역분류는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용역별 해당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낙찰제도가 용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따라 용역의 구분을 기술지식기반, 기술지식/인력 결합, 인력기반형 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용역분류 세분화 근거를 반영해야 하며, 세분화된 용역에 따른 차등적 용역 계약프로세스 속성 및 낙찰방법 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대가산정

용역은 물품과 달리 인력이 주요한 투입요소로 활용되는 계약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정대가를 통한 과업 시간 및 비용의 확보가 해당 계약 건의 품질과 밀접한 영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 국가계약법령상 대가산정기준, 예산평성기준, 예정가격산정기준 등을 따르게 되면 대가의 수준이 순차적으로 감액됨으로써 적정한 대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과 연동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입찰공고의 포함 사항과 관련한 입찰예산(사업비 산정내역서) 산정 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③ 평가방법

용역분야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하지만 적격심사는 “운찰제” 형태의 가격 중심 평가로 전락해버렸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소수의 계약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 중심이 아닌 이행능력 중심의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적격심사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물품, 용역에 대한 종합평가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속성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④ 사후평가

건설기술 관리 용역을 제외한 용역 및 물품 분야에 대해서는 주관적 만족도 측정 이외에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용역 수행 및 활용 결과에 대한 발주처 및 전문가 평가를 공개하고 그 수준을 다음 입찰 시 평가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별 용역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다음 입찰시 이행역량 필수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수정이 필요하다.

⑤ 공통

현재 용역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입·낙찰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역 3대 분야 및 개별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입·

낙찰제도 적용이 필요하며, 미국의 MAS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별 용역에 대한 입찰절차의 전반적 내용을 다룬 용역계약 입찰권유서 작성(Solicitation)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표66] 이행력 제고방안

차원	내용(~에서)	내용(~으로)	법제도적 기반
용역의 재분류	기술용역, 일반용역	기술지식기반, 기술지식/인력 결합, 인력기반형 용역으로 분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용역분류 세분화 근거 반영 - 세분화된 용역에 따른 차등적 용역 계약프로세스 속성 및 낙찰방법 적용 근거 반영
대가 산정	대가산정기준, 예산평성기준, 예정가격산정기준 등을 거치며 순차적 감액으로 적정 대가 보장 한계	모든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과 연동된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공개화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공고의 포함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예산(사업비 산정내역서) 산정 내역서 공개를 의무화
평가 방법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적격심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물품, 용역에 대한 종합평가 근거 반영 -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속성 수준에서 기준 제시
사후 평가	용역 및 물품 분야에 대해서는 주관적 만족도 측정 이외에 체계적인 관리 부재 * 건설기술 관리 용역은 예외	용역 수행 및 활용 결과에 대한 발주처 및 전문가 평가를 공개하고 그 수준을 다음 입찰 시 평가토록 의무화	개별 용역에 대한 평가의 견서를 다음 입찰시 이행역량 필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약예규 수정
공통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입찰기준 미흡	용역 3대 분야 및 개별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입찰제도 적용	개별 용역에 대한 입찰절차의 전반을 다룬 용역계약 입찰권유서 작성(Solicitation)

6.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계약 분야 중 용역계약의 새로운 낙찰방법으로서 검토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대상 용역의 재분류, 재분류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역량 평가가 가능한 모듈형 종합심사 평가체계 개발, 개발된 모듈형 종합심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컨설팅, 준컨설팅, 비컨설팅 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적합도가 높은 기술용역, MICE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을 위한 세부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용역계약에 종합심사 방식의 낙찰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등 이행력 제고방안도 함께 도출하는 것이다.

용역계약의 종합심사 낙찰방법 적용의 배경은 용역계약이 근본적으로 물품계약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성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품 등 유형의 상품과는 다른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공공조달 대상 용역에 대한 가치 평가는 용역의 속성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단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역의 분류를 각각의 용역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인 지식, 기술, 경험,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용역에서 요구하는 핵심가치와 이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을 차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역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용역의 재분류는 2016년 5월 현재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및 일반용역 192개에 대하여 각각의 용역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계량적 평가를 시행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기술·지식이 용역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역량이 되는 경우 기술·지식 중심용역(소위 “컨설팅” 용역), 용역의 핵심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역량이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인력의 실행력에인 경우 기술·지식·인력 결합용역(소위 “준컨설팅” 용역), 용역의 핵심 제공가치가 용역을 이행하는 인력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인력투입 중심용역(소위 “비컨설팅” 용역)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러한 3대 용역 유형에 따라 192개 용역에 대한 분류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컨설팅 용역은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용역 등 82개, 준컨설팅 용역은 시장및 여론조사서비스용역 등 44개, 비컨설팅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용역 등 66개로 분류되었다.

3대 유형으로 분류된 용역의 분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통해 기본적으로 각각의 용역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식 및 인력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의 용역을 수행할 적합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평가체계 보다는 요구하는 기술, 지식 및 인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평가가 가능한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대 용역으로 재분류된 192개 용역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술, 지식 및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형 종합 평가체계를 도출하였다. 모듈형 평가체계는 모든 유형의 용역에서

요구하는 역량 평가에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모듈을 설정하고 해당 평가모듈의 구성 개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기존 적격심사 등의 평가체계에서 도입하여 결합하였다. 용역 종합평가를 위한 모듈은 총 7개로 이중 5개 모듈은 용역의 유형 구분 없이 용역계약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2개 평가모듈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용역계약에서 도입이 논의 되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는 시설공사 분야의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되었던 종합심사 평가체계와 유사한 용역수행능력과 균형가격에 기반한 가격평가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체 공공조달 및 계약단계 중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용역계약 체계 이외에도 물품 및 시설공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종합평가 요소를 공공조달 및 계약 절차 5단계별로 총 7개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입찰이전 단계에서는 사전자격심사, 사업예산 산출내역 공개, 입찰 단계에서는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종합점수산정,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상세화,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용역결과의 정성/정량적평가를 종합평가낙찰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필수적인 종합평가의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특히 3대 용역으로 재분류된 192개 용역에 대하여 평가 및 낙찰단계의 핵심인 종합심사 체계 적용 적합도를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

의 실효성이 높은 용역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심사세부기준 마련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모듈형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재분류된 3대 용역 유형 중 컨설팅 용역분야의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 준컨설팅 용역분야의 MICE용역 및 비컨설팅 용역분야의 청소용역에 대하여 실제 종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종합심사세부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심사기준은 개념적, 실무적 측면에서 즉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청소용역에 대해서만 도출하였다. 도출된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은 용역이행능력 등 5개 평가분야와 분야별 14개 평가항목을 채택하였다. 가격평가방식은 기존 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분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절사평균 방식의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재분류된 3대 용역유형, 용역유형별 차등화된 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한 모듈형 종합평가체계 및 이를 활용한 용역분야별 대표 용역에 대한 종합평가 심사세부기준의 적용 실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3대 용역유형 분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용역을 중심으로 용역계약에 종합평가 방식의 낙찰방법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3대 유형으로 분류된 다양한 용역별 적합한 입·낙찰방법과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용역별 입찰권 유서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및 계약 단계별로 요구되는 종합평가 구현을 위한 7개 항목에 대한 유기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국가계약 대상으로 용역계약에서 각각의 용역 유형별 핵심제공가치 제공에 필요한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적격업체에게 적정대가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용역수행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용역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19대 산업 중 5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별첨 1. 최근 3년간 3대 서비스 재분류를 통한 용역 종합심사제 적용 적합도

기존용역 구분	신규용역 구분	코드	품명분 류번호	품명	계약방 법의 적절성	공공조 달 파급력	대가 보장 수준 상향 필요성	용역 발주 규모 적합성	입찰 참가 경쟁도	합계
일반용역	#N/A	#N/A	70101899	수산자원관리용역	3	3	4	9	8	2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70109001	어업서비스	4.5	2.5	1.5	8.5	9.5	26.5
일반용역	#N/A	#N/A	70111599	수목재배용역	1	1	7	10	1	20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70149001	농업서비스	1	1	8	10	3	23
일반용역	#N/A	#N/A	70151998	산림자원관련용역	3	2	1	8	8	22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70159001	임업서비스	5	1	1	4.5	10	21.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70171599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5	3	1	1	10	20
일반용역	#N/A	#N/A	70171602	수질검사용역	10	2	10	10	3	35
일반용역	#N/A	#N/A	71101601	시추관련용역	2	6	3	3	6	20
일반용역	#N/A	#N/A	71101799	광산관리용역	10	6	10	1	5	32
일반용역	#N/A	#N/A	72101507	시설물유지관리공사	9	4	8	1	1	23
일반용역	#N/A	#N/A	72101509	소방시설공사	10	2	8	10	4	3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72101597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9	10	8	2	1	30
일반용역	#N/A	#N/A	721029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4.5	2.5	8	8.5	1	24.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72102906	조경관리서비스	9.3	6.3	8	4.3	1	29
일반용역	#N/A	#N/A	72102998	조경식재공사	1	1	8	10	1	21
일반용역	#N/A	#N/A	72102999	부지관리용역	10	6	9	4	1	30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2151296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5.7	1.3	5.7	9.3	6	28

일반용역	#N/A	#N/A	72151598	전기장치및부품소모품유지보수	8	1	6	9	5	29
일반용역	#N/A	#N/A	72151699	정보통신공사	4.7	7.3	8	1.7	6.7	28.3
일반용역	#N/A	#N/A	72153505	건설현장청소용역	7	6	9	2	1	2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2154010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8.7	6.7	7	3.3	2.3	28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72154090	기타물품설치서비스	1.5	3	7.5	5	5.5	22.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72154099	전시장치설치서비스	3	7	5	6.3	5.7	2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52177	운송장비수리서비스	7.3	7.7	5	5	7.3	32.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52178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5	5.3	2	8	10	30.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52179	컴퓨터및사무용기기수리서비스	4.7	2	2.7	7.3	9.7	26.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52180	기타수리서비스	7	9	5.3	4.7	4.3	30.3
일반용역	#N/A	#N/A	73152182	통신장비및부속품유지보수	7	8	6	6	4	31
일반용역	#N/A	#N/A	73152183	공장및산업기계유지보수	4	1	8	10	8	31
일반용역	#N/A	#N/A	73152184	광산기계장비유지보수	5	4	2	3	10	24
일반용역	#N/A	#N/A	73152187	제조및가공기계장비유지보수	5	1	3	9	10	28
일반용역	#N/A	#N/A	73152188	물자취급기계장비유지보수	5	6	1	1	10	23
일반용역	#N/A	#N/A	73152189	공구및일반기계유지보수	5	3	2	9	10	29
일반용역	#N/A	#N/A	73152190	전자제품및부품유지보수용역	1	6	3	7	4	21
일반용역	#N/A	#N/A	73152193	서비스업용기계장비유지보수	4	2	10	10	9	35
일반용역	#N/A	#N/A	73161587	사무기기대여	1	1	6	9	5	22
일반용역	#N/A	#N/A	73161595	공구및일반기계설치	1	2	4	9	3	19
일반용역	#N/A	#N/A	73161699	운송수단및부속설비설치	5	1	2	9	10	2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69001	운송장비임대서비스	6.7	3.3	5.7	6.7	8.7	31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69002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7.7	7	5.7	5	3.7	29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69003	건설장비임대서비스	10	3	10	3	3	29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69005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6	5	6.7	6.7	6.3	30.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3169006	기타물품임대서비스	5.3	2.3	6	6.3	8.7	28.7

일반용역	#N/A	#N/A	73171593	시청각장비및부품대여	3	1	6	9	7	26
일반용역	#N/A	#N/A	73171595	컴퓨터하드웨어리스서비스	8	3	9	10	4	34
일반용역	#N/A	#N/A	73181299	성형가공용역	4	2	1	8	8	23
일반용역	#N/A	#N/A	76101503	소독또는악취제거업	10	3	8	10	1	32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76101590	소독서비스	9.7	3	8	6.7	1	28.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76111501	건물청소서비스	9	10	8	3	1	31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76111599	기타청소서비스	9.3	3.7	7.7	4.7	1	26.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598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9	10	9	3.3	1	32.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599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8	8.7	8	2.3	2	29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699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8.3	7.7	8.7	6.3	4.3	35.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797	분뇨처리서비스	2.3	1.3	5.3	9.7	6.3	2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798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6.3	4	8	7.3	5.3	31
일반용역	#N/A	#N/A	76121899	재활용관련용역	9	7	9	3	5	3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901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8.7	3	9.7	8.3	4.3	3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1999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8	5	9.3	7.7	3.7	33.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2	76122399	폐기물재활용서비스	8.7	7.3	9.3	4.7	3.7	33.7
-	컨설팅용역	C	77101504	환경영향평가용역	9	5	9.5	3.5	2.25	29.25
일반용역	#N/A	#N/A	77101604	자연자원관리또는보존전략계획용역	3	4	1	1	7	16
일반용역	#N/A	#N/A	77101801	환경정보시스템관련용역	4	6	1	1	9	21
일반용역	#N/A	#N/A	77101901	산업현장오염조사	10	3	8	4	1	26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01990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10	1	8	10	5	34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11690	실내및기타오염방지복원서비스	4	1	7	10	8	30
일반용역	#N/A	#N/A	77121501	대기질관리용역	9	3	10	10	2	34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21504	대기오염조사측정서비스	8.5	4.5	8	10	3	34
일반용역	#N/A	#N/A	77121601	토양오염방지용역	10	1	10	1	3	2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21606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8	4	8	3.5	3	26.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21690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10	2	10	1	3	26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21707	수질오염조사측정서비스	9	2	10	10	3	34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77121790	수질오염방지복원서비스	9	1.5	7.5	7.5	2	27.5
일반용역	#N/A	#N/A	77121798	수질오염방지용역	10	3	7	4	2	26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01599	항공화물운송서비스	5	4	6.3	6.3	6.3	28
일반용역	#N/A	#N/A	78101802	지방또는국내트럭수송서비스	9	6	9	5	4	3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01808	도로화물운송서비스	8	8.7	10	4.7	2.3	33.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01999	복합화물운송서비스	8.3	4.3	9.7	5	5	32.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11501	헬기서비스	6.5	5.5	2.5	1	9.5	2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11502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5	4	8.5	4.5	2	27.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78111808	자동차임대서비스	8.3	6.3	6.3	4.7	4.7	30.3
일반용역	#N/A	#N/A	78111809	자동차리스	7	4	5	6	9	31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118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8.3	9.3	7	5	3.3	3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21599	포장서비스	1	1	8	10	2	22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31699	창고서비스	7	5	3	4	8	27
일반용역	#N/A	#N/A	78141599	운송지원업무용역	8	8	9	5	3	3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41602	화물조사서비스	1	1	7	10	3	22
일반용역	#N/A	#N/A	78180199	차량및운송수단유지보수	8	9	6	3	1	2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78181703	주차장서비스	9.7	4	8	2	1	24.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B	80101507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3	7.3	4	5.7	7.3	27.3
일반용역	#N/A	#N/A	80101599	회사경영자문용역	2	3	6	1	6	18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B	80101698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2	7.5	5	3.5	6	24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B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4.3	8.7	10	7.7	4.3	35
일반용역	#N/A	#N/A	80111599	인적자원개발용역	5	4	2	3	10	2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80111699	인력공급서비스	8.3	7.7	7	5	1	29
일반용역	#N/A	#N/A	80121599	형법관련용역	4	1	1	8	8	22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0121699	법무서비스	2	2	1	8	6	19
일반용역	#N/A	#N/A	80141501	시장분석관련용역	1	4	1	1	4	11
일반용역	#N/A	#N/A	80141602	홍보관련용역	1	9	5	6	5	26
일반용역	#N/A	#N/A	80141607	행사관리용역	6	10	3	4	5	28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80141619	고객센터운영서비스	3	7.3	2	1.7	4.3	18.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80141622	우편발송서비스	9.3	3.3	8.3	9	4.3	34.3
일반용역	#N/A	#N/A	80141799	유통관련용역	8	5	2	1	7	2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80141902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1.7	6.7	3.7	4.3	6	22.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80141990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4.7	9.3	3.3	5.7	5.3	28.3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80161590	기타사업지원서비스	7.3	7.7	5.3	4	1.3	25.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4	80161598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7	7.5	4.5	2	3.5	24.5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80161599	사무지원서비스	6.3	6	3.7	4	4	24
일반용역	#N/A	#N/A	80161699	시설물유지관리	9	10	8	2	1	30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0171501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2.5	1	7.5	9.5	6	26.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0171602	온라인홍보및방송콘텐츠서비스	1.7	6.7	4.7	7	5.7	25.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0171699	홍보및마케팅서비스	3	9	5	4	4.7	25.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1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3	6	2.7	6	8	25.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2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4.7	3	1.3	8	9.7	26.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3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5	1.7	1.3	8.7	10	26.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4	조달연구조사서비스	2.5	4	4	8.5	7	26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5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4.5	4.5	3	7.5	5.5	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6	통계연구조사서비스	4.3	6.3	3	7	7.3	28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7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4.5	5.5	1.5	7	9.5	28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8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4.7	7	1.7	6.3	9.3	29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09	식품연구조사서비스	3.3	4.7	1	7.3	8	24.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0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3.3	7.3	1.7	5.3	8	25.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1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5	6.7	3.3	6.3	9	30.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2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2.3	5.3	2.3	6.7	7	23.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3	기상연구조사서비스	5	8.5	2.5	6.5	10	3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4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3	6.7	2.3	7.7	8	27.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5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3.7	4.3	3.3	6.3	8.7	26.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6	무역및국제통상연구조사서비스	4	2.7	1.3	9	8.7	25.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7	통일대북연구조사서비스	3	5	2	7	7.5	24.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8	국방연구조사서비스	4.5	7	3.5	6	9.5	30.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19	정치선거연구조사서비스	2	2	3	9	6	22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0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2.7	2.7	2.7	8.3	7	23.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1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5.7	5.3	4	6.3	6.7	28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2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4	4.3	3.3	8.7	9	29.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3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4	1.7	4	9	8.3	2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4	소방방재연구조사서비스	4.7	3.3	3	8.7	8.3	28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5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5	7	4	5.3	8.3	29.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6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3.5	6	3.5	5.5	8.5	2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7	방송언론연구조사서비스	3.7	2	3	6.3	8.3	23.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8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6.7	7.3	4.3	4	6.7	29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29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3.5	6	2	4	8.5	24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30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3.5	2.5	5	6	8	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31	교통연구조사서비스	6.7	3.3	6	8.7	8.7	33.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0909032	기타연구조사서비스	5.7	8.7	3	7.7	5.7	30.7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06	선박설계·감리용역	9.5	7.5	8.5	3	4	32.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08	건축설계용역	8.5	10	8	3	1.5	31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10	토목설계용역	9.5	8.5	9.5	1.5	2	31
일반용역	#N/A	#N/A	81101512	지리정보시스템서비스	6.3	7	5	1.7	8	28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13	건축CM용역	9.5	9.5	10	2	2	33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24	도시계획용역	6.75	6.5	8.25	2.25	5	28.7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27	상하수도설계용역	9.7	6.3	9	4.3	3	32.3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70	토목CM용역	10	9	10	1.5	3	33.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0	건축감리용역	9	9.5	9	2.5	1	31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1	토목감리용역	10	8	10	2	3	33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2	전기감리용역	8	4	8.5	8	1.5	30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3	정보통신감리용역	5.5	5.5	9.25	4	4	28.2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4	소방감리용역	4	2.5	8	8.5	2	2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597	조경설계용역	10	6.5	9	2.5	2.5	30.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1701	전기설계용역	8	3	7	10	2	30
일반용역	#N/A	#N/A	81101706	실험장비유지보수	6	8	5	5	8	32
일반용역	#N/A	#N/A	81101797	발전및배전설비유지보수	5	1	2	9	10	27
일반용역	#N/A	#N/A	81101798	사진인쇄및시청각장비유지보수	3	3	5	5	8	24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2201	교통설계용역	7.7	4.7	7.7	5	4.7	29.7
일반용역	#N/A	#N/A	81102399	항공공학용역	5	6	1	3	10	2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2701	소방설계용역	10	5	9	1	5	30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8989	기타기술용역	6.5	7.25	6.75	5.75	4	30.25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09090	문화재설계용역	9.5	5.5	9	4	1.5	29.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598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3.3	8.3	5.7	3.7	6	2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599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6	10	4.3	3	7	30.3
일반용역	#N/A	#N/A	81111612	프로그래밍및언어관련용역	3	6	3	4	8	24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11708	정보통신설계용역	6.6	5	6.8	3.4	5.2	2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799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4.3	10	4.7	2	6	2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801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6	9.7	3.7	2.7	9	31
일반용역	#N/A	#N/A	81111809	컴퓨터시스템설치	1.3	5.7	4.3	2.3	5	18.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811	운영위탁서비스	6.3	9.3	3.3	2.3	3.3	24.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18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6	10	4	3	7	30
일반용역	#N/A	#N/A	81111901	데이터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	2	7	7	3	6	2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2002	데이터서비스	5.7	9.7	5.3	4	6.7	31.3
일반용역	#N/A	#N/A	81112099	데이터관리용역	6	10	5	4	7	32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2199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6	8	5	6	6	31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2299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6	9.3	4.3	5	7.3	32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12399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6.7	9.3	6	5	4.3	31.3
일반용역	#N/A	#N/A	81131599	통계기법관련용역	1	1	6	9	2	19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81141599	기술검사분석서비스	4.7	4.3	4.7	7.3	7.7	28.7
-	컨설팅용역	C	81141801	안전진단용역	6.6	4.6	8.2	7.4	5.2	32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41805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10	2	7	10	8	37
일반용역	#N/A	#N/A	81151502	기상학적서비스	4	6	4	5	9	28
기술용역	컨설팅용역	C	81151604	측량용역	7.6	3.2	6.8	5.4	5.4	28.4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1151699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6	9.7	7.3	2	5.7	30.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1	81151799	지질연구조사서비스	2	4	2	3	6	17
일반용역	#N/A	#N/A	81151899	해양학및수문관련용역	5	2	1	8	10	26
일반용역	#N/A	#N/A	82101598	인쇄광고용역	1	2	7	10	3	2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01698	음원제작서비스	10	1	10	10	4	35
일반용역	#N/A	#N/A	82101699	방송광고용역	3	5	3	3	7	21
일반용역	#N/A	#N/A	82101899	광고대행용역	2	4	5	3	6	20
일반용역	#N/A	#N/A	82111503	학술및과학논문작성관련용역	6	10	2	7	9	34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82111804	번역서비스	3	5	4.7	7.7	4.7	2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11899	문서작성서비스	2.7	7.7	2.3	7	7	26.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82112090	통역서비스	4	1	1	8	8	22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21503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1	5	3	8	4	21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21599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6	9	4.7	6.7	3.7	30
일반용역	#N/A	#N/A	82121999	제본용역	3	2	1	8	8	22
일반용역	#N/A	#N/A	82131599	필름현상가공용역	4	1	9	10	8	32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31603	동영상제작서비스	4.3	8.7	6	6.7	3.7	29.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31699	사진촬영처리서비스	2	3.3	6.3	7.3	6	25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6	82141502	디자인서비스	3	5.3	6.7	7.7	5	27.7
일반용역	#N/A	#N/A	82141699	작품전시용역	4	6	3	6	9	28
일반용역	#N/A	#N/A	82151599	조각및시각예술용역	1	1	7	10	5	24
일반용역	#N/A	#N/A	83101599	상하수도시설관련용역	8	4	10	4	6	32
일반용역	#N/A	#N/A	83101999	에너지보존관련용역	9	7	7	3	4	30
일반용역	#N/A	#N/A	83111599	유선전화용역	2	8	1	1	6	18
일반용역	#N/A	#N/A	83111899	텔레비전방송용역	7	7	4	3	5	26
일반용역	#N/A	#N/A	83111999	라디오방송용역	4	1	1	8	8	22
일반용역	#N/A	#N/A	83121599	도서관관련용역	5	6.3	4	5.3	1.7	22.3
일반용역	#N/A	#N/A	83121699	정보센터관련용역	5.7	9.3	4.3	1.7	8	29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4111599	회계서비스	6.3	7	8.3	5.3	4.7	31.7
일반용역	#N/A	#N/A	84121599	은행관련용역	1.5	9	3.5	7	5.5	26.5
일반용역	#N/A	#N/A	84121799	투자상담용역	5	1	1	8	10	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5	84131503	자동차보험	4	6.5	8	7	9	34.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5	84131598	손해보험	2	7	10	7.3	5.7	32
일반용역	#N/A	#N/A	84131599	보험관련용역	3	10	8	4	7	32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5	84131601	생명보험	4.3	9	4.7	1.7	9.3	29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5	84131698	제3보험	2.5	3	8	1.5	7.5	2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5	84131699	단체보험	4.5	3	5.5	2.5	9.5	25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5101599	의료검진서비스	6.7	6	3.7	6.3	8	30.7
일반용역	#N/A	#N/A	85101799	보건정책행정정용역	3	2	8	10	8	31

일반용역	#N/A	#N/A	85121699	전문외서비스	5	4	3	1	10	23
일반용역	#N/A	#N/A	85121899	의료연구용역	4	3	3	9	9	28
일반용역	#N/A	#N/A	85141702	치료상담관련용역	1	4	6	1	5	17
일반용역	#N/A	#N/A	85151799	식품정책및지원용역	1	5	6	3	4	19
일반용역	#N/A	#N/A	85161501	주요의료기기유지보수	5	4	2	7	10	28
일반용역	#N/A	#N/A	85161599	의료장비유지보수	5	2	3	9	10	29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85171599	장례및묘지서비스	8.3	4	7.3	3.7	1.3	24.7
일반용역	#N/A	#N/A	86101599	농어업및임업직업훈련용역	4	1	2	9	8	24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01695	교양교육서비스	3	4.3	4	6	7.3	24.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01696	기타교육서비스	3.3	7.7	3	6	5.3	25.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01697	과학교육서비스	2.7	3.3	2.7	3.3	7	19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01698	정보화교육서비스	2.7	5.3	2.3	5.7	7.7	23.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01899	취업지원교육서비스	1.7	7	3.7	6.3	5.3	24
일반용역	#N/A	#N/A	86111597	콘텐츠사용서비스	3	2	8	10	7	30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B	8611159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	8.3	3	6.3	6	25.7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11599	원거리교육서비스	3.7	5.3	5.7	6.3	6	27
일반용역	#N/A	#N/A	86111699	성인교육관련용역	7	7	4	7	7	32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11799	어학교육서비스	3.7	5	4.7	8.3	6.3	28
일반용역	#N/A	#N/A	86121599	초등및중고등학교관련용역	7	5	6	5	5	28
일반용역	#N/A	#N/A	86121799	대학교관련용역	1	3	3	9	4	20
일반용역	#N/A	#N/A	86131999	장애인교육관련용역	4	4	2	3	9	22
일반용역	#N/A	#N/A	86141501	교육자문관련용역	2	4	3	9	6	24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41599	교육지원서비스	4.7	6	4.3	5.3	7.7	28
일반용역	#N/A	#N/A	86141702	시청각교육관련용역	2	6	4	3	7	22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41796	체험활동서비스	2.7	4	3	1.7	6	17.3
일반용역	컨설팅용역	A7	86141797	수학여행서비스	1	2.3	6.3	5	3.3	18

일반용역	#N/A	#N/A	86141799	교육기법관련용역	2	4	4	8	6	2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90101603	출장음식서비스	10	4	8	1	1	2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90101799	구내식당서비스	9	6	7	1.3	2.3	25.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90111599	숙박서비스	4	5	1	3	9	22
일반용역	#N/A	#N/A	90111699	국제회의관련용역	2	7	1	3	5	18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5	90121599	여행서비스	7	9	5	6.7	2.7	30.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90131590	공연기획및대행서비스	2	4	3.7	5.7	6	21.3
일반용역	#N/A	#N/A	90131699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용역	1	7	6	7	3	24
일반용역	#N/A	#N/A	90151599	관광촉진관련용역	5	2	1	9	10	2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90151802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3	7.3	4.7	5.3	7.3	27.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8	90151890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4	6.3	5.3	4.7	4.3	24.7
일반용역	#N/A	#N/A	91101599	건강또는건강조절시설	10	2	8	1	6	27
일반용역	#N/A	#N/A	91101999	패션상담용역	5	1	2	9	10	27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8	91111502	세탁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일반용역	#N/A	#N/A	91111699	가사보조관련용역	10	2	8	10	1	31
일반용역	#N/A	#N/A	92101699	소방관련용역	10	3	8	2	1	24
일반용역	非컨설팅용역	A3	92121599	시설물경비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일반용역	#N/A	#N/A	93131799	보건계획관련용역	5	5	2	1	10	23
일반용역	#N/A	#N/A	93141599	사회개발정책관련용역	3	2	1	8	8	22
일반용역	#N/A	#N/A	93141707	문화유산보존또는촉진서비스	5	3	5	3.5	4	20.5
일반용역	#N/A	#N/A	93141709	문화정책관련용역	7	6	4	7	4	28
일반용역	#N/A	#N/A	93141713	문화재보호서비스	10	2	10	10	1	33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93141789	문화재발굴조사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93141790	문화재지표조사서비스	6.3	6.3	6.3	6.3	6.3	31.7
일반용역	準컨설팅용역	A7	93141797	문화재수리보존서비스	5.5	3	3.5	6	7.5	25.5
일반용역	#N/A	#N/A	93151599	공공기관관련용역	6.3	6.3	6.3	6.3	6.3	31.7

일반용역	#N/A	#N/A	93151609	복권관련용역	2.5	5.5	7.5	8	6.5	30
일반용역	#N/A	#N/A	93151699	재정관련용역	5	3	2	1	10	21

별첨 2.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개요

1) 기술용역(설계, 감리) 시범사업 입찰참가 의향서의 평가

① 국내 입찰선정평가 및 해외 EOI 평가기준 비교

<국내·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PQ>

평가항목	배점범위
가. 참여기술자	5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다. 신용도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마. 업무중첩도	10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가. 구성 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4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3) 신용도	15
	소계	70
나.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서	20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소계	30

② ADB 정식기술제안서(Full Technical Proposal) 평가의 배점 범위 및 배점 사례

구분	배점	세부 평가 항목	배점(예시)
제안 업체의 자격 조건	100~200	유사 프로젝트 실적	70
		유사 지역에서의 실적	50
		기타 자격조건	30
		계	150
사업 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200~400	사업목적의 이해도	40
		방법론의 품질	80
		과업지시서에 대한 의견 및 혁신성	40
		작업계획	70
		직원 투입 계획	30
		발주처 측 스태프 및 발주처 제공 시설에 대한 의견	20
		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	20
		계	300
전문가 평가	500~700	외국인 핵심 전문가	400
		내국인 핵심 전문가	150
		계	550
총계			1,000

③ 시범사업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	50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250
	방법론의 품질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지시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평가	핵심 전문가	600
합계		1,000

2) 종합심사 점수 산정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80%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20%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평가	‘③ 시범사업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1,000	8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00	20%
* <입찰가격 평점 산식> $\text{평 점} = 1,000 \times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일 경우, 6/1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첨 3. 인력투입 중심(청소)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안)

1) 인력투입 중심(청소) 용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00호, 2016. 0. 0.)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0호에 따라 집행하는 종합심사제 적용대상 청소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용역”이란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서비스로 제5조의 기준금액 이상 청소용역을 말한다.
2.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란 청소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금액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로, 입찰등급에 따라 [별표 2], [별표 2-1], [별표 3], [별표 4]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찰등급”이란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적용 시 청소대상 건물의 청소 난이도 및 복잡성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4. “사업주관부서”란 청소용역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소용역근로자”란 제8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청소용역에 배치예정인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용역 투입중인 근로자로서 고용승계 대상자를 말한다.
6. “청소용역관리자란”란 당해용역 입찰참가업체가 상근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장관리 인력으로서 고용승계인력을 제외한 관리인력을 말한다.
7. “보유근로자”란 입찰참가업체가 당해 입찰 및 다른 입찰을 통해 고용승계한 인력이 아닌 입찰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8. “청소업경력”이란 청소용역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역업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0.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청소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 이 기준을 적용하는 청소용역의 입찰은 추정 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입찰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등급 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억원(입찰등급 1등급) 이상 : [별표 2]
 2. 추정가격 20억원(입찰등급 2등급) 이상 : [별표 3]
 3. 추정가격 10억원(입찰등급 3등급) 이상 : [별표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이 1등급으로서 발주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대한 평가 후 제 1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 한해 [별표 2-1]에 따라 청소용역능력을 추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이 2등급,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해당 청소용역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해당 청소용역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별표4]까지 정하고 있는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⑥ 청소용역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른다. 특히 청소용역근로자의 노무비(인건비) 단가

기준은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2015년 11월)”에 따라 계상되어야 한다.

제6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2.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보유근로자 및 참여근로자 능력 심사 시 제출한 보유근로자(참여근로자) 배치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청소용역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7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3.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4.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5. 근로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청소용역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청소용역계획 심사대상 청소용역에 한한다)
6. [별표 10]의 청소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

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 [별표 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3]
3. 입찰등급 3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청소용역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청소이행능력은 청소실적, 배치 근로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근로자 및 기능자 능력, 청소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의한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의한다.

⑤ 청소용역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청소용역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의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청소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청소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근로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근로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 보유 근로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근로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청소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전

문청소용역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청소용역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청소용역업자의 청소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청소업경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청소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청소용역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청소용역 계획서로 심사한다.(청소용역계획 심사 대상 청소용역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4조(종합점수 산정) ① 청소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청소용역계획 점수(청소용역계획 심사 대상 청소용역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청소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 입찰등급 3등급은 87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청소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추첨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청소용역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

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청소용역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청소용역부터 적용한다.

2) 심사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별표 12]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 분야	심사항목	연 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3) 청소용역 종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용역 종합심사 신청서

- 공 고 번 호 : _____
- 청 소 용 역 명 : _____
- 수 요 기 관 : _____
- 입 찰 일 시 : _____

위 청소용역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능력심사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청소용역 종합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소용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_____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_____	
	회 사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구성원)	주 소 : _____	
	회 사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 붙 임 1.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청소용역 이행능력증명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발 주 기 관 장 귀하

 접수증

- | | |
|-----------------|-----------------|
| 1. 공고번호 : _____ | 3. 수요기관 : _____ |
| 2. 용역명 : _____ | 4. 제출자 : _____ |

위 건 입찰 종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_____

OOO 계약담당자 (인)

4)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소용역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 원가예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할 위해 조사된 원가예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예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예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